

민생노동국 소관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696호, 제3698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6년 05월 26일
4. 회부일자 : 2026년 05월 27일

II.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

1. 총괄

- 「지방자치법」¹⁾과 「지방재정법」²⁾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³⁾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

1)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생략)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⁴⁾는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결산 승인을 구하는 안건을 각각 별도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매년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에 대해 서울시의회
의 승인을 받기 위해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
안을 제출하고 있으며, 2025회계연도의 결산결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3
개 안건⁵⁾을 제출하였으나, 민생노동국은 회계연도 중 예비비 지출내역이
없어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 사항이 없음.

2. 결산 승인안

- 민생노동국 소관 세입·세출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 376억 8천 9백만원에 대해 징수결정액은 394억
2천 3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49억 8천 5백만원, 정리보류액은 0원,
미수납액은 44억 3천 9백만원임.
 -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2,621억 5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529억 5천
2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8천 3백만원, 보조금반납금은 7천 2백

4)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20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대해 시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3개 안건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안번호: 3696, 제출자: 시장, 제출일: 2026. 5. 26)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안번호: 3697, 제출자: 시장, 제출일: 2026. 5. 26)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의안번호: 3698, 제출자: 시장, 제출일: 2026. 5. 26)

만원, 집행잔액은 79억 9천 8백만원임.

-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일반회계】

-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 301억 7천 3백만원에 대해 징수결정액은 361억 7백만원, 실제수납액은 316억 6천 9백만원, 정리보류액은 0원, 미수납액은 44억 3천 9백만원임.
-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2,419억 4천 6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388억 2천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8천 3백만원, 보조금반납금은 6천 5백만원, 집행잔액은 19억 7천 9백만원임.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 42억원에 대해 징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징수결정액·실제수납액·정리보류액·미수납액이 모두 0원임.
-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156억 5천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96억 3천 7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은 0원, 집행잔액은 60억 1천 3백만원임.

【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 33억 1천 6백만원에 대해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각각 33억 1천 6백만원,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0원임.

-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45억 9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44억 9천 6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0원, 보조금반납금은 7백만원, 집행잔액은 6백만원임.

3. 기금결산 승인안

- 민생노동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계정과 사회적경제계정을 운용하고 있는바,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 2개 계정(융자계정·사회적경제계정)의 2025년도말 총 조성액은 2,175억 4천만원이며, 2025년도 중 총 운용규모는 4,710억 5천 4백만원임.
- 기금결산 결과를 계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 2025년도말 조성액은 1,556억 7천 1백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1,582억 4천 8백만원에 대해 2,688억 4천 5백만원을 조성하고 2,714억 2천 2백만원을 사용한 것임.
- 2025년도 중 운용규모는 4,270억 9천 3백만원으로, ▶수입은 융자금회수 2,151억 3천 7백만원, 전입금 507억원, 이자수입 30억 8백만원, 예치금회수 1,582억 4천 8백만원이며,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1,879억 2천 6백만원, 비융자성사업비 710억 8천 1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24억 1천 3백만원, 기본경비 2백만원, 예치금 1,556억 7천 1백만원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 2025년도말 조성액은 618억 6천 9백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598억 7천 7백만원에 대해 140억 8천 4백만원을 조성하고 120억 9천 2백만원을 사용한 것임.
- 2025년도 중 운용규모는 439억 6천 1백만원으로, ▶수입은 융자금회수 112억 8천 9백만원, 이자수입 24억 6천 9백만원, 기타수입 3억 2천 6백만원, 예치금회수 298억 7천 7백만원이며,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59억 9천 9백만원, 비융자성사업비 60억 8천 6백만원, 예탁금 100억원, 기본경비 7백만원, 예치금 218억 6천 9백만원임.

III.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세입결산

가. 총괄

-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민생노동국은 예산현액(376억 8천 9백만원)보다 4.6%(17억 3천 4백만원) 증가된 394억 2천 3백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당초 353억 5천 5백만원이 수납되었으나 이 중 3억 7천만원이 환급됨에 따라 실제수납액은 349억 8천 5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88.7%), 미수납액은 44억 3천 9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11.3%)임.

<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및 예산현액 ^{주1)}	징수 결정액	수납액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수납률 ^{주2)}	결산율 ^{주3)}
			수납총액	물납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세입결산액) ④=①+②-③				
	가	나	①	②	③	④=①+②-③	다	라=㉑-④-다	④/나	④/가
민생노동국 총계	37,689	39,423	35,355	-	370	34,985	-	4,439	88.7	92.8
일 반 회 계	30,173	36,107	32,039	-	370	31,669	-	4,439	87.7	105.0
특 별 회 계	7,516	3,316	3,316	-	-	3,316	-	-	100.0	44.1
도시개발 특별회계	4,200	-	-	-	-	-	-	-	-	0.0
균형발전 특별회계	3,316	3,316	3,316	-	-	3,316	-	-	100.0	100.0

※ 주1)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은 예산액(최종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의 합계(예산액+전년도 이월액)를 의미하나, 민생노동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이 없어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동일(일치)함.

주2)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실제수납액÷징수결정액)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주3)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결산액)의 비율(실제수납액÷예산액)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100% 미만이면 예산현액보다 부족수납, 100%를 초과하면 예산현액보다 초과수납된 것임.

-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현액(301억 7천 3백만원)보다 19.7%(59억 3천 4백만원) 증가된 361억 7백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당초 320억 3천 9백만원이 수납되었으나 이 중 3억 7천만원이 환급됨에 따라 실제수납액은 316억 6천 9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87.7%), 미수납액은 44억 3천 9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12.3%)으로, 세입과목별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지난연도 수입이 포함된 것으로, 예산현액(136억 5천 8백만원) 대비 45.0%(61억 4천 6백만원) 증가된 198억 4백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당초 157억 3천 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나 이 중 3억 7천만원이 환급되어 실제수납액은 153억 6천 6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77.6%), 미수납액은 44억 3천 9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22.4%)임.

- '지방교부세 등'은 특별교부세가 포함된 것으로, 민생노동국은 행정

안전부가 겨울철 한파 대책비로 서울시에 교부한 특별교부세(3억 5천만원) 중 1천 4백만원을 간주처리(2025. 11.)를 통해 예산 반영하였으나, 간주처리 이전 시점(2025. 10.)에 재난안전실⁶⁾에서 특별교부세 전액에 대해 징수결정 및 수납을 완료함에 따라 민생노동국 차원에서는 별도의 징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납내역이 없음.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⁷⁾이 포함된 것으로, 예산현액(98억 9천 7백만원) 대비 2.1%(2억 8백만원) 감소된 96억 8천 8백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보조금 등반환금이 포함된 것으로, 예산현액(66억 5백만원) 대비 0.1%(1천만원) 증가된 66억 1천 5백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됨.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예산현액은 42억원이나, 이에 대한 징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납내역이 없음.

- 이는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세입예산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국비(기금) 18억원과 ▶같은 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정부자금채) 2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협의·조정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회계연도 중 국비는 미교부, 지방채는 미발행되어 징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33억 1,569만 4천원)보다 1만 8천원 감소

6) 참고로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는 서울시의 폭염·한파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을 분장하고 있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항제3호 참조).

7) 정부의 각종 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을 의미함.

된 33억 1,567만 6천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된바, 이는 상권활성화
과와 농수산물통과 소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
금이 징수결정 및 수납된 것임.⁸⁾

< 2025회계연도 회계별·과목별 세입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및 예산현액 ^{주1)}	징수 결정액	수납액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수납률	결산율
			수납총액	물납액	환금액	실제수납액 (=세입결산액)				
	가	나	①	②	③	④=①+②-③	다	라=㉠-④-다	④/㉠	④/가
민생노동국 총계	37,689	39,423	35,355	-	370	34,985	-	4,439	88.7	92.8
일반회계 합계	30,173	36,107	32,039	-	370	31,669	-	4,439	87.7	105.0
세외수입	13,658	19,804	15,736	-	370	15,366	-	4,439	77.6	112.5
경상적 세외수입	3,847	3,728	4,039	-	370	3,669	-	59	98.4	95.4
재산임대수입	3,242	2,819	3,154	-	370	2,785	-	34	98.8	85.9
공유재산임대료	3,242	2,819	3,154	-	370	2,785	-	34	98.8	85.9
사용료수입	158	88	82	-	0.135	82	-	6	93.0	51.8
기타사용료	158	88	82	-	0.135	82	-	6	93.0	51.8
사업수입	47	75	75	-	-	75	-	-	100.0	160.0
기타사업수입	47	75	75	-	-	75	-	-	100.0	160.0
이자수입	400	746	727	-	0.002	727	-	19	97.5	181.9
융자금회수이자수입	3	3	3	-	-	3	-	-	100.0	96.0
기타이자수입	397	743	724	-	0.002	724	-	19	97.5	182.7
임시적 세외수입	6,756	11,434	11,200	-	0.098	11,200	-	234	98.0	165.8
재산매각수입	-	5	5	-	-	5	-	-	100.0	(순증)
불용품매각대금	-	5	5	-	-	5	-	-	100.0	(순증)
보조금반환수입	5,776	8,878	8,740	-	-	8,740	-	138	98.4	151.3
사모보조금반환수입	1,635	3,735	3,596	-	-	3,596	-	138	96.3	220.0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496	940	940	-	-	940	-	-	100.0	190.0
위탁비반환수입	3,645	4,203	4,203	-	-	4,203	-	-	100.0	115.3
기타수입	980	2,551	2,456	-	0.098	2,456	-	96	96.3	250.5
그외수입	980	2,551	2,456	-	0.098	2,456	-	96	96.3	250.5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등	278	638	266	-	-	266	-	372	41.7	95.7
과징금	81	62	62	-	-	62	-	0.630	99.0	76.0
과징금	81	62	62	-	-	62	-	0.630	99.0	76.0

8)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징수결정 및 수납 내역

- 상권활성화과 소관 '상권르네상스 지원' : 예산현액과 동일하게 997,000천원 징수결정, 997,000천원 실제 수납
- 상권활성화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주차장 건립)' : 예산현액과 동일하게 2,000,000천원 징수결정, 2,000,000천원 실제 수납
- 상권활성화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주차장 이용보조)' : 292,000천원 징수결정, 292,000천원 실제 수납
(예산현액 292,018천원보다 △18천원 감액)
- 상권활성화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주차장 개보수)' : 예산현액과 동일하게 6,676천원 징수결정, 6,676천원 실제 수납
- 농수산물통과 소관 '토지개량제 공급' : 예산현액과 동일하게 20,000천원 징수결정, 20,000천원 실제 수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및 예산현액 ^{주1)}	징수 결정액	수납액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수납률	결산율
			수납총액	물납액	환금액	실제수납액 (=세입결산액)				
	가	나	①	②	③	④=①+②-③	다	라=①-④+다	④/나	④/가
변상금	-	52	43	-	-	43	-	9	81.9	(순증)
변상금	-	52	43	-	-	43	-	9	81.9	(순증)
과태료	197	279	162	-	-	162	-	117	58.1	82.2
기타과태료	197	279	162	-	-	162	-	117	58.1	82.2
환수금	-	245	-	-	-	-	-	245	0.0	(순증)
부정이익환수금	-	245	-	-	-	-	-	245	0.0	(순증)
지난연도 수입	2,777	4,004	231	-	0.089	231	-	3,774	5.8	8.3
지난연도 수입	2,777	4,004	231	-	0.089	231	-	3,774	5.8	8.3
지난연도 수입	2,777	4,004	231	-	0.089	231	-	3,774	5.8	8.3
지방교부세 등	14	-	-	-	-	-	-	-	0.0	0.0
지방교부세	14	-	-	-	-	-	-	-	0.0	0.0
지방교부세	14	-	-	-	-	-	-	-	0.0	0.0
특별교부세	14	-	-	-	-	-	-	-	0.0	0.0
보조금	9,897	9,688	9,688	-	-	9,688	-	-	100.0	97.9
국고보조금등	9,897	9,688	9,688	-	-	9,688	-	-	100.0	97.9
국고보조금등	9,897	9,688	9,688	-	-	9,688	-	-	100.0	97.9
국고보조금	7,979	7,978	7,978	-	-	7,978	-	-	100.0	99.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5	155	155	-	-	155	-	-	100.0	72.1
기금	1,702	1,555	1,555	-	-	1,555	-	-	100.0	91.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605	6,615	6,615	-	-	6,615	-	-	100.0	100.1
보전수입등	6,605	6,615	6,615	-	-	6,615	-	-	100.0	100.1
전년도이월금	765	765	765	-	-	765	-	-	100.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65	765	765	-	-	765	-	-	100.0	100.0
융자금원금수입	59	51	51	-	-	51	-	-	100.0	86.5
민간융자금회수입	59	51	51	-	-	51	-	-	100.0	86.5
보조금등반환금	5,781	5,799	5,799	-	-	5,799	-	-	100.0	100.3
국고보조금등반환금	5,781	5,799	5,799	-	-	5,799	-	-	100.0	100.3
도시개발특별회계 합계	4,200	-	-	-	-	-	-	-	-	0.0
보조금	1,800	-	-	-	-	-	-	-	-	0.0
국고보조금등	1,800	-	-	-	-	-	-	-	-	0.0
국고보조금등	1,800	-	-	-	-	-	-	-	-	0.0
기금	1,800	-	-	-	-	-	-	-	-	0.0
지방채	2,400	-	-	-	-	-	-	-	-	0.0
국내차입금	2,400	-	-	-	-	-	-	-	-	0.0
차입금	2,400	-	-	-	-	-	-	-	-	0.0
정부자금채	2,400	-	-	-	-	-	-	-	-	0.0
균형발전특별회계 합계	3,316	3,316	3,316	-	-	3,316	-	-	100.0	100.0
보조금	3,316	3,316	3,316	-	-	3,316	-	-	100.0	100.0
국고보조금등	3,316	3,316	3,316	-	-	3,316	-	-	100.0	100.0
국고보조금등	3,316	3,316	3,316	-	-	3,316	-	-	100.0	1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316	3,316	3,316	-	-	3,316	-	-	100.0	100.0

※ 주1)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은 예산액(최종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의 합계(예산액+전년도 이월액)를 의미하나, 민생 노동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이 없어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동일(일치)함.

- 최근 5년간 민생노동국의 세입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2021회계연도 110.7%, 2022회계연도 108.4%, 2023회계연도 104.1%, 2024회계연도 125.4%, 2025회계연도 104.6%로, 예산편성 규모(예산현액)와 실제 징수결정 규모(징수결정액) 간 괴리가 2024회계연도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2025회계연도에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5년간 민생노동국과 서울시 전체 세입결산 추이 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주1)}	징수 결정액	수납액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	수납률	결산율
				수납총액	물납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세입결산액)					
		가	나	①	②	③	④=①+②-③	다	라=가-④-다	나/가	④/나	④/가
'21	민생 노동국	66,556	73,674	72,208	-	-	72,208	-	1,466	110.7	98.0	108.5
	서울시 전체	47,759,128	53,887,516	54,109,657	-	1,250,545	52,859,112	82,124	946,279	112.8	98.1	110.7
'22	민생 노동국	119,850	129,868	126,766	-	0.7	126,765	188	2,915	108.4	97.6	105.8
	서울시 전체	53,468,799	56,822,400	56,760,607	-	1,188,925	55,571,683	114,646	1,136,071	106.3	97.8	103.9
'23	민생 노동국	96,044	99,995	96,766	-	180	96,586	98	3,310	104.1	96.6	100.6
	서울시 전체	51,490,048	52,245,295	52,450,593	-	1,692,039	50,758,554	293,169	1,193,571	101.5	97.2	98.6
'24	민생 노동국	40,947	51,336	47,749	-	261	47,488	52	3,796	125.4	92.5	116.0
	서울시 전체	49,104,950	50,634,481	51,232,897	-	1,980,011	49,252,886	139,989	1,241,606	103.1	97.3	100.3
'25	민생 노동국	37,689	39,423	35,355	-	370	34,985	-	4,439	104.6	88.7	92.8
	서울시 전체	53,062,941	57,143,755	57,466,037	-	1,972,693	55,493,344	191,249	1,459,162	107.7	97.1	104.6

※ 2021회계연도~2023회계연도 결산 당시에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024회계연도~2025회계연도 결산 당시에는 민생노동국임.

주1)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은 예산액(최종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의 합계(예산액+전년도 이월액)를 의미하나, 민생노동국의 경우 2021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전년도 이월액이 없어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동일(일치)함.

- 서울시 전체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이 존재하여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동일하지 않음.

- 다만 ‘수납률’은 같은 기간 동안 98.0%, 97.6%, 96.6%, 92.5%, 88.7%로 감소되어 민생노동국이 징수결정을 하고도 실제 수납하지 못한 세입(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회계연도에는 결산율(92.8%)도 100% 미만으로서 실제 수납 규모(실제수납액)가 예산편성 규모(예산현액)에 미치지 못하는 세입 결손까지 발생하였음.
- 따라서 민생노동국은 예산편성 규모와 실제 징수결정 규모 간 괴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더욱 제고하고, 향후에도 수납률 저하 및 세입 결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징수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환급액

- 지방자치단체는 기 수납된 세입 중 과오납되었거나 그 밖에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지방회계법」 등⁹⁾에 따라

9)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총당과 환급)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 ⑧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해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지방회계법」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 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6조(반환의 특례)

-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 전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5조(과오납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 편성목 . 통계목))

- 802-03. 기타 반환금 등

- 1.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 「지방회계법」 제2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수입금에서 직접 반환하는 경우 제외

반환하는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하여야 하는바, 민생노동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총 77건, 3억 7천만원(수납총액 대비 1.0%)의 환급이 발생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5회계연도 회계별·과목별 환급액 발생 현황 >

(단위 : 천원, %, 건)

회계·부서·세입과목 ^{주1)}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환급률 ②/①	환급건수	구체적인 환급 내역 및 사유
민생노동국 총계	35,354,500	369,859	1.0461	77	
일반회계 합계	32,038,824	369,859	1.1544	77	
소상공인정책과 소계	18,073,088	-	-	-	
노동정책과 소계	1,272,020	-	-	-	
상권활성화과 소계	6,407,701	19,936	0.3111	75	
공유재산임대료	609,120	19,614	3.2200	7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2025. 9. 22,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8호)에 따라 2024년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점포 임대료를 감면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중 부과·수납된 임대료 환급(66건, 1,583만 6,540원) - 서울풍물시장 점포 계약 포기 및 해지에 따라 2025회계연도 중 부과·수납된 점포 임대료 환급(6건, 377만 7,170원)
기타사용료	-	135	(순증)	1	서울풍물시장 점포 계약해지에 따라 2024회계연도에 부과·수납된 점포 임대료 환급^{주2)}
그외수입	12,395	98	0.7916	1	2025회계연도에 부과·수납된 소속 공무원 복리후생비 과오납금 환급
지난연도 수입	120,276	89	0.0742	1	서울풍물시장 점포 계약해지로 인해 2024회계연도에 부과 후 체납되고 2025회계연도에 지난연도 수입으로 수납된 점포 임대료 환급
공정경제과 소계	2,313,671	2	0.0001	1	
기타이자수입	16,461	2	0.0105	1	‘마을기업 육성’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수입이 납부재(도봉구)의 정산 착오로 2025회계연도 중 1,730원 초과 수납되어 환급
농수산유통과 소계	3,612,072	349,921	9.6876	1	
공유재산임대료	2,545,192	349,921	13.7483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2025. 9. 22,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8호)에 따라 2024년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마포농수산물시장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중 부과·수납된 임대료 환급
농업기술센터 소계	360,272	-	-	-	
도시개발특별회계 합계	-	-	-	-	
균형발전특별회계 합계	3,315,676	-	-	-	

※ 주1) 세입과목은 장·관·항·목 중 ‘목 단위’로 작성하되, 환급액이 발생되지 않은 과목은 생략한 것임.

주2) 2024회계연도의 경우 서울풍물시장 점포 임대료를 예산편성 시에는 ‘공유재산임대료’로 편성하였지만 실제수납 시에는 ‘기타사용료’로 잘못 수납하였는바, 세입이 실제수납된 과목의 수입금으로 환급한 것임.

- 2025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보다 환급건수는 72건(1,440%), 환급액은 1억 9백만원(41.6%) 증가된 것으로, 환급건수와 환급액이 대폭 증가된 주요 사유는 2025년 9월 수립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08호)¹⁰⁾에 따라 매출이 전년도 대비 감소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기 수납된 임대료 중 감면분 3억 6천 6백만원(67건)을 환급하였기 때문임.

< 최근 5년간 환급액 발생 추이 >

(단위 : 백만원, %, 건)

회계연도	수납총액	환급액 (환급률) ^{주1)}	결산서상 환급사유 구분									환급건수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법령 개정	법인 정산	내부 거래	기타	
2021	72,208	- (0.000)	-	-	-	-	-	-	-	-	-	-
2022	126,766	0.7 (0.001)	-	-	-	-	-	-	-	-	0.7	8
2023	96,766	180 (0.186)	-	-	165	-	-	-	-	-	15	6
2024	47,749	261 (0.547)	0.8	-	-	-	-	-	-	-	260	5
2025	35,355	370 (1.046)	-	-	0.002	-	-	-	-	-	370	77

※ 주1) '환급률'은 수납총액 대비 환급액(환급액÷수납총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참고로 ▶ 2025년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가 개정되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되었으며, ▶ 같은 날 제정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게 되었음.¹¹⁾

10) 재무국 재산관리과-11781 (2025. 9. 2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

11) 이후 2026년 1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3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이 가능한 기간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되었음.

< 임대료 감면사유 확대에 관한 법령 개정 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타법개정, 2025. 2. 21.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28호, 2025. 9. 2.일부개정·시행)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 ⑩ (생략)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정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 ~ ⑩ (현행과 같음)

다. 정리보류액

- 정리보류¹²⁾란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¹³⁾에 따라 배분금액 부족·채납처분 중지·행방불

12) 과거에는 ‘불납결손’ 또는 ‘결손처분’이라고 일컫기도 하였음.

13)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채납처분이 종결되고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보다 적을 때
2. 채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2022. 1. 28.>
4. 채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명·무재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세입에 대해 징수권의 실행을 중지 또는 유보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생노동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정정보류 내역이 없음.

< 최근 5년간 정정보류 발생 추이 >

(단위 : 백만원, %, 건)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①	정리보류액 (정리보류액 비율) ^{주1)} ② (②/①)	결산서상 정리보류사유 구분									정리보류 건수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국세 정리보류	평가액 부족	기타	
2021	73,674	- (0.00)	-	-	-	-	-	-	-	-	-	-
2022	129,868	188 (0.14)	-	-	188	-	-	-	-	-	-	103
2023	99,995	98 (0.10)	-	-	98	-	-	-	-	-	-	50
2024	51,336	52 (0.10)	-	-	52	-	-	-	-	-	-	6
2025	39,423	- (0.00)	-	-	-	-	-	-	-	-	-	-

※ 주1) ‘정정보류액 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정정보류액(정정보류액÷징수결정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민생노동국의 최근 5년간 정정보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 부터 2024회계연도까지는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징수결정액 대비 0.1% 수준의 정정보류액이 발생하였으나, 2025회계연도에는 정정보류액이 발생 하지 않은 것임.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정정보류)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정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정보류를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단서 생략)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중략) 정정보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 정리보류는 징수가능한 세입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납부태만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확보 노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민생노동국은 정리보류를 추진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일단 정리보류된 세입에 대해서도 해당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되면 정리보류를 취소한 후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라. 미수납액

-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민생노동국이 징수결정한 세입(394억 2천 3백만원) 중 미수납액은 44억 3천 9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11.3%)으로,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5회계연도 회계별·과목별 미수납액 발생 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계·부서·세입과목 ^{주1)}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율)	미수납 내역 및 사유
민생노동국 총계	39,423	34,985	4,439 (11.26)	
일반회계 합계	36,107	31,669	4,439 (12.29)	
소상공인정책과 소계	20,457	18,073	2,384 (11.65)	
기타이자수입	47	46	1 (2.00)	◦ 소상공인 단체 지원사업 및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발생이자 관련 자치구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한 납부 지연
사·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291	287	4 (1.55)	◦ 소상공인 단체 지원사업 및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집행잔액 관련 자치구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한 납부 지연
그외수입	2,242	2,227	15 (0.68)	◦ 2023년도 이전 발행 서울사랑상품권의 구매취소·환불에 따른 할인보전금 시비보조분 반환 관련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납부 지연

(단위 : 백만원, %)

회계·부서·세입과목 ^{주1)}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율)	미수납 내역 및 사유
	부정이익환수금	1	-	1 (100.00)	◦ 서울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부정수취 발생하여 환수를 위해 징수결정 하였으나, 납부자 납세태만으로 체납
	지난연도 수입	2,398	36	2,362 (98.48)	◦ 중소기업물류센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연체료 체납 ◦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수취 할인보전금 환수건 체납
	노동정책과 소계	1,985	1,272	713 (35.91)	
	기타사용료	78	72	6 (7.97)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2025년 12월 공유재산 사용 건으로 납부기한 미도래 ※ 2026. 1. 납부 완료
	기타이자수입	33	33	0.028 (0.09)	◦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정산 이자에 대한 2025년 12월 기준 미수납액 ※ 2026. 1. 납부 완료
	그외수입	163	83	80 (49.22)	◦ 서울노동권익센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금 납부 지연(75,800천원) ※ 2026. 3. 납부 완료 ◦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지연이자 미납(4,574천원)
	변상금	49	39	9 (19.30)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공유재산 무단점유(사용기간 만료 후 미퇴거)에 따른 변상금 부과 건으로 납부기한 미도래 ※ 2026. 1.~2. 납부 완료
	지난연도 수입	617	0.5	616 (99.92)	◦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금 및 지연이자 등 미납
	상권활성화과 소계	6,658	6,388	270 (4.06)	
	공유재산임대료	623	589	34 (5.44)	◦ 서울품물시장 점포 임대료 체납
	기타이자수입	590	572	18 (3.01)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 설 설치사업 등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납부 지연(1,884천원) ◦ 납부기한 미도래(15,894천원) ※ 납부기한 미도래 중 7,582천원 2026. 2. 납부 완료
	사·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3,087	2,955	132 (4.29)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지원,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 등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납부 지연(5,479천원) ◦ 납부기한 미도래(126,999천원) ※ 납부기한 미도래 중 55,809천원 2026. 2. 납부 완료
	지난연도 수입	206	120	86 (41.66)	◦ 서울품물시장 점포 임대료 체납(45,645천원)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지원 집행잔액(4,387천원), 전통시장 전기시설 보수 사업 이자(3,429천원) 등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납부 지연
	공정경제과 소계	3,384	2,313	1,071 (31.64)	
	기타이자수입	17	16 6	0.177 (1.06)	◦ 가격표시제 지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납부 지연
	사·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106	104	2 (1.44)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납부 지연
	그외수입	87	87	0.016 (0.02)	◦ 함께누리물 판매수수료 이자 발생액 납부 지연 ※ 2026. 1. 납부 완료

(단위 : 백만원, %)

회계·부서·세입과목 ^{주1)}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율)	미수납 내역 및 사유
	기타과태료	279	162	117 (41.9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과태료 체납
	부정이익환수금	244	-	244 (100.00)	◦ 2021년 사회적경제 포스트코로나 리부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진행 중으로 부과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미수납 ◦ 2021년~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납세태만에 따른 미수납
	지난연도 수입	779	71	708 (90.9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납세태만 및 사업자 폐업에 따른 미수납
	농수산물유통과 소계	3,264	3,262	2 (0.04)	
	과징금	62	62	0.630 (1.0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납부기한 미도래 ※ 2026. 1. 납부 완료
	지난연도 수입	4	3	0.827 (21.55)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폐업으로 인한 미수납 발생(720천원)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반납이자에 대한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납부 지연(107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계	360	360	- (0.00)	
	도시개발특별회계 합계	-	-	- (0.00)	
	균형발전특별회계 합계	3,316	3,316	- (0.00)	

※ 주1) 세입과목은 장·관·항·목 중 ‘목 단위’로 작성하되,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은 과목은 생략한 것임.

- 민생노동국의 미수납액(44억 3천 9백만원)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4)에는 발생사유별로 ▶행방불명 23억 6천 2백만원(53.2%), ▶납세태만 7억 3천 2백만원(16.5%), ▶자금압박 6억 1천 7백만원(13.9%), ▶폐업 또는 부도 2억 6천 3백만원(5.9%), ▶납기 미도래 2억 5천 1백만원(5.6%), ▶소송계류 1억 9천 7백만원(4.4%), ▶기타 1천 7백만원(0.4%)으로 기재되어 있음.

< 최근 5년간 미수납액 발생 추이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 결정액 ①	실제 수납액 ②	정리 보류액 ③	미수납액 (미수납율) ④=①-②-③ (④/①)	결산서상 미수납사유 구분										
					구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회생법 에 의한 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2021	73,674	72,208	-	1,466 (2.0)	-	-	599	-	-	-	-	-	-	845	22
2022	129,868	126,765	188	2,915 (2.2)	-	-	616	1	-	-	-	-	2	614	1,682
2023	99,995	96,586	98	3,310 (3.3)	-	-	348	0.8	-	-	-	-	2	893	2,067
2024	51,336	47,488	52	3,796 (7.4)	-	2,155	715	0.7	-	-	-	-	612	10	302
2025	39,423	34,985	-	4,439 (11.3)	-	2,362	732	263	-	-	197	-	617	17	251

※ 주1) ‘미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미수납액:징수결정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결과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1조 3,196억 3천 2백만원)은 발생사유가 ▶납세태만 47.6%, ▶무재산 36.7%, ▶납기 미도래 5.2%, ▶행방불명 3.1%, ▶기타 2.7%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서울시 전체에서는 5% 미만의 비중(3.1%)을 차지하는 ‘행방불명’ 이 민생노동국에서는 미수납액(44억 3천 9백만원) 중 절반 이상(53.2%, 23억 6천 2 백만원)을 발생시킨 사유로 기재되어 있어, 세입 징수여건상 민생노동국에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2025회계연도 서울시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사유별 구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미수납액 (미수납율)	결산서상 미수납사유 구분										
	(구성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회생법 에 의한 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1,319,632 (3.1)	484,662 (36.7)	40,260 (3.1)	627,769 (47.6)	27,648 (2.1)	2,320 (0.2)	13,989 (0.001)	5,484 (0.4)	3,785 (0.3)	22,724 (1.7)	36,006 (2.7)	68,960 (5.2)

- 그러나 이는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지난연도 수입(세외수입) 중 ‘중소유통물류센터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¹⁵⁾(23억 6천 2백만원)가 납부자인 두루조은협동조합(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에도, 결산서에는 미수납 사유를 ‘무재산’이 아닌 ‘행방불명’¹⁶⁾으로 잘못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발생한 착시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결산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경우에는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왜곡된 재정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결산의 순기능¹⁷⁾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민생노동국은 결산서 작성 및 검증에 있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한편 민생노동국의 ▶미수납액은 2021회계연도 14억 6천 6백만원, 2022회계연도 29억 1천 5백만원, 2023회계연도 33억 1천만원, 2024회계연도 37억 9천 6백만원, 2025회계연도 44억 3천 9백만원이며, ▶미수납률은 같은 기간 동안 2.0%, 2.2%, 3.3%, 7.4%, 11.3%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15) 2023년 2월 민간위탁 협약 해지 이후 수탁기관이 위탁장소(공유재산)를 서울시에 인도하지 않고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였기 때문에 2023년 12월 변상금(20억 1백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이후 변상금 체납이 지속되어 연체료가 가산되고 있음.

16)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은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11가지로 구분하면서, 그 중 ‘행방불명’을 주소지는 있으나 주소지 내에 살지 않고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납부자가 자연인(사람)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는 그 개념상 주소지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례(행방불명에 해당하는 사례)가 존재할 수 없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026. 1), p.330~331 참조.

17)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는 결산의 기능 중 하나로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수단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026. 1), p.5 참조.

2. 결산의 기능

라.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

- 결산심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알림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 행정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활용

< 최근 5년간 전체 미수납액 중 ‘지난연도 수입’(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민생노동국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	73,674	129,868	99,995	51,336	39,423
	미수납액 (미수납률)	1,466 (2.0)	2,915 (2.2)	3,310 (3.3)	3,796 (7.4)	4,439 (11.3)
민생노동국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1,290	1,488	2,775	3,077	4,004
	미수납액 (미수납률)	965 (74.8)	777 (52.3)	766 (27.6)	2,764 (89.8)	3,774 (94.2)
전체 세입 미수납액 중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		65.9	26.7	23.1	72.8	85.0

- 특히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당시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시스템 정비와 함께 체납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음에도,¹⁸⁾ ▶미수납액이 2023회계연도 7억 6천 6백만원, 2024회계연도 27억 6천 4백만원, 2025회계연도 37억 7천 4백만원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미수납률도 같은 기간 동안 27.6%, 89.8%, 94.2%로 높아지고 있음.
- 아울러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1%, 72.8%, 85.0%로 확대되고 있어, 민생노동국이 당해연도 중 징수하지 못한 세입을 사후에라도 수납처리하는 데 상당한 한계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민생노동국은 미수납액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지난연도 수입의 높은 미수납률을 감안하여 체납 발생 초기부터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장기 미수납 사유별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수납액이 더 이상 누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8)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생노동국 소관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2025. 6), p.15~16

마. 미편성된 세입의 징수결정 현황

- 2025년도 최종예산 기준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징수결정이 이루어진 세입과목은 총 7개 목으로, 3억 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천 7백만원 (15.7%)이 실제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2억 5천 4백만원(84.3%)이 발생되었는 바,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최종예산에 미편성된 세입에 대한 징수결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

회계명	부서명	세입과목 ^{주1)}	예산액	징수 결정액 ^{주2)}	실제 수납액 (수납률)	정리 보류액 (정리보류액 비율)	미수납액 (미수납율)	비고
합 계			-	302	47 (15.7)	- (0.0)	254 (84.3)	
일반회계	소상공인 정책과	부정이익 환수금	-	1	- (0.0)	- (0.0)	1 (100.0)	◦ 서울시랑상품권 할인보전금 부정수취 발생하여 환수를 위해 부과하였으나, 납세태만으로 인해 체납
	노동 정책과	불용품 매각대금	-	1	1 (100.0)	- (0.0)	- (0.0)	◦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종료(2025. 9.)로 인해 발생한 불용품(냉난방기 등) 매각대금 징수결정 및 수납
		변상금	-	49	39 (80.7)	- (0.0)	9 (19.3)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공유재산 무단점유(사용기간 만료 후 미퇴거)에 대한 변상금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미도래로 인해 미수납 ※ 2026. 1.~2. 납부 완료
	상권 활성화과	변상금	-	3	3 (100.0)	- (0.0)	- (0.0)	◦ 서울풍물시장(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수납
	공정 경제과	부정이익 환수금	-	244	- (0.0)	- (0.0)	244 (100.0)	◦ 2021년 사회적경제 포스트코로나 리부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환수를 위해 부과하였으나, 행정심판이 진행되어 부과처분의 집행정지가 결정됨에 따라 미수납 ◦ 2021~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납세태만에 따른 미수납
	농수산 유통과	기타 과태료	-	0.2	0.2 (100.0)	- (0.0)	- (0.0)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발생하여 과태료 부과 및 수납
	농업 기술센터	불용품 매각대금	-	3	3 (100.0)	- (0.0)	- (0.0)	◦ 당초 2024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징수 예정이었으나, 농업실습교육장 이전에 따라 불용물품(농기계 등) 매각 지연되어 2025년도에 징수결정 및 수납
도시개발 특별회계	< 해당 사항 없음 >							
균형발전 특별회계	< 해당 사항 없음 >							

※ 주1) 세입과목은 장·관·항·목 중 ‘목 단위’로 작성하되,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징수결정이 발생한 과목만 포함한 것임(그 외 과목은 작성 생략).

주2) 징수결정액이 0보다 작은 음수인 경우(환급액 발생 사례)는 제외한 것임.

- 이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속하는 불용품매각대금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에 속하는 부정이익환수금·변상금·과태료에서 예산과 불일치하는 징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비교할 때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은 세입의 발생여부 및 발생규모를 예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그간 서울시는 결산검사와 결산심사를 통해 세입예산 편성 없이 수납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받아 왔으며, ▶서울시의 「예산편성 잠정기준」에도 세입예산 편성 없는 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특히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의 경우에는 제도변경 사항·적발 건수·징수추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규모를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I. 세입예산 요구 지침

1. 세입예산 편성 방향

- 신규 세입원 발굴 및 각종 임대료·수수료 등의 현실화 노력으로 세입증대
- 세입 요구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 내역의 명확한 제시로 세입 추계 정확성 향상
- 매년 지적되는 세입예산 편성 없는 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

< 결산검사 지적사항 >

- 공유재산임대료 세입 예산액과 결산액 간의 과도한 차액 발생
 - ▶ 임대료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세수 오차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요구됨
- 세입예산 편성 없는 세입 지양
 - ▶ 변상금, 과태료, 불용품매각대금 등 예측 가능한 모든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지난년도 수입의 관행적인 예산 미편성 또는 과소 편성을 지양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항목의 기계적 예산 편성의 지양
 -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자치구에 반납 시기를 미리 안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시기 통제가 가능한 바, 최대한 전년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추계하여 산정 권고

2. 세입예산 요구방법

(1) 일반회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 제도변경 사항, 적발 건수, 징수추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규모 편성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2024. 7), p.33~34, p.40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농수산물통과 소관 ‘기타 과태료’는 매년, ▶노동정책과 소관 ‘변상금’은 2022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과 실제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바,¹⁹⁾ 수년간 징수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세입과목에 대해서까지 추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세입예산은 미편성하고 수납만 반복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2025회계연도에 미편성된 세입이 징수결정된 과목의 이전 3개 회계연도 결산 결과 >

(단위 : 천원)

부서명 (회계명)	세입과목	2022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결산		2025회계연도 결산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소상공인정책과 ^{주1)} (일반회계)	부정이의 환수금	-	- (-)	-	- (-)	-	157 (-)	-	1,141 (-)
노동정책과 ^{주2)} (일반회계)	불용품 매각대금	-	- (-)	-	- (-)	-	- (-)	-	1,451 (1,451)
	변상금	-	- (-)	-	8,559 (5,981)	-	46,509 (46,509)	-	48,817 (39,396)
상권활성화과 ^{주3)} (일반회계)	변상금	-	4,609 (-)	-	2,990 (2,990)	-	- (-)	-	3,310 (3,310)
공정경제과 ^{주4)} (일반회계)	부정이의 환수금	-	- (-)	-	- (-)	-	- (-)	-	243,675 (-)
농수산물통과 ^{주5)} (일반회계)	기타 과태료	-	1,058 (800)	-	650 (650)	-	450 (200)	-	200 (200)
농업기술센터 ^{주6)} (일반회계)	불용품 매각대금	5,000	6,800 (6,800)	1,000	1,300 (1,300)	667	- (-)	-	3,100 (3,100)

※ 주1)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는 2023회계연도 결산까지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이었음.

주2)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는 2023회계연도 결산까지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이었음.

주3)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는 2023회계연도 결산까지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이었음.

주4)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는 2023회계연도 결산까지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이었음.

주5) 민생노동국 ‘농수산물통과’는 2023회계연도 결산까지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물통과담당관’이었음.

19) 2026년도 예산(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포함)에도 해당 세입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바. 예산액 대비 부족·초과 수납 현황

1) 부족 수납 현황

- 민생노동국이 2025년도에 세입예산을 편성한 세입과목(총 63개 목) 중 30개 목은 예산액 대비 부족 수납이 발생하였는바, 해당 과목의 부족수납액을 합산하면 총 77억 5천 4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예산액 대비 부족수납 과목 현황^{주1)} >

(단위 : 천원, %)

회계명	부서명	세입과목 ^{주2)}	예산액 ①	실제수납액 ②	부족수납액 ③=②-①	부족수납률 ③/①	부족수납 발생 사유
민생노동국 총계 ^{주3)}			23,202,428	15,448,556	△7,753,872	△33.4	
일반회계	합계 ^{주3)}		15,706,734	12,152,880	△3,553,854	△22.6	
	소상공인 정책과	소계 ^{주3)}	8,251,680	5,846,768	△2,404,912	△29.1	
		기타이자수입	67,864	45,744	△22,120	△32.6	◦ 소상공인 단체 지원사업 및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정산 이자수입 관련 자치구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한 납부 지연 ◦ 최근 3년간 평균 이자징수율을 기준으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부족 수납
		지남연도 수입	2,419,219	36,427	△2,382,792	△98.5	◦ 중소기업물류센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연체료 관련 납부기관(법인) 무재산, 구성원 연락두절로 체납 ◦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수취 할인보전금 환수건 납세 태만으로 체납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5,764,597	5,764,596	△1	0.0	◦ 예산편성 당시 천원 단위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은 원 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차액 발생
	노동 정책과	소계 ^{주3)}	481,959	336,715	△145,244	△30.1	
		기타사용료	82,912	71,515	△11,397	△13.7	◦ 예산편성 당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사용면적(240㎡)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추계하였으나, 실제 사용면적(169㎡)이 축소됨에 따라 부족 수납
		사도보조금등 반환수입	224,915	174,175	△50,740	△22.6	◦ 자치단체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자치단체보조사업 교부율 및 반환율을 기준으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부족 수납

※ 주1) 예산액이 0인 경우(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으나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 것임.

주2) 세입과목은 장·관·항·목 중 ‘목 단위’로 작성하되, 예산액 대비 부족수납된 과목만 포함한 것임.

주3) 총계·합계·소계는 부족수납이 발생한 과목만 합산한 것임.

(단위 : 천원, %)

회계명	부서명	세입과목 ^{주2)}	예산액 ①	실제수납액 ②	부족수납액 ③=②-①	부족수납률 ③/①	부족수납 발생 사유
일반회계	노동 정책과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43,647	90,525	△53,122	△37.0	◦ 민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3년간 교부율 및 반환율을 기준으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부족 수납
		지난연도 수입	16,485	500	△15,985	△97.0	◦ 최근 3년간 지난연도 수입 결산액 등을 기준으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부족 수납
		특별교부세	14,000	-	△14,000	△100.0	◦ 간주처리(2025. 11.)를 통해 겨울철 한파 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3억 5천만원) 중 일부를 예산 반영하였으나, 간주처리 이전 시점(2025. 10.)에 이미 재난안전실이 특별교부세 전액에 대해 징수결정 및 수납을 완료함에 따라 민생노동국 차원에서는 별도의 징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상권 활성화과	소계 ^{주3)}	2,266,424	1,962,048	△304,376	△13.4	
		공유재산임대료	696,397	589,506	△106,891	△15.3	◦ 서울품물시장 점포 임대료 체납으로 부족 수납 ◦ 서울품물시장 점포 임대료 환급 건 발생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에 따라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기 위한 환급, 점포 계약 포기 및 해지에 따른 환급)
		지난연도 수입	171,217	120,187	△51,030	△29.8	◦ 서울품물시장 점포 임대료 체납 ◦ 전통신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지원 집행잔액, 전통신장 전기시설보수 사업 이자 등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납부 지연
		기금	1,398,810	1,252,355	△146,455	△10.5	◦ ‘전통신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 사업 당해 연도 공모 결과 실수요에 따라 국비 교부액 감액조정
	공정 경제과	소계 ^{주3)}	1,120,834	910,213	△210,621	△18.8	
		기타사용료	66,504	-	△66,504	△100.0	◦ 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관리비를 예산편성된 세입과목(기타사용료)가 아닌 그외수입으로 잘못 수납함에 따라 부족 수납
		기타이자수입	32,628	16,459	△16,169	△49.6	◦ 정산이자 반납수입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징수실적 토대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부족 수납 발생(자치구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한 납부 지연)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2,054	18,805	△3,249	△14.7	◦ 민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징수실적 토대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사업 정산결과 부족수납 발생
		기타과태료	196,972	161,690	△35,282	△17.9	◦ 최근 3년간 징수실적 토대로 세입 추계 하였으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과태료 체납
		지난연도 수입	159,944	70,527	△89,418	△55.9	◦ 최근 3년간 징수실적 토대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납세대만 등 징수실적 저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42,732	642,732	△0.117	0.0	◦ 최근 3년간 국비 반환율 적용하여 세입추계 하였으나, 사업 정산결과 소액부족 수납

※ 주1) 예산액이 0인 경우(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으나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 것임.

주2) 세입과목은 장·관·항·목 중 ‘목 단위’로 작성하되, 예산액 대비 부족수납된 과목만 포함한 것임.

주3) 총계·합계·소계는 부족수납이 발생한 과목만 합산한 것임.

(단위 : 천원, %)

회계명	부서명	세입과목 ^{주2)}	예산액 ①	실제수납액 ②	부족수납액 ③=②-①	부족수납률 ③/①	부족수납 발생 사유
일반회계	농수산 유통과	소계 ^{주3)}	3,423,512	3,002,926	△420,586	△12.3	
		공유재산임대료	2,545,320	2,195,270	△350,050	△13.8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2025. 9. 22.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8호) ^{주2)} 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마포농수산물시장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기 위해 환급을 추진함에 따라 부족 수납 발생
		사·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106,208	76,306	△29,902	△28.2	◦ 자치단체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3년간 교부율 및 집행률 기준으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부족 수납
		위탁비반환수입	330,576	325,839	△4,737	△1.4	◦ 위탁비 반환금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3년간 교부율 및 집행률 기준으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부족 수납
		과징금	81,268	61,530	△19,738	△24.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부족 수납
		지난연도 수입	10,306	3,010	△7,296	△70.8	◦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부족 수납
		국고보조금	46,353	38,270	△8,083	△17.4	◦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국비 교부액 감액되어 부족 수납 발생
		기금	303,481	302,501	△980	△0.3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국비 교부액 감액되어 부족 수납 발생
	농업기술 센터	소계 ^{주3)}	162,325	94,210	△68,115	△42.0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365	3,230	△135	△4.0	◦ 농업인 영농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이자 수입 감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00,000	40,000	△60,000	△60.0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감액 교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8,960	50,980	△7,980	△13.5	◦ 농업지도자 영농융자금 상환계획 변경으로 예산액과 실제수납액 간 차이 발생
도시개발 특별회계	합계 ^{주3)}		4,200,000	-	△4,200,000	△100.0	
	농수산 유통과	소계 ^{주3)}	4,200,000	-	△4,200,000	△100.0	
		기금	1,800,000	-	△1,800,000	△100.0	◦ '가평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관련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재정사업 심의(2025. 1.~10.),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협의·조정(2025. 11.~2026. 4.)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국비 미교부, 지방채 미발행
		정부자금채	2,400,000	-	△2,400,000	△100.0	
균형발전 특별회계	합계 ^{주3)}		3,295,694	3,295,676	△18	0.0	
	상권 활성화과	소계 ^{주3)}	3,295,694	3,295,676	△18	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295,694	3,295,676	△18	0.0	◦ '전통시장 주치환경개선(주차장 이용보조)' 관련 현원 단위까지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교부 시 백만원 단위까지만 반영하여 교부됨에 따라 소액 부족 수납

※ 주1) 예산액이 0인 경우(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으나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 것임.

주2) 세입과목은 장·관·항·목 중 '목 단위'로 작성하되, 예산액 대비 부족수납된 과목만 포함한 것임.

주3) 총계·합계·소계는 부족수납이 발생한 과목만 합산한 것임.

- 예산액 대비 부족수납이 발생한 주요 내역을 세입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은 ▶민생노동국 소속 부서(6개 부서)²⁰⁾ 중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5개 부서의 ‘전년도 이전 미수납액’과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중소유통물류센터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를 포함하여 총 27억 7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총 23억 8천 3백만원(98.5%)이 부족 수납된 것임.
- 이 중 ‘전년도 이전 미수납액’의 경우 5개 부서가 예산편성 시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을 토대로 세입을 추계하여 4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치구의 반납예산 미편성·납부자의 납부태만 등으로 인해 예산액(4억 9백만원) 대비 1억 7천 8백만원(43.6%)이 부족 수납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민생노동국은 ‘전년도 이전 미수납액’의 수납 규모를 추계함에 있어 시계열에 의한 방식²¹⁾에 따라 최근 수년간의 결산 결과를 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동 세입과목의 예산액과 실제수납액(결산액)을 비교하면 금액(증감액)상으로는나 비율(증감율)상으로는나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 기존의 추계방식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추계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2025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전년도 이전 미수납액’을 예산 편성한 5개 부서 모두에서 예산액 대비 부족수납이 발생하고 있어, 체납관리 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 5과(소상공인정책과, 노동정책과, 상권활성화과, 공정경제과, 농수산유통과)와 1센터(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것임.

21) 참고로 지방세 등을 추정하는 세수 추계방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단순추계방식, 세수탄력성에 의한 방식, 시계열에 의한 방식 등이 있음. 이 중 시계열에 의한 추계방식은 과거연도의 결산자료를 근거로 미래의 세수를 예측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세부적으로는 선형모델에 의한 방식, 비선형모델에 의한 방식, 지수함수에 의한 방식, 이차함수의 의한 방식 등이 있음. :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4. 7), p.358~359 참조.

< 최근 3년간 ‘지난연도 수입’ 예산액과 실제수납액 간 비교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주1)}	2023회계연도 결산 ^{주2)}				2024회계연도 결산				2025회계연도 결산			
	예산액	실제 수납액	초과·부족 수납액	초과·부족 수납률	예산액	실제 수납액	초과·부족 수납액	초과·부족 수납률	예산액	실제 수납액	초과·부족 수납액	초과·부족 수납률
	①	②	③=②-①	③/①	④	⑤	⑥=⑤-④	⑥/④	⑦	⑧	⑨=⑧-⑦	⑨/⑦
민생노동국 총계	946	1,911	965	101.9	511	261	△250	△48.9	2,777	231	△2,547	△91.7
소상공인정책과	290	158	△132	△45.4	156	50	△106	△67.9	2,419 ^{주3)}	36	△2,383	△98.5
노동정책과	47	97	50	104.7	38	2	△36	△94.3	16	0.5	△16	△97.0
상권활성화과	149	307	159	106.7	120	157	37	30.6	171	120	△51	△29.8
공정경제과	441	134	△307	△69.6	181	51	△131	△72.1	160	71	△89	△55.9
농수산유통과	19	1,214	1,195	6276.3	16	1	△15	△92.4	10	3	△7	△70.8

※ ‘초과·부족수납액’과 ‘초과·부족수납률’은 양수의 경우 예산액 대비 초과수납, 음수의 경우 예산액 대비 부족수납임.

주1)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3년간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편성·징수 내역 없음.

주2) 2023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실·본부·국명은 노동공정상생정책과, 부서명은 소상공인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상권활성화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농수산유통담당관이었음.

주3) 소상공인정책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결과는 ‘중소유통물류센터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예산액 23억 6천 8백만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전년도 이전 미수납액’에 한정할 경우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5천 1백만원, 실제수납액은 3천 6백만원, 부족수납액은 1천 4백만원, 부족수납률은 28.7%임.

- 그리고 ‘중소유통물류센터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는 관련 법령과 조례²²⁾에 따라 재산평가액, 대부료 및 연체료의 요율, 점유·연체기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부과금액 23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2025회계연도 중 주기적으로 체납고지 및 재산조회를 추진하였음에도 변상금 및 연체료가 납부되지 않고 납부기관 명의의 재산도 확인되지 않아 예산액(23억 6천 8백만원) 전액이 부족 수납된 것임.

< 중소유통물류센터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징수 개요 >

- 부과대상 : 두루조은협동조합
- 부과사유 : 민간위탁 협약 해지 후 구(舊) 수탁기관(두루조은협동조합)의 재산 인도의무 미이행 및 사유재산 무단점유

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및 제29조.

- 협약해지 사유 및 일자 : 수탁기관의 반복적 협약 위반 및 부실 운영에 따른 협약 해지(2023. 2. 28.)
- 무단점유 대상 시유재산 : 구(舊)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물 4,444㎡ 및 부지 7,884㎡
- 무단점유 기간 : 2023. 3. 1. ~ 7. 6. (128일) ※ 2023. 7. 6. 수탁재산 인도 강제집행
- 2025년도 부과금액 : 총 23억 6,815만 740원 ※ 202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천원 단위 미만 절사함
 - 변상금(원금) : 20억 79만 2,180원
 - 2025. 12. 31. 기준 연체료 : 3억 6,735만 8,560원
- 그간의 추진경위
 -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2023. 10. 20. ~ 2023. 11. 10.
 -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고지 : 2023. 12. 8. ※ 당시의 납부기한 : 2024. 2. 28.
 - 독촉고지 : (1차) 2024. 3. 6. (2차) 2024. 5. 23. (3차) 2024. 6. 14.
 - 체납고지 : (1차) 24. 6. 13. (2차) 2025. 6. 26. (3차) 2025. 7. 30. (4차) 2025. 8. 29. (5차) 2025. 10. 1. (6차) 2025. 10. 29. (7차) 2025. 11. 28. (8차) 2025. 12. 30. (9차) 2026. 1. 30. (10차) 2026. 3. 5. (11차) 2026. 4. 29.
 - 재산조회 : (1차) 2024. 9. 20. (2차) 2025. 6. 12. (3차) 2025. 11. 3. ※ 재산조회 결과 : 조합명의 재산 부존재
 - 고액체납 38세금징수와 인계 : 2026. 3. 9.
- 향후 계획
 - 주기적인 체납고지(매달) 및 재산조회(반기별)를 통해 재산 발견 시 압류 및 조치

- ‘중소유통물류센터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는 2024회계연도 결산부터 민생노동국의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²³⁾을 대폭 증가시킨 주요 원인으로 2026년도 세입예산에도 동일한 세입과목(지난년도 수입)으로 23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2026년도 중에는 반드시 수납될 수 있도록 징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정부자금채’는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인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지방채 2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재정사업 심의(2025. 1.~10.),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협의·조정(2025. 11.~2026. 4.)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지방채가 발행되지 않아 예산액(24억원) 전액이 부족 수납된 것임.

23)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 발생규모 변동 추이 : (2021회계연도) 9억 6천 5백만원 (2022회계연도) 7억 7천 7백만원 (2023회계연도) 7억 6천 6백만원 (2024회계연도) 27억 6천 4백만원 (2025회계연도) 37억 7천 4백만원

- ‘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편성하는 세입과목으로, 총 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35억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²⁴⁾ 이 중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면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부터 지원될 예정이던 보조금이 전액(18억원) 미교부되는 등 국비 교부액이 감소하여 예산액(35억 2백만원) 대비 19억 4천 7백만원(55.6%)이 부족 수납된 것임.
- ‘정부자금채’와 ‘기금’에서 예산액(총 59억 2백만원) 대비 부족 수납된 규모는 총 43억 4천 7백만원으로, 이 중 96.6%(42억원)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 중단에 따른 것임.
- 소관부서(농수산물유통과)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기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것은 2025회계연도 중 기획예산처 협의·조정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던 의도로 이해됨.
- 다만 2025년 8월 서울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할 당시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후속절차까지 이행한 후 사업 재개가 가능한 시점이 불분명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의 수납·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함으로써 예산과 실제 간의 간극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24) 민생노동국 2025년도 세입예산 중 기금(511-03)을 편성한 세부사업 내역

- 일반회계
 - ▶ 상권활성화과 소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 : 1,398,810천원 편성
 - ▶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 254,600천원
 - ▶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기본형 공익직불금 운영비 지원’ : 3,780천원
 - ▶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 1,300천원
 - ▶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농지이용관리지원’ : 43,601천원
 - ▶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 200천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 ▶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 1,800,000천원

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임.

- ‘특별교부세’는 2025년 10월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한파 대책비로 서울시에 교부한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²⁵⁾(총 3억 5천만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민생노동국(노동정책과)이 ‘한파 대비 이동노동자 방한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11월 간주처리를 통해 1천 4백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이나, 세입결산 결과 민생노동국의 수납내역이 없어 예산액(1천 4백만원) 전액이 부족 수납된 것임.

< ‘한파 대비 이동노동자 방한물품 지원’ 관련 간주처리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소관 부서
과목	기정 예산	금회 간주	변경 예산	부담 기관	예산과목 및 내역	기정 예산	금회 간주	변경 예산	
특별 교부세	-	14	14	행정 안전부	정책사업명: 노동존중문화 정착	(x176) 18,166	(x-) 14	(x176) 18,180	노동 정책과
					단위사업명: 노동자 복지 증진	(x176) 16,444	(x-) 14	(x176) 16,458	
					세부사업명: 한파 대비 이동노동자 방한물품 지원	(x-) -	(x-) 14	(x-) 14	
					통계목: 사무관리비	(x-) -	(x-) 14	(x-) 14	
					내역: 한파 대비 방한물품 구매	(x-) -	(x-) 14	(x-) 14	

※ 자료출처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13726 (2025. 11. 28.) “2025 회계연도 제8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알람” 재구성

- 이는 민생노동국의 간주처리(2025. 11.)보다 앞선 시점인 2025년 10월 서울시의 한파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총괄하는 재난안전실(재난안전예방과)이 특별교

25)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국가지방협력수요 특별교부세로 구분됨.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부세 전액(3억 5천만원)에 대해 이미 징수결정 및 수납을 완료함에 따라 민
생노동국 차원에서는 별도로 징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 참고로 동 특별교부세(3억 5천만원)는 ▶10월 30일 재난안전실이 행정안전부
로부터 교부된 자금의 세입처리를 재무국에 의뢰하였으며,²⁶⁾ ▶이후 11월
27일에는 재난안전실·복지실·민생노동국이 각각 2억 3천 6백만원, 1억원,
1천 4백만원을 간주처리하여 실·국별 한파 대책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재난안전실은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이 발생하였으나, 복지실과 민생노동
국의 경우에는 세입예산을 반영하였음에도 실제 수납이 발생하지 않았음.

< 겨울철 한파 대책을 위한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조직명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세출결산상 관련 세부사업명
계		350	350	350	-	-	
일반 회계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236	350	350	-	-	◦ 한파대책비
일반 회계	복지실 지활지원과	100	-	-	-	-	◦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일반 회계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14	-	-	-	-	◦ 한파 대비 이동노동자 방한물품 지원 ^{주1)}

※ 주1) 민생노동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한파 대비 이동노동자 방한물품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400만원 중
1,358만원(97.0%)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2만원(3%)이 발생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11월 10일 민생노동국이 서울시 예산부서(기획조정실 예산담
당관)에 간주처리를 요청한 공문²⁷⁾에는 특별교부세 전액(3억 5천만원)에 대
한 재난안전실의 세입처리 의뢰서가 첨부되어 있어, 민생노동국은 간주처
리를 통해 소관 세입예산으로 반영하더라도 실제 징수 및 수납은 재난안

26)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15639 (2025. 10. 30.) “국고보조금 세입처리 의뢰서”
※ 내용상 특별교부세의 세입처리를 의뢰하는 것이나 공문 제목에는 국고보조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임.

27)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12273 (2025. 11. 10.)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요청 (한파 대비 이동노동자 방한물
품 지원)”
※ 내용상 특별교부세의 간주처리를 요청하는 것이나 공문 제목에는 국고보조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역시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임.

전실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은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으로서 세입예산에는 회계연도 중 실제 수납될 것으로 전망되는 세입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소관부서가 실제 수납 가능성이 없다고 인지하고 있는 세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사례는 바람직한 재정운용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서울시 예산부서는 그간 간주처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소방특별회계 등 일부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관행적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동일 부서에 반영하여 왔는데, 소관부서가 세입이 실제로는 수납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간주처리를 통해 세입·세출에 대한 일괄 반영을 요청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납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예산까지 함께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이해됨.
- 그러나 간주처리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 및 각호²⁸⁾에 따라 제한된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성립전 예산 사용과는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총칙」²⁹⁾에 따라 활용되는 제도로, 현행 법령과 기준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총칙」에서는 ‘일부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세입예산 소관부서와 세출예산 소관부서를 반드시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등과 같이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서울시 예산부서는 세출사업 추진부서와 세입의 실제 수납부서가

28)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9) ‘2025년도 예산서’ 중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일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간주처리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회계명보다는 세입의 실제수납이 발생될 부서와 세출사업을 추진할 부서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부서를 일원화 또는 이원화하도록 함으로써, 동 특별교부세(1천 4백만원)와 같이 실제 수납이 수반되지 않는 세입이 세출사업 추진부서의 세입예산에 허수로 반영되는 사례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2) 초과 수납 현황

- 민생노동국이 2025년도에 세입예산을 편성한 세입과목(총 63개 목) 중 28개 목은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이 발생하였는바, 해당 과목의 초과수납액을 합산하면 총 50억 2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예산액 대비 초과수납 과목 현황^{주1)} >

(단위 : 천원, %)

회계명	부서명	세입과목 ^{주2)}	예산액 ①	실제수납액 ②	초과수납액 ③=②-①	초과수납률 ③/①	초과수납 발생 사유
민생노동국 총계 ^{주3)}			6,595,097	11,597,130	5,002,033	75.8	
일반회계	합계 ^{주3)}		6,595,097	11,597,130	5,002,033	75.8	
	소상공인 정책과	소계 ^{주3)}	3,446,249	5,227,320	1,781,071	51.7	
		사모보조금등 반환수입	101,779	286,969	185,190	182.0	◦ 자치단체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예산 교부율, 반환율 등을 기준으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312,040	590,176	278,136	89.1	◦ 민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예산 교부율, 반환율 등을 기준으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
		위탁비반환수입	2,103,988	2,123,320	19,332	0.9	◦ 2024년 사업정산결과 및 최근 3년간 사업 정산결과 등을 기준으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그외수입	928,442	2,226,855	1,298,413	139.8	◦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이자수입, 할인보전금 환급금을 정확히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어 2024회계연도 결산 전망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

※ 주1) 예산액이 0인 경우(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세입을 징수·수납한 경우)는 제외한 것임.

주2) 세입과목은 장·관·항·목 중 ‘목 단위’로 작성하되, 예산액 대비 초과수납된 과목만 포함한 것임.

주3) 총계·합계·소계는 초과수납이 발생한 과목만 합산한 것임.

(단위 : 천원, %)

회계명	부서명	세입과목 ^{주2)}	예산액 ①	실제수납액 ②	초과수납액 ③=②-①	초과수납률 ③/①	초과수납 발생 사유
일반회계	노동 정책과	소계 ^{주3)}	751,913	894,459	142,546	19.0	
		기타이자수입	22,993	32,938	9,945	43.3	◦ 최근 3년간 보조사업·민간위탁사업 정산이 자 발생률을 기준으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
		위탁비반환수입	537,748	586,062	48,314	9.0	◦ 2024년 사업정산결과 및 최근 3년간 사업 정산결과 등을 기준으로 세입 추계하였으 나,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그외수입	5,967	82,905	76,938	1289.4	◦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임대차보증금 반환(65,000천원) ◦ 2024년 민간보조사업 정산금 일부를 기타 이자수입으로 수납하여야 하나, 그외수입 으로 잘못 수납(5,609천원)
		국고보조금	176,158	183,508	7,350	4.2	◦ '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도 심제조업 지원)' 관련 국비가 교부되어 세입처리 하였으나, 자치구의 수요가 부 족하여 사업을 미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 라 기 교부된 국비를 예산에 미반영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9,047	9,047	0.030	0.0	◦ 2024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반환금으 로, 천원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은 원 단위로 이루어져 소액 초과 수납
	상권 활성화과	소계 ^{주3)}	1,789,658	4,422,543	2,632,885	147.1	
		기타이자수입	247,860	572,659	324,799	131.0	◦ 보조사업·민간위탁사업 정산이자 반환수입을 편성함에 있어 2024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사·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1,116,285	2,954,552	1,838,267	164.7	◦ 자치단체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을 편성함 에 있어 2024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추계 치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3,800	200,000	196,200	5163.2	◦ 민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을 편성함에 있어 2024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추계치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부정수급(2024년)으 로 인한 전액 반납(환수) 사례 발생
		위탁비반환수입	421,004	683,034	262,030	62.2	◦ 위탁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을 편성함에 있어 2024년 사업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추계치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그외수입	709	12,297	11,588	1634.4	◦ 최근 3개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추계치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공정 경제과	소계 ^{주3)}	422,880	751,171	328,291	77.6	
		기타사업수입	47,030	75,258	28,228	60.0	◦ 함께누리몰 판매수수료를 편성함에 있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정산액을 반 영하였으나, 실제로는 2024년 1월부터 12 월까지의 정산액(3천 9백만원)과 2025년 1 월부터 11월까지의 정산액(3천 6백만원)이 수납되어 초과 수납 발생
		사·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85,681	104,082	18,401	21.5	◦ 자치단체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을 편성 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징수실적 토대로 세 입 추계하였으나, 초과수납 발생

※ 주1) 예산액이 0인 경우(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세입을 징수·수납한 경우)는 제외한 것임.

주2) 세입과목은 장·관·항·목 중 '목 단위'로 작성하되, 예산액 대비 초과수납된 과목만 포함한 것임.

주3) 총계·합계·소계는 초과수납이 발생된 과목만 합산한 것임.

(단위 : 천원, %)

회계명	부서명	세입과목 ^{주2)}	예산액 ①	실제수납액 ②	초과수납액 ③=②-①	초과수납률 ③/①	초과수납 발생 사유
일반회계	공정 경제과	<u>위탁비반환수입</u>	251,740	485,245	233,505	92.8	◦ 위탁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징수실적 토대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사업 정산결과 초과수납 발생
		<u>그외수입</u>	38,429	86,588	48,159	125.3	◦ 기타사용료로 예산편성한 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관리비를 그외수입으로 잘못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 발생
	농수산 유통과	소계 ^{주3)}	167,867	259,225	91,358	54.4	
		기타사용료	8,553	10,515	1,962	22.9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입주기업 이용료를 2024회계연도 결산 전망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기타이자수입	23,832	53,542	29,710	124.7	◦ 보조사업-위탁사업 정산이자 반납수입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
		<u>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u>	11,401	30,795	19,394	170.1	◦ 민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3년간 교부율 및 집행을 기준으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
		<u>그외수입</u>	3,034	43,327	40,293	1328.0	◦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1,047	121,047	0.039	0.0	◦ 세입예산 편성시 천원 단위로 편성하여 원 단위로 실제 수납 시에는 소액 초과 수납
	농업기술 센터	소계 ^{주3)}	16,530	42,412	25,882	156.6	
		기타이자수입	1,243	2,735	1,492	120.1	◦ 보조사업 정산이자 반납수입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이자 징수를 평균으로 세입을 추계하였으나, 이자 증가로 인해 초과 수납
		<u>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u>	2,951	9,725	6,774	229.5	◦ 민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정산결과를 기준으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가 교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
		<u>그외수입</u>	3,557	3,703	146	4.1	◦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추계치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06	1,306	0.450	0.0	◦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율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7,473	24,941	17,468	233.8	◦ 최근 3년간 정산결과를 기준으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가 교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
도시개발 특별회계			<해당 사항 없음>				
균형발전 특별회계			<해당 사항 없음>				

※ 주1) 예산액이 0인 경우(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세입을 장수·수납한 경우)는 제외한 것임.

주2) 세입과목은 장·관·항·목 중 ‘목 단위’로 작성하되, 예산액 대비 초과수납된 과목만 포함한 것임.

주3) 총계·합계·소계는 초과수납이 발생한 과목만 합산한 것임.

- 예산액 대비 초과수납이 발생한 주요 내역을 세입과목별로 살펴보면,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223-01)은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5개 부서가 최근 3년간 또는 2024회계연도 징수실적을 토대로 자치구로부터 반환받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한 것으로, 이 중 소상공인정책과·상권활성화과·공정경제과 등 3개 부서의 경우 예산액(총 13억 4백만원) 대비 20억 4천 2백만원(156.6%)이 초과 수납되었음.³⁰⁾
-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23-02)은 6개 부서 모두 최근 3년간 또는 2024회계연도 징수실적을 토대로 민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이 중 소상공인정책과·상권활성화과·농수산유통과·농업기술센터 등 4개 부서의 경우 예산액(총 3억 3천만원) 대비 5억 1백만원(151.6%)이 초과 수납되었음.³¹⁾
- ‘위탁비 반환수입’ (223-03)은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5개 부서가 2024년도 사업정산 결과 및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으로부터 반환받을 위탁·대행사업비 사용잔액을 편성한 것으로, 이 중 소상공인정책과·노동정책과·상권활성화과·공정경제과 등 4개 부서의 경우 예산액(33억 1천 4백만원) 대비 5억 6천 3백만원(17.0%)이 초과 수납되었음.³²⁾

30)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초과 수납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정책과는 예산액(1억 2백만원) 대비 1억 8천 5백만원(182.0%), ▶상권활성화과는 예산액(11억 1천 6백만원) 대비 18억 3천 8백만원(164.7%), ▶공정경제과는 예산액(8천 6백만원) 대비 1천 8백만원(21.5%)이 각각 초과 수납된 것임.

※ 이에 반해 노동정책과·농수산유통과를 포함한 2개 부서의 경우 예산액(총 3억 3천 1백만원) 대비 8천 1백만원(24.4%)이 부족 수납된 것으로, 부서별로는 ▶노동정책과의 경우 예산액(2억 2천 5백만원) 대비 5천 1백만원(22.6%), ▶농수산유통과의 경우 예산액(1억 6백만원) 대비 3천만원(28.2%)이 각각 부족 수납되었음.

※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에 대한 편성·수납 내역이 없음.

31)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초과 수납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정책과는 예산액(3억 1천 2백만원) 대비 2억 7천 8백만원(89.1%), ▶상권활성화과는 예산액(4백만원) 대비 1억 9천 6백만원(5163.2%), ▶농수산유통과는 예산액(1천 1백만원) 대비 1천 9백만원(170.1%),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액(3백만원) 대비 7백만원(229.5%)이 각각 초과 수납된 것임.

※ 이에 반해 노동정책과·공정경제과를 포함한 2개 부서의 경우 예산액(총 1억 6천 6백만원) 대비 5천 6백만원(34.0%)이 부족 수납된 것으로, 부서별로는 ▶노동정책과의 경우 예산액(1억 4천 4백만원) 대비 5천 3백만원(37.0%), ▶공정경제과의 경우 예산액(2천 2백만원) 대비 3백만원(14.7%)이 각각 부족 수납되었음.

32) ‘위탁비 반환수입’ 수납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정책과는 예산액(21억 4백만원) 대비 1천 9백만원(0.9%), ▶노동정책과는 예산액(5억 3천 8백만원) 대비 4천 8백만원(9.0%), ▶상권활성화과는 예산액(4

- 이와 관련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보조금 반환수입’³³⁾(223)에 대해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바,³⁴⁾ 해당 과목에 대한 편성·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액 대비 52억 4천 7백만원(83.4%)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2025회계연도에는 29억 6천 4백만원(51.3%)이 초과 수납되어 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비율 모두 감소하였음.

< 최근 3년간 ‘보조금 반환수입’ 예산액과 실제수납액 간 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회계연도 결산 ^{주2)}				2024회계연도 결산				2025회계연도 결산			
	예산액	실제 수납액	초과 수납액	초과 수납률	예산액	실제 수납액	초과 수납액	초과 수납률	예산액	실제 수납액	초과 수납액	초과 수납률
	①	②	③=②-①	③/①	④	⑤	⑥=⑤-④	⑥/④	⑦	⑧	⑨=⑧-⑦	⑨/⑦
보조금 반환수입 (223)	6,441	8,418	1,977	30.7	6,292	11,539	5,247	83.4	5,776	8,740	2,964	51.3
사·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223-01)	3,460	4,030	570	16.5	2,352	6,970	4,619	196.4	1,635	3,596	1,961	120.0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23-02)	581	886	306	52.6	519	687	168	32.3	496	940	444	89.6
위탁비 반환수입 (223-03)	2,400	3,501	1,101	45.9	3,421	3,882	460	13.5	3,645	4,204	558	15.3

- 즉 2025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추계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보조금 반환수입’ 중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과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의 경우에는 여전히 예산액의 2배에 가까운 실제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어³⁵⁾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억 2천 1백만원) 대비 2억 6천 2백만원(62.2%), ▶공정경제과는 예산액(2억 5천 2백만원) 대비 2억 3천 4백만원(92.8%)이 각각 초과 수납된 반면, ▶농수산유통과는 예산액(3억 3천 1백만원) 대비 5백만원(1.4%)이 부족 수납되었음.

33) 세입과목은 그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되는바, 항 과목인 ‘보조금 반환수입’(223)은 목 과목인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223-01),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223-02), ‘위탁비 반환수입’(223-03)을 포괄하는 상위 과목임.

34)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생노동국 소관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2025. 6), p.14~15

35)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은 예산액의 2.2배,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예산액의 1.9배임.

- 따라서 민생노동국은 ‘보조금 반환수입’을 추계함에 있어 현재와 같이 수년간의 징수실적을 평균치로 적용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소관부서가 추진하는 보조·위탁·대행사업의 내용과 특성,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적 변화, 추계시점에서의 사업 추진정도 등 제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액과 실제수납액(결산액) 간의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023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3년간 ‘보조금 반환수입’이 예산액 대비 지속적으로 초과 수납되어 왔음에도, 민생노동국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당 세입과목을 증액 조정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³⁶⁾ 이는 실제 수납실적의 변화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던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점에서 향후 민생노동국은 세입예산 편성 이후에도 추계 내용과 실제 수납실적 간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액과 실제수납액(결산액) 간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예산과 결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초과 수납된 세입을 서울시의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외수입’은 민생노동국 소속 전 부서(6개 부서)가 전년도 결산 전망액 또는 최근 3년간 결산액의 평균치를 반영하여 다른 세출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총 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이자수입 및 할인보전금 환급금이 당초 추계보다 증가하고, ▶적정 과목이 따로 있음에도 착오로 인해 ‘그외수입’으로 수납하는 과목 오류 사례³⁷⁾도 받

36)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을 ‘감액’ 조정한 사례는 1건 있음.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담당관(現.소상공인정책관) 소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을 기정예산(125억 1천만원)보다 111억 8백만원 감액 조정함.

37) 2025회계연도 중 노동정책과는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금 일부를 ‘기타이자수입’으로 수납하여야 함에도 ‘그외수입’으로 잘못 수납하였으며, 공정경제과는 ‘기타사용료’로 예산편성한 서울소셜허브 입주

생하는 등으로 예산액 대비 14억 7천 6백만원(150.5%)이 초과 수납된 것임.

사. 세입과목 오류 현황

- 민생노동국은 2025회계연도 중 세입예산에 편성된 6개 내역에 대해 예산 편성 시 설정한 세입과목과는 상이한 과목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를 하였음.

< 세입과목 오류 발생 내역 >

(단위 : 천원)

회계명 (부서명)	세입내역	예산편성		실제수납		세입과목 불일치 사유
		세입과목	예산액	세입과목	실제수납액	
일반회계 (소상공인 정책과)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대행사업비 사용잔액	위탁비 반환수입	76,334	시비보조금등 반환수입	52,156	◦ 착오로 인한 부과 오류
일반회계 (노동 정책과)	2024년 노사민정협의회 보조금 정산 반환(2건)	기타이자 수입 ^{주1)}	22,993	그외수입	39	◦ ‘기타이자수입’으로 예산편 성 하였으나, ‘그외수입’ 으로 잘못 수납
	2024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공모) 사업 보조금 정산 반환(2건)				166	
	2024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 반환				256	
	2024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비공모) 사업 보조금 정산 반환				5,148	
일반회계 (공정 경제과)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관리비	기타 사용료	66,504	그외수입	46,937	◦ ‘기타사용료’로 편성하였으 나, ‘그외수입’으로 착오 수납

※ 주1)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내역 각각에 대한 예산을 추계하여 합산한 것이 아니라, 해당 과목(기타이자수입)의 세입예산을 최근 3년간 평균 이자징수율을 적용하여 일괄 추계한 것임.

-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세입의 내용에 따라 적정 과목으로 설정하였으
나, 징수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과목 오류가 발생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에도 서울풍물시장 점포 임대료

기업 관리비를 ‘그외수입’으로 잘못 수납하였음.

를 적정 과목인 ‘공유재산임대료’로 예산편성하고도 ‘기타사용료’로 수납한 사례, 함께누리물 판매수수료를 ‘기타사업수입’으로 편성하고도 ‘그외수입’으로 수납한 사례 등이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음.³⁸⁾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회계연도에도 예산 편성된 내용과는 달리 부적정한 과목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생노동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³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⁴⁰⁾에 따라 적정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공정경제과 소관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관리비’는 2024회계연도에 ‘기타사용료’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후 1월부터 4월까지의 징수액(64,508천원)을 ‘그외수입’으로 오수납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2025회계연도에도 ‘기타사용료’로 편성한 후 ‘그외수입’으로 오수납하는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어, 소관부서(공정경제과)의 주의가 필요함.

38) 기획경제위원회, 「2024회계연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2025. 6), p.141~142

39)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③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0)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제5조 및 별표 8을 통해 세입과목의 구분과 설정내용을, 제6조 및 별표 10을 통해 세출과목의 구분과 설정내용을 정하고 있음.

2. 세출결산

가. 총괄

-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민생노동국은 예산현액 2,621억 5백만원 중 2,529억 5천 2백만원(96.5%)을 지출하고, 10억 8천 3백만원(0.4%)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7천 2백만원(0.03%)과 집행잔액 79억 9천 8백만원(3.1%)이 발생됨.

<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가)	예산성립후 증감액 (나)	예산현액 (다=가+나)	지출액 [=세출결산액] (집행률) (라 (라/다)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반납금 비율) (바 (바/다)	집행 잔액 (불용률) (사 (사/다)
					계 (마=1+2+3 (마/다)	명시 이월 (1 (1/다)	사고 이월 (2 (2/다)	계속비 이월 (3 (3/다)		
민생노동국 총계	257,691	4,414 주1)	262,105	252,952 (96.5)	1,083 (0.4)	- (0.0)	1,083 (0.4)	- (0.0)	72 (0.0)	7,998 (3.1)
일 반 회 계	240,880	1,066	241,946	238,820 (98.7)	1,083 (0.5)	- (0.0)	1,083 (0.5)	- (0.0)	65 (0.0)	1,979 (0.8)
특 별 회 계	16,811	3,348	20,159	14,133 (70.1)	- (0.0)	- (0.0)	- (0.0)	- (0.0)	7 (0.0)	6,019 (29.9)
도시개발 특별회계	12,302	3,348	15,650	9,637 (61.6)	- (0.0)	- (0.0)	- (0.0)	- (0.0)	- (0.0)	6,013 (38.4)
균형발전 특별회계	4,509	-	4,509	4,496 (99.7)	- (0.0)	- (0.0)	- (0.0)	- (0.0)	7 (0.2)	6 (0.1)

※ 주1) 전년도 명시이월액 5억 3천 4백만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38억 8천만원을 포함한 것임(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명시이월액 5억 3천 4백만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5억 3천 2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사고이월액 33억 4천 8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세출 예산현액 2,419억 4천 6백만원 중 2,388억 2천만원(98.7%)을 지출하고, 10억 8천 3백만원(0.5%)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6천 5백만원(0.03%)과 집행잔액 19억 7천 9백만원(0.8%)이 발생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출 예산현액 156억 5천만원 중 96억 3천 7백만원(61.6%)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0억 1천 3백만원(38.4%)이 발생되었으며, 다

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은 없음.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출 예산현액 45억 9백만원 중 44억 9천 6백만원 (99.7%)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7백만원(0.2%)과 집행잔액 6백만원(0.1%)이 발생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음.
- 최근 5년간 민생노동국의 세출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집행률’이 2021회계연도 97.3%, 2022회계연도 97.0%, 2023회계연도 96.5%, 2024회계연도 96.4%, 2025회계연도 96.5%로, 최근 3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민생노동국과 서울시 전체 세출결산 추이 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가)	예산성립 후 증감액 (나)	예산현액 (다=가+나)	지출액 [=세출결산액] (집행률) (라 라/다)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보조금 반납금 (반납금 비율) (바 바/다)	집행 잔액 (불용률) (사 사/다)
						계 (마=①+②+③ 마/다)	명시 이월 ① (①/다)	사고 이월 ② (②/다)	계속비 이월 ③ (③/다)		
2021 회계연도	민 생 노동국	467,512	8,347	475,859	462,823 (97.3)	6,023 (1.3)	580 (0.1)	5,443 (1.2)	- (0.0)	1,057 (0.2)	5,955 (1.2)
	서울시 전 체	46,697,522	1,061,606	47,759,128	45,333,691 (94.9)	1,161,603 (2.4)	471,130 (1.0)	690,474 (1.4)	- (0.0)	83,152 (0.2)	1,180,682 (2.5)
2022 회계연도	민 생 노동국	525,305	15,554	540,859	524,400 (97.0)	3,821 (0.7)	1,298 (0.2)	2,523 (0.5)	- (0.0)	1,847 (0.3)	10,791 (2.0)
	서울시 전 체	52,307,196	1,161,603	53,468,799	50,276,587 (94.0)	1,114,066 (2.1)	348,007 (0.7)	766,059 (1.4)	- (0.0)	83,040 (0.2)	1,995,106 (3.7)
2023 회계연도	민 생 노동국	338,626	5,832	344,459	332,301 (96.5)	4,176 (1.2)	- (0.0)	4,176 (1.2)	- (0.0)	600 (0.2)	7,378 (2.1)
	서울시 전 체	50,375,982	1,114,066	51,490,048	47,460,456 (92.2)	1,690,557 (3.3)	829,956 (1.6)	860,581 (1.7)	- (0.0)	100,185 (0.2)	2,238,850 (4.3)
2024 회계연도	민 생 노동국	267,185	4,176	271,361	261,602 (96.4)	4,414 (1.6)	534 (0.2)	3,880 (1.4)	- (0.0)	672 (0.3)	4,674 (1.7)
	서울시 전 체	47,414,393	1,690,557	49,104,950	46,781,477 (95.3)	920,290 (1.9)	345,777 (0.7)	574,513 (1.2)	- (0.0)	77,903 (0.1)	1,325,280 (2.7)
2025 회계연도	민 생 노동국	257,691	4,414	262,105	252,952 (96.5)	1,083 (0.4)	- (0.0)	1,083 (0.4)	- (0.0)	72 (0.0)	7,998 (3.1)
	서울시 전 체	52,142,651	920,290	53,062,941	51,207,414 (96.5)	940,358 (1.8)	243,862 (0.5)	696,496 (1.3)	- (0.0)	59,926 (0.1)	855,243 (1.6)

※ 2021회계연도~2023회계연도 결산 당시에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024회계연도~2025회계연도 결산 당시에는 민생노동국임.

- 다만 민생노동국의 ‘불용률’은 2021회계연도 1.2%, 2022회계연도 2.0%,

2023회계연도 2.1%, 2024회계연도 1.7%, 2025회계연도 3.1%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5회계연도에는 서울시 전체 불용률(1.6%)을 상회하는 수준(3.1%)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민생노동국의 집행잔액 발생규모(79억 9천 8백만원)가 확대된 주요 원인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조정 등으로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회계연도 중 사업 재개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추경을 추진하지 않았으나,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사업이 재개되지 못해 예산현액(60억원)⁴¹⁾ 전액이 불용되었기 때문임.⁴²⁾

나.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1)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민생노동국 소관 세출사업에서 예산을 이용한 내역은 없음.⁴³⁾

41) 2025년도 본예산을 통해 6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국비(기금) 18억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정부자금채) 24억원, ▶시비 18억원이 포함됨.

4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제외할 경우, 민생노동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2,561억 5백만원, 집행잔액은 19억 9천 8백만원, 불용률은 0.8%임.

43)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는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매년 「예산총칙」에 일정한 경비(인건비, 지방채상환,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으나, 2013회계연도에 2건의 이용이 발생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4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12년간 서울시의 예산 이용 내역은 없음.

※ 2013회계연도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81억원 이용)와 구(舊) 하수도사업특별회계(現.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1천 9백만원 이용)에서 각 1건씩 총 2건의 이용이 발생하였음.

2) 전용 및 변경사용

- 예산의 ▶전용이란 ①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②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⁴⁴⁾이 상이한 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변경사용이란 ‘목그룹이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②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민생노동국 소관 세출사업에서 전용은 총 5건·5억 7천 8백만원, 변경사용은 5건·6억 6천 8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2025회계연도 전용 및 변경사용 발생 현황 총괄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5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결산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증감건수 (건수 증감률)	증감액 (금액 증감률)
	가	나	다	라	마=가-다 (마/다)	바=나-라 (바/라)
전 용	5	578	3	136	2 (66.7)	442 (325.0)
변경사용	5	668	9	487	△4 (△44.4)	181 (37.2)

- 이 중 전용 발생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은 서울배달 플러스 땡겨요에 대한 홍보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에 따른 홍보매체를 통해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중 2억 2천 7백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정부광고법”(제5조~제8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6조제1

44) 유사한 성질을 가진 편성목을 묶어 명칭을 부여한 것을 목그룹이라고 함[목그룹 예시: 인건비(100), 물건비(200), 경상이전(300), 자본지출(400), 융자 및 출자(500), 보전재원(600), 내부거래(700), 예비비및기타(800)].

향)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등⁴⁵⁾이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⁴⁶⁾에 정부광고를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⁴⁷⁾은 ▶ 홍보물 제작비 및 용역비는 세출과목 중 사무관리비 또는 행사운영비로 설정하되 ▶ “정부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홍보매체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광고료 및 소요경비를 별도의 세출과목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서울시의 「예산편성 잠정기준」⁴⁸⁾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홍보를 위한 경비는 구체적인 용도를 확정된 후 그에 따라 적정 세출과목으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동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 10억원을 사무관리비로 일괄 반영한 후 2025년 4월말에 이르러서야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비용을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전용을 통해 과목 설정 오류를 정정⁴⁹⁾한 사안에 해당하느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은 이전 예정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민간위탁금 중 4천 5백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임.

45) ‘정부기관등’은 정부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교육감,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공공법인(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 것이며, ‘정부광고’는 정부기관등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의미함(「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3호).

46) ‘홍보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방송통신,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로서 이와 유사한 국내외의 매체를 포함함(「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47)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4. 7.), p.95~96, p.99, p.101, p.116

48)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2024. 7.), p.213~214, p.217, p.219, p.234~235

49) 과목 설정 오류 정정: 사무관리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동 사업은 소셜벤처허브를 기존의 기획재정부 소유 건물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옥으로 이전하기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7억원⁵⁰⁾을 포함한 20억 8천 4백만원이 편성된 것이나, 이전 예정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⁵¹⁾ 2024년 12월 소관부서(공정경제과)가 시설비 3억 3천 6백만원의 사고이월을 요구하였으며, 2025년 1월 서울시 예산부서(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가 요구된 대로 사고이월액을 확정된 사안임.⁵²⁾
- 그러나 2024회계연도 결산 당시 사고이월된 시설비(3억 3천 6백만원)에는 착오로 인해 냉난방공사를 위한 경비가 누락되어 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하였는바, 소관부서는 2025년도 제1회⁵³⁾·제2회⁵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결 당시에도 냉난방공사비 누락을 인지하지 못하고 2025년 10월에서야 전용을 통해 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됨.⁵⁵⁾

<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 관련 추경이 아닌 전용을 추진한 사유 >

- 2024회계연도 이월액 확정(2025. 1.) 시 누락된 냉난방 공사비용을 2025년도 제1회·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지 않고, 2025년 10월에서야 전용을 통해 확보한 사유
 - <전용사유> 사고이월 시, 냉난방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매 비용이 건축 공사비용(도급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착오하여 추경 미편성

※ 출처: 민생노동국 제출자료

- 이는 이월예산을 활용하여 추진될 공사내역과 재원의 추가확보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월예산이 과소확정(2025. 1.)된 후 반년 이상 경과한 시점(2025. 10.)에서야 예산 전용을 통해 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한 사안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임.

50) 공간이전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1억원, 이전공간 조성 비용 6억원 포함.

51) 한국자산관리공사 측 건물 공사가 지연되어 서울시의 리모델링 공사도 순연된 것임.

5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408(2025. 1. 10.) “2024 회계연도 이월예산 확정 알림”

53) 의안번호: 11-02697, 제출일자: 2025. 5. 26., 본회의 의결일자: 2025. 6. 27.

54) 의안번호: 11-03125, 제출일자: 2025. 8. 29., 본회의 의결일자: 2025. 9. 12.

55) 이후 2026년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옥으로 이전이 완료되었음(1월 26일부터 이전한 공간에서 운영 개시).

-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은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무관리비(4억 6천 1백만원) 중 3천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한 것임.
- 동 전용 사례는 당초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상생환경 조성’을 추진하도록 증액 조정된 사무관리비(1억 5천만원)의 집행잔액 중 3천만원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콘텐츠 제작 및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전용한 것으로,⁵⁶⁾ 소관부서(공정경제과)로서는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재원을 전용하여 새로운 사업내역에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수도 있음.

<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관련 2025년도 본예산 심사결과 >

과 목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정내역
(공정경제과) 공정한 거래질서 환경조성으로 소비자권익 보호			(×537,285) 4,002,656	(×537,285) 4,347,656	(×-) 345,000	
	(일반회계)	불공정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237,290	582,290	345,000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237,290	582,290	345,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공정거래 문화 확산 홍보 등 · 가맹사업 공정거래 홍보 및 교육 45,000 → 240,000 (195,000) · <u>온라인 플랫폼 상생환경 조성</u> <u>0 → 150,000 (150,000)</u>

※ 출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수정안」 (2024. 12), p.96

-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⁵⁷⁾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56)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20938 (2025. 10. 22)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프로그램-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콘텐츠 제작·홍보 계획”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의회가 ‘온라인 플랫폼 상생환경 조성’을 추진하도록 증액 조정한 재원을 내용이 다른 새로운 사업내역에 사용하도록 전용한 것은 당초 시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재정법」상 전용 제한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됨.

< 2025회계연도 예산 전용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번	회계명	부서명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목그룹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감액	증액	
합 계 (총 5건)								11,286	△578	578	
1	일반회계	소상공인 정책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물건비 (200)	사무관리비 (201-01)	2,274	△227	227	2025. 4. 30.
						경상이전 (300)	공판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3)				
◦ 전용 사유 : 서울배달+ 땡겨요에 대한 홍보 매체비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하기 위해 적정 세출과목으로 정정(사무관리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일반회계	상권 활성화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상권 활성화 지원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경상이전 (300)	공판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3)	1,867	△216	216	2025. 5. 21.
						물건비 (200)	사무관리비 (201-01)	201			
◦ 전용 사유 : 지역가치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은 당초 서울신용보증재단이 1년차 기본과정 운영을 대행하고 서울시가 2년차 심화과정 운영과 사업화자금 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서울시가 전 과정을 수행하도록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자 세 출과목을 변경(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사무관리비).											
3	일반회계	상권 활성화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상권 활성화 지원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경상이전 (3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4,980	△60	60	2025. 10. 13.
						자본지출 (400)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460			
◦ 전용 사유 : ① 육성 2기 상권(2개소: 노원구 경춘선공릉숲길, 용산구 용마루길) 관련 노원구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자치구로 교부될 보조금 중 1천만원을 경상보조금에서 자본보조로 변경 요청함에 따라 세출과목 변경. ② 2024년도 성과평가 결과(1위 노원구, 2위 용산구)를 반영하여 육성 2기 상권 간 사업비 규모를 조정하되, 사업비 증액분은 노원구의 요청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교부하기 위해 세출과목을 변경(용산구에 대 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천만원 감액, 노원구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 5천만원 증액).											

57)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위 : 백만원)

연번	회계명	부서명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목그룹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감액	증액	
4	일반회계	공정 경제과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서울소셜벤처 허브 운영	경상이전 (300)	민간위탁금 (307-05)	1,004	△45		2025. 10. 2.
						자본지출 (400)	시설비 (401-01)	-		45	
◦ 전용 사유 : 2024회계연도 결산 당시 이전 예정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시설비 3억 3천 6백만원)를 사고이월 하면서 착오로 냉난방 공사를 위한 경비를 사고이월액에 포함시키지 못해 공사비가 부족해진바, 이를 충당하기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전용.											
5	일반회계	공정 경제과	공정한 거래질서 환경조성으로 소비자권익 보호	불공정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물건비 (200)	사무관리비 (201-01)	461	△30		2025. 11. 6.
						경상이전 (300)	공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3)	40		30	
◦ 전용 사유 :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프로그램」 운영 계획(공정경제과-20886, 2025. 10. 22.)에 따라 피해 예방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전용.											

- 다음으로 변경사용 발생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산재보
 험료 지원’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5천 4백만원을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의 같은
 통계목(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으로 변경사용하였음.

- 이는 2024년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의 지원대상이 확
 대(1인 소상공인→모든 소상공인)되어 2025년 11월 고용보험료 환급 시까지
 전년 동기 대비 지원규모가 11.2% 증가함에 따라 12월 고용보험료 환
 급 시에는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해 변경
 사용한 것임.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사무관리비 중 1천 4백만원을 동일 사업
 내 목그룹이 동일한 통계목인 공공운영비로 변경사용한 것으로, 입원자·
 검진자 대상 맞춤형 홍보 우편물 발송비가 부족하여 이를 충당한 것임.

- 동 사업은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대상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입원자·검진자에게 ‘맞춤형 홍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관부서(노동정책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자 및 검진자의 명단을 확보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명단의 인원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 동 변경사용(2025.10.) 사례도 해당 세부사업 내에서 공공운영비로 융통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2025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원(총 7만 610명) 중 38.7%(2만 7,300명)에 대해서만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됨.⁵⁸⁾
- 그러나 2024년도 본예산에는 3만건의 홍보물을 발송하기 위한 공공운영비(2천 3백만원)가 편성되었으나, 맞춤형 홍보를 통한 신청자 증가 효과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 본예산에는 4만건 발송비(3천 1백만원), 2026년도 본예산에는 7만건 발송비(5천 4백만원)가 편성되는 등 맞춤형 홍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아울러 시의회에서도 불특정 다수보다는 입원자 등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⁵⁹⁾된 바 있으며, 동일한 특성⁶⁰⁾을 가진 대상자임에도 예산사정으로 인해 일부에게만 맞춤형 홍보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향후 서울시는 맞춤형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의 사무관리비 중 8백만원을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인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의 같은 통계목

58)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10982 (2025. 10. 2.)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예산 변경 계획”

59) 서울특별시의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2026. 3. 6.), p.7

6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입원자 또는 검진자인 사람.

(사무관리비)으로 변경사용하였는바, 이는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미스터리쇼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 재원을 확보한 것임.

- 2025년 11월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서울시 관내의 전통시장의 바가지요금·불친절 등 부정적인 내용이 보도되었으며,⁶¹⁾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미스터리쇼퍼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어⁶²⁾ 동 변경사용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민생노동국의 결산서⁶³⁾에는 변경사용 사유가 “부서현안에 대응 위한 사업 추진”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향후에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서에 추상적·포괄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함으로써 결산심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양곡도매시장 이전’은 2025년 12월 당초 2025년도 본예산에 감리비로 편성된 5억 5천 2백만원 전액을 세부사업 내 다른 통계목인 시설비로 변경사용한 것임.

- 이는 2025년도 본예산을 통해 감리비(5억 5천 2백만원)와 시설부대비(2백만원) 등 5억 5천 4백만원이 편성·의결(2024. 12.)되었고, 2024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시설비(26억 5백만원)와 감리비(7억 4천 3백만원) 등 33억 4천 8백만원으로 확정(2025. 1.)되었으나, 2025년 12월까지 본예산에 편성된 감리비는 집행되지 않고 있던 반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설비(공사비)⁶⁴⁾는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을 변경사용한 것임.

61)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13944 (2025. 11. 13.) “25년 전통시장 미스터리 쇼퍼 추진계획”

62) 서울특별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2025. 11. 7.), p.52

63) 민생노동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p.86

64)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2024회계연도 시설비가 공정 지연으로 인해 이월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것임. : 민생노동국, 「2025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392

- 이와 관련 소관부서(농수산유통과)가 2025년 12월 수립한 예산변경 계획⁶⁵⁾에는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간접비·토목공사비 등이 증가되어 시설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감리비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 이월된 예산을 우선 활용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음.

< 양곡도매시장 건립 총 공사기간 연장 현황 >

구분 (연장 방침 수립일자) ^{주1)}	총 공사기간	연장사유
당 초	2023. 12. 29. ~ 2025. 12. 28.	
1 차 변 경 (2024. 7. 30.)	2023. 12. 29. ~ 2026. 2. 15. (49일 증가)	◦ 오염토 정밀조사 명령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 반영.
2 차 변 경 (2025. 1. 17.)	2023. 12. 29. ~ 2026. 7. 6. (141일 증가)	◦ 지하구조물 및 오염토 발생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공사 중지 및 지연이 발생되어 공사기간 연장
3 차 변 경 (2025. 8. 8.)	2023. 12. 29. ~ 2027. 1. 13. (191일 증가)	◦ 오염토 발생 관련 공사중지 기간 반영.

※ 주1) 소관부서(농수산유통과)로부터 예산을 재배정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공사기간 연장 방침을 수립한 날짜임.

- 그러나 공사 수행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025년 8월 8일 공사기간 연장 방침⁶⁶⁾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관부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감요인을 조속히 검토하여 추경 편성을 요청함으로써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임.

< 2025회계연도 예산 변경사용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번	회계명	부서명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목그룹	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 금액		변경사용 승인일자
									감액	증액	
합 계 (총 5건)								9,281	△668	668	

65)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18802 (2025. 12. 3.) “양곡도매시장 이전·조성사업 예산변경 계획”

6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10862 (2025. 8. 8.) “양곡도매시장 건립공사 변경계약 검토 보고”

(단위 : 백만원)

연번	회계명	부서명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목그룹	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 금액		변경사용 승인일자
									감액	증액	
1	일반회계	소상공인 정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신채보험료 지원	경상이전 (300)	공판 등에 대한 경장적 위탁사업비 (308-13)	292	△54	2025. 12. 2.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경상이전 (300)	공판 등에 대한 경장적 위탁사업비 (308-13)	668	54		
◦ 변경사용 사유 : 2024년도부터 지원대상이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5년도에는 지원인원 및 보험료 환급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여 사업비 부족분(12월 환급분) 총당											
2	일반회계	노동 정책과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서울형 임원 생활비 지원	물건비 (200)	사무관리비 (201-01)	44	△14	2025. 10. 14.	
					물건비 (200)	공공운영비 (201-02)	170	14			
◦ 변경사용 사유 : 2025년도 10월 입원·검진자 대상 맞춤형 홍보우편 발송비가 부족하여 공공운영비 추가 확보											
3	일반회계	상권 활성화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상권 활성화 지원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경상이전 (3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5,020	△40	2025. 8. 4.	
					경상이전 (300)	공판 등에 대한 경장적 위탁사업비 (308-13)	1,651	40			
◦ 변경사용 사유 : 자치구에서 로컬 브랜드 상권 방문 유도 및 상권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 행하는 공동협력사업의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장적 위탁사업비 추가 확보											
4	일반회계	상권 활성화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물건비 (200)	사무관리비 (201-01)	817	△8	2025. 11. 14.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물건비 (200)	사무관리비 (201-01)	68	8		
◦ 변경사용 사유 : 11월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전통시장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 부정적인 보도가 발생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무관리비 추가 확보											
5	도시개발 특별회계	농수산 유통과	도시생활속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유통거래질서 확립	양곡도매시장 이전	자본지출 (400)	감리비 (401-02)	552	△552	2025. 12. 4.	
					자본지출 (400)	시설비 (401-01)	-	552			
◦ 변경사용 사유 : 추가 공사비 확보 필요에 따라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											

-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은 2025회계연도 중 전용(2건)과 변경사용(1건)이 모두 발생한 세부사업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5월 21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장적 위탁사업비 중 2억 1천 6백만원을 목그룹이 다른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는바, 이는 지역가치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서울시가 모두 운영하도록 사업 추진체계를 변

경합⁶⁷⁾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대행사업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서울시가 직접 집행하는 경비(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임.⁶⁸⁾

- 참고로 동 전용(5. 21.)을 통해 확보한 사무관리비(2억 1천 6백만원)는 지출 원인행위(용역계약 체결)가 8월 13일에서야 이루어졌으며, 실제 지출은 12월 30일 발생하였음.
- 다음으로 8월 4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4천만원을 동일한 목그룹(경상이전)에 속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사용하였는 바, 이는 상권 방문 유도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행하는 공동협력사업⁶⁹⁾을 확대해 달라는 자치구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대행사업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것임.
- 마지막으로 10월 13일 육성 2기 상권에 대한 2024년도 성과평가(2024. 12. 18.) 결과 및 자치구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천만원을 목그룹이 다른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하였음.
-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사용은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재정 운영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요예산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전

67) 지역가치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당초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1년차 기본과정 운영을 대행하고 서울시가 2년차 심화과정 운영과 사업화자금 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가 1·2년차 전 과정을 수행하도록 추진체계를 일원화한 것임.

68) 이와 관련하여 민생노동국이 제출한 결산서에는 전용 사유가 “지역가치창업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목적 외 집행 금지·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예산 원칙에 대한 예외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외적인 집행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기재하는 것은 결산심사가 가지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 민생노동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p.161~162

69) 참고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행하는 공동협력사업의 내용에는 브랜딩 컨설팅, 카드사 연계 할인 프로모션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2025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실행계획」 (2025. 4), p.2

용 및 변경사용보다는 원칙대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경정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5월 21일 전용을 통해 추가 확보하여 8월 13일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무관리비와 ▶8월 4일 변경사용을 통해 추가 확보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5월 26일과 8월 29일 시의회에 제출된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정될 수 있었음에도, 소관 부서(상권활성화과)는 추경 편성을 일체 요청하지 않고 집행기관 내부절차(전용·변경사용)를 통해서만 소요예산을 경정한 것으로, 시의회의 예산 심사 권한보다는 행정편의가 우선시된 사례로 판단됨.

< 2025회계연도 중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예산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예산액 (2025년도 본예산)	전용 (2025. 5. 21. 승인)	제1회 추경을 통한 조정 (2025. 5. 26. 제출 2025. 6. 27. 의결)	변경사용 (2025. 8. 4. 승인)	제2회 추경을 통한 조정 (2025. 8. 29. 제출 2025. 9. 12. 의결)	전용 (2025. 10. 13. 승인)
계	7,728	-	-	-	-	-
사 무 관 리 비	201	216	추경 미편성	-	추경 미편성	-
기 타 보 상 금	180	-		-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20	-		△40		△6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867	△216		40		-
자치단체자본보조	460	-		-		60

- 아울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경우 5월 21일 전용을 통해서만 감액하고 8월 4일 변경사용을 통해서만 다시 증액한 것으로, 비록 사업내역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통계목에 대해 감액과 증액이 번갈아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 운영에 있어 계획성이 부족한 결과로 비춰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3)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 예산을 옮겨 사용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민생노동국에서 이체가 발생한 내역은 없음.

다. 미집행된 자원

1) 다음연도 이월액

-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민생노동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0억 8천 3백만원(예산현액 대비 0.4%)으로, ‘골목형 전통시장 건축혁신’과 ‘불공정 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포함한 2개 세부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⁷⁰⁾

< 다음연도 이월(사고이월)^{주1)} 발생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이월액) ^{주2)}	다음연도 이월액 중 재이월액 ^{주3)}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일반회계 (상권 활성화과)	골목형 전통시장 건축혁신	계	1,317	1,316	311	1,005	322 ^{주4)}	-	1
		사무관리비	8	8	8	-	-	-	- ^{주5)}
		시설비	1,309	1,308	303	1,005	322	-	1
		이월내역 및 이월사유	• 신중양시장 관련 총 606백만원 사고이월 ▶ 설계용역비 589백만원 사고이월(322백만원 재이월 포함): 설계공모 이후 2025년 7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 협의·사전절차(계약심사, 계약심의위원회, 공기적정성심사 등) 이행에 시일이 소요 되어 11월 20일 변경방침을 수립하여 용역 준공기한을 4개월 연장(2025. 11. → 2026. 3.)함에 따라 사고이월.						

70)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이 발생한 사업은 없음.

(단위 : 백만원)

회계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이월액) ^{주2)}	다음연도 이월액 중 재이월액 ^{주3)}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설계품질관리용역비 17백만원 사고이월: 설계품질관리용역 계약을 2025년 12월 체결하고 착수하였으며, 용역 준공기한(2026. 3.)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 • 통인시장 관련 총 399백만원 사고이월 ▶설계용역비 378백만원 사고이월: 당초 설계공모 결과 당선작이 없어 재공모를 추진함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어 설계용역을 2025년 12월 착수하였으며, 용역의 준공 기한(2026. 6.)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 ▶설계품질관리용역 21백만원 사고이월: 설계품질관리용역 계약을 2025년 12월 체결하고 착수하였으며, 용역 준공기한(2026. 6.) 미도래하여 사고이월.						
일반회계 (공정 경제과)	불공정파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계	604	530	512	78	-	-	1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1	74	74	-	-	-	7
		사무관리비	453	446	368	78	-	-	7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0	70	70	-	-	-	주6)
		이월내역 및 이월사유	•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운영 용역비 78백만원 사고이월 - 선행절차인 평가지표 개발 완료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2025. 5.→2025. 7.)되어, 상생 프랜차이즈가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된 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용역'의 착수도 순연(2025. 9.→2025. 11.). - 가맹점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12월 5일 변경방침을 수립하여 용역 준공기한을 3개월 연장함(2025. 12.→2026. 3.)에 따라 사고이월.						

※ 주1)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민생노동국 소관 세부사업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이 발생한 사업은 없음.

주2)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발생 내역이 없으므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과 일치함.

주3) '재이월액'은 2024회계연도 결산 당시 명시이월된 재원이 2025회계연도 중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다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재이월)된 것임.

주4) 2024회계연도 결산 당시 명시이월된 시설비(5억 3천 4백만원) 중 60.3%(3억 2천 2백만원)가 다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재이월)된 것임.

주5) 집행잔액 11만 5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백만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한 것임.

주6) 집행잔액 7만 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백만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한 것임.

- ‘골목형 전통시장 건축혁신’은 예산현액(13억 1천 7백만원) 중 10억 5백만원(76.3%)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신중양시장 설계용역이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절차 이행 등을 위해 지연되어 설계용역비와 설계품질관리용역비를 포함한 6억 6백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통인시장 설계용역이 당초 설계공모 시 당선작이 없어 재공모를 추진함에 따라 설계용역비와 설계품질관리용역비를 포함한 3억 9천 9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동 사업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시 ▶1기 시장(신중양시장 및 통인시장)의 설계공모 용역 준공기한(2025. 6.) 도래시 용역비⁷¹⁾와 공모보상금⁷²⁾을 지급하고, ▶2기 시장(청량리종합시장)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기한(2025. 3.) 도래 시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 시설비 5억 3천 4백만원이 명시이월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1기 시장의 설계용역 및 설계 품질관리용역의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였음을 사유로 동일한 통계목(시설비)에서 10억 5백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이 중 3억 2천 2백만원은 직전 회계연도에 명시이월되었던 신중양시장 설계용역비가 2025회계연도에도 집행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다시 사고이월(재이월)된 것임.
-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은 예산현액(6억 4백만원) 중 7천 8백만원(12.8%)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선행절차(지표개발, 상생프랜차이즈 선정)가 계획⁷³⁾보다 지연되어 기 선정된 상생프랜차이즈에 대해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운영’ 용역의 착수 역시 지연되었으며,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용역 준공기한이 당초 2025년 12월에서 2026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 동 사업은 2024회계연도 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실태조사 용역 추진 시 가맹점의 조사참여가 저조하여 용역 준공기한을 당초 2024년 10월에서 2025년 4월로 연장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천 1백만원이 사고이월

71) 설계공모 용역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계공모 결과 당선작(1등)으로 선정될 경우 지급하는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음.

72) 설계공모 결과 입상작(2등~5등)으로 선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임.

73)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3431 (2025. 2. 20.)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계획”

※ 당초에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지표를 개발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상생 프랜차이즈를 평가·선정하며, 9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지표를 개발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상생 프랜차이즈를 평가·선정하였으며,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음.

된 바 있음.

-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의 경우에는 내역과 사유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2024회계연도 결산 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던 통계목(사무관리비)에서 다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향후 민생노동국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밀하게 산정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확실시되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이월 규모를 축소하고 동일 세부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사례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보조금반납금

- 보조금반납금은 회계연도 중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 후 집행되지 않아 국가에 반환할 예정인 국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민생노동국은 총 9개 세부사업에서 보조금반납금 7천 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0.03%)이 발생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반납금 발생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회계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재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발생 사유
합 계 (총 9개 세부사업)			9,395,224	9,288,501	-	72,054	34,671	
일반회계 (소상공인 정책과)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계	160,000	155,722	-	2,370	1,909	◦ 계약 낙찰차액 및 사업 집행잔액.
		국비	80,000	77,630	-	2,370	-	
		시비	80,000	78,092	-		1,909	
일반회계 (소상공인 정책과)	서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계	6,919,000	6,918,988	-	12	-	◦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2025. 10.) 페이백 이벤트 예산 지급 잔액.
		국비	6,919,000	6,918,988	-	12	-	
		시비	-	-	-		-	

(단위 : 천원)

회계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재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발생 사유
일반회계 (공정 경제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계	1,950,950	1,938,884	-	560	11,506	◦ 착한가격업소 중도 폐업 등에 따른 인센티브 집행잔액.
		국비	537,285	536,725	-	560	-	
		시비	1,413,665	1,402,159	-		11,506	
일반회계 (농수산 유통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계	254,600	203,890	-	50,710	-	◦ 1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통보한 국비 교부결정을 반영하여 11월 27일 간주처리하였으나, 사업수요가 부족하여 집행 저조
		국비	254,600	203,890	-	50,710	-	
		시비	-	-	-		-	
일반회계 (농수산 유통과)	비료 가격 안정 지원	계	46,374	14,790	-	10,866	20,718	◦ 보조금반납금(10,866천원) - 사업수요가 부족하여 서울시로 교부된 국비(19,740천원) 중 8,874천원만 집행되고, 10,866천원은 미집행됨.
		국비	27,823	8,874	-	10,866	8,083 ^{주1)}	
		시비	18,551	5,916	-		12,635 ^{주2)}	
일반회계 (농수산 유통과)	양곡관리	계	18,000	17,834	-	166	-	◦ 국내예비 집행잔액 발생.
		국비	18,000	17,834	-	166	-	
		시비	-	-	-		-	
일반회계 (농업기술 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계	15,200	15,177	-	11.5	11.5	◦ 사업비 집행잔액.
		국비	7,600	7,588.5	-	11.5	-	
		시비	7,600	7,588.5	-		11.5	
일반회계 (농업기술 센터)	농작물 병해충 방제	계	5,400	5,374	-	13	13	◦ 사업비 집행잔액.
		국비	2,700	2,687	-	13	-	
		시비	2,700	2,687	-		13	
균형발전 특별회계 (농수산 유통과)	토양개량제 공급	계	25,700	17,842	-	7,345	513	◦ 3년 1주기 사업으로, 기 지원 농지 제외 후 사업 추진됨에 따라 집행 저조
		국비	20,000	12,655	-	7,345	-	
		시비	5,700	5,187	-		513	

※ 주1) 국비 집행잔액(8,083천원) :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비료 지원물량이 감소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24년도 최종예산 수준(27,82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5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비 교부액을 편성액보다 8,083천원 감소된 19,740천원으로 내시하고 내시액만큼 교부함에 따라 편성액 대비 부족 수납된 국비가 이른바 '재원 없는 불용'으로 처리된 것임.

주2) 시비 집행잔액(12,635천원) : 보조금반납금과 국비 집행잔액에 대응 편성된 시비(매칭시비)가 미집행된 것임.

- 보조금반납금이 2021회계연도에는 10억 5천 7백만원(예산현액 대비 0.22%), 2022회계연도에는 18억 4천 6백만원(예산현액 대비 0.34%), 2023회계연도에는 6억원(예산현액 대비 0.17%), 2024회계연도에는 6억 7천 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0.25%)이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보조금반납금(7천 2백만원, 예산현액 대비 0.03%)은 규모와 비율 모두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임.

- 다만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한 사업 중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2025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회계연도 중 국비 교부액을 2억 5천 5백만원으로 통보함에 따라⁷⁴⁾ 간주처리를 통해 예산액을 동일한 규모(2억 5천 5백만원)로 반영하였으나, 사업 수요가 부족하여 보조금반납금 5천 1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9.9%)이 발생하였음.
- 아울러 ‘비료 가격 안정 지원’은 국비와 시비 등을 매칭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⁷⁵⁾ 당초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국비와 시비를 전년도 최종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5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비 교부액을 편성액(2천 8백만원)보다 8백만원 감액된 2천만원으로 내시 후 교부하였고, 사업 수요 부족으로 인해 기 교부된 국비(2천만원) 중 9백만원만 집행됨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1천 1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그뿐 아니라 ‘비료 가격 안정 지원’은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되지 않은 국비 8백만원(편성액과 수납액 간 차액)이 집행잔액에 반영되었고,⁷⁶⁾ 보조금반납금(1천 1백만원)과 국비 집행잔액(8백만원)에 대응 편성된 시비 1천 3백만원 역시 집행잔액으로 반영되어, 동 사업의 미집행액은 총 3천 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68.1%)임.
-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농수산물통과)는 서울시의 실수요가 국비 교부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회계연도 중 국비 교부액에 변동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기에 통보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74)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3263 (2025. 11. 14.)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비 교부결정 안내”

75) 국비 30%, 시비 20%, 농협 30%, 자부담 20%.

76) 장부상으로 수취(허수)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재원이 교부되지 않아 소관부서가 집행할 가능성이 전무하였던 것으로, ‘재원 없는 불용’이라고 일컫기도 함.

3) 집행잔액

- 2025회계연도 결산결과 민생노동국의 집행잔액은 79억 9천 8백만원(예산현액 대비 3.1%)으로, 전년도(46억 7천 4백만원)보다 33억 2천 4백만원(71.1%)이 증가한 것임.

< 최근 3년간 집행잔액 발생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①	②	②/①	③	④	④/③	⑤	⑥	⑥/⑤
민생노동국 총계	344,459	7,378	2.1	271,361	4,674	1.7	262,105	7,998	3.1
일 반 회 계	254,608	7,211	2.8	230,706	4,652	2.0	241,946	1,979	0.8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89,850	167	0.2	25,142	22	0.1	9,637	6,013	38.4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	-	-	5,513	-	0.0	4,496	6	0.1

-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불용률)이 15% 이상인 세부사업은 10개 사업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불용률 15% 이상 사업^{주1)}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①	집행잔액 ②	불용률 ②/①	집행잔액 발생 사유
일반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238	48	20.1	○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이 2025년 5월 완료되어 사업기간 축소(12개월→6개월). ○ 접수된 신청자의 77%(1,204명)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지원 불가.
일반회계 (상권활성화과)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565	332	58.8	○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긴급 보수 등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서 2025년도 중 긴급보수 수요가 예산편성 규모보다 적게 발생.
일반회계 (상권활성화과)	청년물 활성화 지원	120	24	20.0	○ 2025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비와 지방비 간 매칭비율을 수정(5:5→6:4) 통보하여 시비부담분(지방비 중 60%)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단위 : 백만원)

회계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①	집행잔액 ②	불용률 ②/①	집행잔액 발생 사유
일반회계 (상권활성화과)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	1,978	337	17.1	◦ 2025회계연도 중 중소벤처기업부 공모(1차~3차) 결과에 따라 서울시로 교부된 국비가 본예산 편성액보다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
일반회계 (농수산물통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30	0.98	75.4	◦ 2025년도 본예산에 1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직불금 실제 지급 대상자 감소로 9월 22일 국비 교부액이 32만원으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일반회계 (농수산물통과)	농업 재해보험 지원 (국가직접지원)	100	47	47.1	◦ 농업재해 발생 빈도 및 피해규모가 적어 보험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감소로 당초 예상보다 가입실적 저조
일반회계 (농수산물통과)	비료 가격 안정 지원	46	21	44.7	◦ 국비 집행잔액(8,083천원) -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국비와 시비를 2024년도 최종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5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통보한 국비 교부액(19,740천원)이 편성액(27,823천원)보다 8,083천원 감액되었으며, 통보된 만큼 교부됨에 따라 편성액과 교부액 간 차액이 이른바 '재원 없는 불용'으로 처리됨. ※ 이와 별도로 서울시로 교부된 국비(19,740천원) 중 사업수요가 부족하여 미집행된 10,866천원은 보조금반납금으로 처리 ◦ 시비 집행잔액(12,635천원) - 국비 미집행액(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금 포함)과 매칭되는 시비도 미집행되어 집행잔액으로 처리.
일반회계 (농수산물통과)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479	161	33.6	◦ 설계 과정에서 현장 여건 반영하여 일부 공사내역(화재수신반 교체공사)을 삭제하고 사업물량(열연감지기 개수 단가)을 조정하여 집행잔액 발생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145	86	59.3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10월 변경내시를 통해 국비 교부액 감액(1억원~4천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농수산물통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6,000	6,000	100.0	◦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재정사업 심의(2025. 1.~10.),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협약-조정(2025. 11.~2026. 4.)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사업비 집행 불가(국미 미교부, 지방채 미발행).

※ 주1) 불용률 15% 이상 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15% 이상인 사업, 즉 예산현액 중 15% 이상 불용된 세부사업을 의미함.

- 이 중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는 예산현액(5억 6천 5백만원) 중 3억 3천 2백만원(58.8%)가 불용된 것으로, 민생노동국은 동 사업의 소요예산이 안전취약시설물의 긴급보수 및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나, 회계연도 중 사업수요가 예산편성 규모에 미치지 못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함.

- 그러나 동 사업은 2022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의 64.2%(3억 6천 6백만원), 2024회계연도에는 67.1%(3억 8천 2백만원)이 불용되는 등⁷⁷⁾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상당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지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당시에는 사업비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⁷⁸⁾
- 이에 2026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도(5억 6천 5백만원) 대비 49.5% 감액된 2억 8천 5백만원이 편성된바, 소관부서(상권활성화과)는 본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비를 보수적으로 편성하되, 회계연도 중 사업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에는 추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청년몰 활성화 지원’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국비와 지방비(시비와 구비 포함)의 매칭비율을 50:50으로 적용하여 지방비 중 60%에 해당하는 시비 부담분 1억 2천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2025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비와 지방비 간 매칭비율을 60:40으로 수정 통보함에 따라⁷⁹⁾ 시비 부담분이 9천 6백만원으로 감소하여 당초 편성액(1억 2천만원)과의 차액인 2천 4백만원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의 집행잔액(2천 4백만원)은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2025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통보에 따라 시비 부담분 감소가 확정되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회계연도 말까지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2025년 5월과 8월 시의회에 제출된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조정하는 방안

77)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중 3.1%(1천 7백만원)이 불용되었음.

78)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생노동국 소관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2025. 6), p.31

79)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899 (2025. 3. 21.) “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결과 안내”

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임.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는 2025년도 본예산에 국비(18억원)·지방채(24억원)·시비(18억원)를 재원으로 총 60억원이 편성된 것이나,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재정사업 심의(2025. 1.~10.),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협의·조정(2025. 11.~2026. 4.)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예산현액 전액(60억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집행잔액(60억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민생노동국에서 발생한 전체 집행잔액(79억 9천 8백만원)의 75.0%에 해당하는바, 소관부서(농수산유통과)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연요인이 발생할 경우 향후 일정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보다는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한 사업비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감추경을 추진함으로써 집행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임.

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 도시 안전, 정부추경 대응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중 2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생노동국의 세출예산도 506억 8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민생노동국의 최종예산은 총 142개 사업에 대해 2,621억 5백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 136개 사업, 1,99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개 사업을 증·감 조정하여 511억 9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개 사업에서 5억 5백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11차례의 간주처리를 통해 6개 사업에 71억 2백만원을 증액한 것임.

< 민생노동국의 2025년도 세출예산 증감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당초 본예산 (2024.11.1.제출, 2024.12.13.본회의 의결) ①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한 증·감조정 ^{주1)} (2025.5.26.제출, 2025.6.27.본회의 의결) ②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한 증·감조정 ^{주1)} (2025.8.29.제출, 2025.9.12.본회의 의결) ③	간주처리를 통한 증액 ^{주1)} ④	최종예산 가=①+②+③+④		
금액	199,900	51,194	△505	7,102	257,691	4,414	262,105
세부사업 수	◦ 136개 사업	◦ 20개 사업	◦ 4개 사업	◦ 6개 사업	◦ 142개 사업		◦ 142개 사업
	-	- 19개 증액조정 (신규편성 3개 포함) - 1개 감액 (전액 감추경 1개 포함)	- - 4개 감액 (전액 감추경 없음)	- 6개 증액조정 (신규 편성 4개 포함) -	-	-	-

※ 주1) 추가경정예산(=기정예산+증·감조정액)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해당 추경예산과 간주처리를 통해 증·감조정된 부분만 기재한 것임.

- 민생노동국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감 조정한 세부사업(24개)⁸⁰⁾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1,512억 3천 7백만원) 중 1,509억 3천 3백만원(99.8%)이 지출되고, 보조금반납금 56만원과 집행잔액 3억 4백만원(0.2%)이 발생된 것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음.
- 아울러 세부사업별로도 다음연도 이월액·보조금반납금·집행잔액을 포함한 미집행액이 예산현액 대비 15%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없어,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비교할 때 집행 가능한 기간이 더욱 한정적임에도 민생노동국의 추경 편성사업은 집행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80) 이 중 1개 세부사업(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감추경된 것임.

※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은 2025년도 본예산에 국비(1천 3백만원)를 포함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 중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지역노사민정 협력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전액 감추경한 것임.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주1)}의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

회계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감조정액 ^{주2)}			간주 처리	최종 예산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미집행액			
			계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계	다음 연도 이월액 (이월률)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반납금 비율)	집행 잔액 (불용률)
합 계 (총 24개 세부사업)		100,463	50,689	51,194	△505	53	151,235	151,237	150,933 (99.8)	304 (0.2)	- (0.0)	0.560 (0.0)	304 (0.2)
일반회계 (소상공인 정책과)	서울신용 보증재단 출연	14,120	28,500	28,500	-	-	42,620	42,620	42,620 (100.0)	- (0.0)	- (0.0)	- (0.0)	- (0.0)
일반회계 (소상공인 정책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25,554	7,087	7,087	-	-	32,641	32,641	32,597 (99.9)	44 (0.1)	- (0.0)	- (0.0)	44 (0.1)
일반회계 (소상공인 정책과)	소상공인의 날 행사	-	150	150	-	-	150	150	149 (99.3)	1 (0.7)	- (0.0)	- (0.0)	1 (0.7)
일반회계 (소상공인 정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	40,000	11,400	11,400	-	-	51,400	51,400	51,400 (100.0)	- (0.0)	- (0.0)	- (0.0)	- (0.0)
일반회계 (소상공인 정책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2,274	1,500	1,500	-	-	3,774	3,774	3,729 (98.8)	45 (1.2)	- (0.0)	- (0.0)	45 (1.2)
일반회계 (소상공인 정책과)	청년 골목창업 지원	2,798	△339	-	△339	-	2,459	2,459	2,459 (100.0)	0.100 (0.0)	- (0.0)	- (0.0)	0.100 (0.0)
일반회계 (노동 정책과)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854	56	56	-	-	910	910	910 (99.9)	0.429 (0.1)	- (0.0)	- (0.0)	0.429 (0.1)
일반회계 (노동 정책과)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900	212	212	-	-	1,112	1,112	1,111 (99.9)	1 (0.1)	- (0.0)	- (0.0)	1 (0.1)
일반회계 (노동 정책과)	서울시 촉탁직 노동자 후생복지 및 대체인력 지원	233	138	138	-	-	371	371	344 (92.8)	27 (7.2)	- (0.0)	- (0.0)	27 (7.2)
일반회계 (노동 정책과)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	56	56	-	53	109	109	109 (100.0)	- (0.0)	- (0.0)	- (0.0)	- (0.0)
일반회계 (노동 정책과)	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	199	199	-	-	199	199	199 (100.0)	- (0.0)	- (0.0)	- (0.0)	- (0.0)
일반회계 (노동 정책과)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1,216	195	195	-	-	1,411	1,411	1,401 (99.3)	10 (0.7)	- (0.0)	- (0.0)	10 (0.7)

(단위 : 백만원, %)

회계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감조정액 ^{주2)}			간주 처리	최종 예산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미집행액			
			계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계 (미집행률)	다음 연도 이월액 (이월률)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반납금 비율)	집행 잔액 (불용률)
일반회계 (노동 정책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30	△30	△30	-	-	-	-	-	- (0.0)	- (0.0)	- (0.0)	- (0.0)
일반회계 (노동 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2	7	7	-	-	9	9	9	- (0.0)	- (0.0)	- (0.0)	- (0.0)
일반회계 (노동 정책과)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122	△40	-	△40	-	82	92	81 (88.0)	11 (12.0)	- (0.0)	- (0.0)	11 (12.0)
일반회계 (노동 정책과)	프리랜서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1,577	△100	-	△100	-	1,477	1,477	1,333 (90.3)	144 (9.7)	- (0.0)	- (0.0)	144 (9.7)
일반회계 (상권 활성화과)	골목상권 행사 지원	800	170	170	-	-	970	970	970 (100.0)	- (0.0)	- (0.0)	- (0.0)	- (0.0)
일반회계 (상권 활성화과)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2,296	75	75	-	-	2,371	2,363	2,357 (99.7)	6 (0.3)	- (0.0)	- (0.0)	6 (0.3)
일반회계 (상권 활성화과)	특성화시장 육성	2,121	91	91	-	-	2,212	2,212	2,212 (100.0)	- (0.0)	- (0.0)	- (0.0)	- (0.0)
일반회계 (상권 활성화과)	전통시장 행사 지원	3,642	1,005	1,005	-	-	4,647	4,647	4,644 (99.9)	3 (0.1)	- (0.0)	- (0.0)	3 (0.1)
일반회계 (공정 경제과)	마을기업 육성	75	98	98	-	-	173	173	173 (100.0)	- (0.0)	- (0.0)	- (0.0)	- (0.0)
일반회계 (공정 경제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791	160	160	-	-	1,951	1,951	1,939 (99.4)	12 (0.6)	- (0.0)	0.560 (0.0)	12 (0.6)
일반회계 (농수산 유통과)	국고보조금 반환	-	125	125	-	-	125	125	125 (100.0)	- (0.0)	- (0.0)	- (0.0)	- (0.0)
일반회계 (농수산 유통과)	농지이용 관리지원	88	△26	-	△26	-	62	62	62 (100.0)	- (0.0)	- (0.0)	- (0.0)	- (0.0)

마. 성과보고서

- 민생노동국은 2025회계연도에 “공정경제 기반마련과 상생협력 가치확산으로 활력 있는 서울 조성”이라는 1개의 전략목표와 그 하위에 속한 8개의 정책사업목표 및 1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대상 사업비로 2,529억 5천 2백만원을 지출함.
-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개의 성과지표 중 11개(84.6%)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소상공인 3년 생존률’과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사업 추진율’을 포함한 2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민생노동국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정책사업목표 (부서명)	성과지표 (단위)		목표와 실적 간 비교		
			측정방법	2024년 달성성과	2025년 달성성과
총 8개 정책사업목표, 13개 성과지표			초과달성 ^{주1)} 지표 수(개)	1	-
			달성 ^{주1)} 지표 수(개)	10	11
			미달성 ^{주1)} 지표 수(개)	2	2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3년 생존율 (%)	(t-3)년 설립업체 중 3년 이상 생존 업체 수 / 창 업보증 이용업체 중 (t-3) 년 설립업체 수 × 100	목표	65.27	69.40
			실적	69.03	67.17
			달성률(%)	106	96.8
			달성여부	달성	미달성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간편결제 활성화 (소상공인정책과)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자 수 (명)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자 수	목표	2,050,000	2,540,000
			실적	2,571,730	2,841,005
			달성률(%)	125	112
			달성여부	달성	달성
사각지대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정책과)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 참여 사업장 수 (개소)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 사 업에 참여하여 컨설팅 받 은 사업장 개소 수 집계	목표	70	70
			실적	71	70
			달성률(%)	101	100
			달성여부	달성	달성
	서울형 임원 생활비 지원금 수혜자 수 (건)	서울형 임원 생활비 지원금 수혜자 수 집계	목표	5,094	5,348
			실적	5,348	5,969
			달성률(%)	105	112
			달성여부	달성	달성

※ 주1)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중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달성을 100% 미만은 ‘미달성’, ▶달성률 100% 이상 130% 미만은 ‘달성’, ▶달성률 130% 이상은 ‘초과달성’으로 구분하고 있음.

정책사업목표 (부서명)	성과지표 (단위)	측정방법	목표와 실적 간 비교		
				2024년 달성성과	2025년 달성성과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 시장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활성화과)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개소수 (개소)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개소수	목표	2	4
			실적	2	4
			달성률(%)	100	100
			달성여부	달성	달성
	전통시장(지역상권) 지원사업 상인 사업효과성 인식도(만족도) (%)	사업효과성 인식도(만족도) 긍정 비율	목표	89	89.5
			실적	94.1	97.2
			달성률(%)	105.73	108.6
			달성여부	달성	달성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 자 권익보호를 통한 시민체 감형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공정경제과)	소비자 상담결과 피해구제율 (%)	(전자상거래센터 피해구 제 건 / 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상담 건) × 100	목표	42.7	55.8
			실적	55.6	55.8
			달성률(%)	130.2	100
			달성여부	초과달성	달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공정경제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담이용 만족도 (점)	센터 상담이용 만족도 점수 평균값 측정 (0~100점)	목표	93	92
			실적	82.6	92.2
			달성률(%)	88.8	100.2
			달성여부	미달성	달성
도시농업 육성 및 농수산 유통 경쟁력 강화 (농수산유통과)	반려식물 보급인원 수 (명)	반려식물 보급인원 수	목표	7,000	8,000
			실적	7,548	8,045
			달성률(%)	108	101
			달성여부	달성	달성
	먹거리창업센터 보육기업 수(누적) (개)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졸업 기업 수 + 입주기업 수	목표	233	267
			실적	244	280
			달성률(%)	105	105
			달성여부	달성	달성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사업 추진율 (%)	설계 및 공사 공정률	목표	30(공사)	38(공사)
			실적	10(공사)	25(공사)
			달성률(%)	33	66
			달성여부	미달성	미달성
서울농업 문화 확산 및 신기술 보급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활성화 기반구축(누적) (개소)	치유농장 수(누적)	목표	17	20
			실적	17	20
			달성률(%)	100.0	100.0
			달성여부	달성	달성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 (명)	관람객 수	목표	15,000	16,500
			실적	15,281	16,683
			달성률(%)	101.9	101.1
			달성여부	달성	달성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⁸¹⁾에는 성과가 미달성된 경우 그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시하되,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 등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2025회계연도에 미달성된 성과지표 중 ‘소상공인 3년 생존율’의 경우에는 목표 미달성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성과지표의 적정성·목표 수준의 합리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었다는 개괄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어 관련 기준의 취지에 따라 원인 분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칫 목표 미달성 원인을 서울시 외부 요인에 돌리려는 의도로 오해될 소지도 있음.

< ‘소상공인 3년 생존율’ 목표 미달성 원인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기재 내용 >

- 성과목표 미달성(96.8%) 원인분석
 - 소상공인 생존율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성 외에 국내 경기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로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임대료 상승 등 경영여건 악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어 목표 미달성
- 향후 개선 사항
 - 창업 3년 이내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생존율 제고
 -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집중 지원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경쟁력 제고
 - 소상공인 자금지원 관련 : 향후 자금운영 계획 수립 시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

- 다음으로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사업 추진율’은 목표 미달성 원인으로 공사 진행 중 토양오염물질이 발생되어 정밀 조사 및 정화계획 수립 기간(2025. 3.~7.) 동안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발생하였는지 그 자체보다는 ▶해당 장애요인을 포함한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목표 수준(공사 공정률 38%)이 합리적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원인을 분석하여야 했을 것임.

8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026. 1), p.80

- 성과분석 시 성과 미달성, 초과 달성(130% 이상)한 경우에 대한 원인분석 제시
 - 성과지표의 적정성(사업목적과의 연관성, 결과 중심 지표),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 등 시사점 도출

<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사업 추진율’ 목표 미달성 원인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기재 내용 >

□ 원인분석

-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사업 추진
 - 공사중 토양오염물질(석유화합물) 발생에 따라 정밀 조사 및 정화계획 수립 기간 동안 공사 중단(2025. 3.~7.)

□ 향후 개선 사항

-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사업 추진
 - 공사의 안전성 확보 및 신속한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 본 공사와 병행 추진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⁸²⁾은 전년도 성과보고서에 대해 지방의회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민생노동국의 성과지표 중 ‘소상공인 3년 생존율’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상담이용 만족도’의 경우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당시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⁸³⁾를 통해 2023회계연도 실적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라고 지적된 바 있음에도,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는 해당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어 관련 기준이 준수되지 않은 사례임.

-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중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수혜자 수’는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제출된 성과보고서에는 2024년도 실적이 ‘5,333건’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제출된 성과보고서에는 2024년도 실적이 ‘5,348건’으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음.

8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026. 1), p.81

(4) 내·외부 지적사항(해당 사항 있는 경우)에 대한 조치내용 기재

- 「전년도 성과보고서」 정책사업 목표 중 성과분석 항목에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기재
- 「전년도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부 검사 결과 지적사항 반영 내용 기재
- 지방의회(예결위, 상임위 검토보고서 등) 등 대외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83)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생노동국 소관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2025. 6), p.35

- 이와 관련하여 성과보고서는 단순히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아니라 결산서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시의회의 승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⁸⁴⁾ 그 내용도 정확히 작성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실적이 2025년 5월 제출된 성과보고서와 2026년 5월 제출된 성과보고서 간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어떠한 부연 설명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민생노동국의 소명이 필요할 것임.

바. 성인지결산서

- 민생노동국은 2025회계연도에 소상공인 지원, 노동 복지, 상권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등의 분야에서 성평등한 방식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 기준 10개의 사업에 성인지예산 569억 4백 만원을 반영하고, 이 중 99.7%⁸⁵⁾에 해당하는 567억 1천 5백만원을 집행함.

< 최근 3년간 성인지예산 집행실적 추이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연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집행잔액 (불용률)
2023	18	54,002	52,688 (97.6)	39 (0.1)	1,275 (2.3)
2024	15	56,753	55,368 (97.6)	75 (0.1)	1,310 (2.3)
2025	10	56,904	56,715 (99.7)	- (0.0)	189 (0.3)

- 2025회계연도에 민생노동국이 추진한 성인지예산 사업(10개) 중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5개 사업임.

8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026. 1), p.69

IV.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2. 승인신청

○ 승인대상 : 결산서(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 결산의 첨부서류는 결산승인 시 참고. 기금결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임.

85) 이는 서울시 전체 성인지예산의 집행률(98.2%)과 비교하면 1.5% 높은 수준임.

< 2025년도 성인지예산 사업별 집행실적 및 성과목표 달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회계명)	대상사업 구분 ^{주1)}	집행실적 ^{주2)}				성과목표 달성 현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집행잔액 (불용률)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민생노동국 총계 (총 10개 세부사업)			56,904	56,715 (99.7)	- (0.0)	189 (0.3)			
소상공인 정책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일반회계)	기타 사업	32,641	32,597 (99.9)	- (0.0)	44 (0.1)	성평등한 경제활동 보장 (여성 소상공인 교육 참여율)	47%	50%
	청년 골목창업 지원 (일반회계)	성별영향 평가사업	2,459	2,459 (100.0)	- (0.0)	0.1 (0.0)	여성 수료생 및 합격생 창업률 (여성 수료생 및 합격생 중 창업자 비율)	70%	58%
노동 정책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일반회계)	기타 사업	954	938 (98.3)	- (0.0)	16 (1.7)	성평등한 노동권리 및 경제활동 보장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여성 이용자 수)	44,619명	9,442명
	서울노동권익센터 운 영 (일반회계)	기타 사업	4,675	4,666 (99.8)	- (0.0)	9 (0.2)	성평등한 노동권리 및 경제활동 보장 (여성 노동상담 및 교육 이용률)	55%	55%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일반회계)	성별영향 평가사업	5,593	5,587 (99.9)	- (0.0)	6 (0.1)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여성 수혜자 수)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입원 및 검진 지원에 대한 여성 수혜자 비율)	3,000건 50%	2,903건 49%
상권 활성화과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 계 조성 (일반회계)	성별영향 평가사업	7,728	7,636 (98.8)	- (0.0)	92 (1.2)	공정하고 성평등한 창업 환경 조성 (로컬브랜드 상권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및 정(로컬인 서울) 교육생 중 여성 참여비율) 여성 창업 활성화 및 고도화 (여성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 상인 만족도)	60% 75점	44% 81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자치단체 특화사업	2,142	2,132 (99.5)	- (0.0)	10 (0.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가치 창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재양성 교 육 남성 참여자 비율) 공정하고 성평등한 사회적경제 조성 (판로 경쟁력 강화 컨설팅 지원 여 성 참여자 비율)	40% 50%	44% 73%
농업기술 센터	농업전문인력 육성 (일반회계)	자치단체 특화사업	167	166 (99.5)	- (0.0)	0.8 (0.5)	여성 농업지도자 농업전문 역량강화 (농업지도자 교육 여성 참여율)	51%	55%
	지속가능 시민농업 (일반회계)	성별영향 평가사업	449	439 (97.8)	- (0.0)	10 (2.2)	여성의 시민농업 활동 자변 확대 (사업을 통한 차유농업사 자격 취득 여 성의 강사 활동률)	44%	41%
	도시민 농업기술교육 (일반회계)	자치단체 특화사업	96	96 (99.4)	- (0.0)	0.6 (0.6)	여성의 농업 분야 활동 자변 확대 (여성 교육생 참여비율) 여성 특성을 반영한 농업교육 활성화 (여성 특화 농업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	45% 8회	55% 8회

※ 주1)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되나, 민생노동국이 2025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는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 추진사업이 없음.

주2) '집행실적'은 백만원 단위로 표시하되 그 미만의 수치는 반올림한 것이나, 1백만원 미만의 집행잔액이 발 생된 3개 사업(청년 골목창업 지원, 농업전문인력 육성, 도시민 농업기술교육)은 집행잔액을 소수점 1자리 까지 표시한 것임.

- 이 중 ‘청년 골목창업 지원’은 성과목표를 여성 수료생 및 합격생 창업률 70%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실적은 58%에 그친 것으로, 소관부서(소상공인정책과)는 ‘결과에 대한 원인’에 2025회계연도에 다소 도전적인 목표(70%)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목표가 미달성되었으며, 2024회계연도 대비 실적 자체는 개선(57%→58%)되었다는 자체평가 의견을 기재함.

< ‘청년 골목창업 지원’ 성인지결산서 중 자체평가 기재 내용 >

□ 자체평가

◦ 결과에 대한 원인 :

- ▶ 2025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편성 시, 목표를 다소 도전적으로 설정함에 따라, 미달성으로 나타남.
- ▶ 다만, 성과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인 성과 개선은 지속되고 있음. 실제로, 2024년 실적은 57%였고, 2025년에는 58.3%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창업률이 1.3%p 상승하는 등 점진적인 성과 향상이 확인됨.

◦ 향후 개선사항 :

- ▶ 2026 성인지 예산서에는 과거 실적치를 반영하여 도전 가능한 목표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 ▶ 해당 사업의 여성 창업자의 창업을 제고를 위해 우수 여성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연계 및 후속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수료에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성과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음.

※ 출처 : 민생노동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p.202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은 성과목표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여성 이용자 수 4만 4,619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실적은 9,442명에 그친 것으로, 소관부서(노동정책과)는 ‘결과에 대한 원인’에 2025년도부터 시비 지원을 중단한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실적을 제외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2개소)가 운영 종료됨에 따라 목표가 미달성되었다는 자체평가 의견을 기재함.⁸⁶⁾

- 그러나 2024년 11월 시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이미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개소(도심권·동남권)의 운영 종료⁸⁷⁾와 자치구 센터에 대한 지원 중단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성인

86) 민생노동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p.204

87) 당초 서울시가 노동센터 간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을 위탁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 기능을 서울노동권익센터로 통합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2023년 6월임.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7270 (2023. 6. 22.,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0호)

지예산서에서 전년도에 7만 6,721명을 달성한 성과목표를 4만 4,619명으로 축소하여 설정한 것 역시 이러한 여건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당초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 제출 시 설정한 목표(4만 4,619명)보다 실적(9,442명)이 대폭 감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나, 소관부서는 목표 미달성 사유로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이미 고려된 사정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성과가 목표치를 크게 밑돌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2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여성 수혜자 수 3,000건과 ▶입원 및 검진 지원에 대한 여성 수혜자 비율 50%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전자는 2,903건, 후자는 49%에 그쳐 2개 성과목표 모두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노동정책과)는 ‘결과에 대한 원인’에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산재위험에 노출된 근로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아 성별 간 유병률 및 입원 생활비 신청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2025년도부터는 여성 비율이 높은 방문노동자를 우선 지원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여성 수혜율이 증가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음.⁸⁸⁾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2025년도와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⁸⁹⁾를 통해 사업내용상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성별 간 지원규모의 균형을 맞추기

88) 민생노동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p.209

89)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2024. 11.), p.34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2025. 11.), p.38

위해 사업비 일부를 특정 성별을 위한 용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도 성인지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기 어렵다고 지적된 바 있는 만큼,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동 사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도 2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여성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 상인 만족도 75점과 ▶로컬브랜드 상권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정(로컬인 서울) 교육생 중 여성 참여비율 60%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전자는 81점을 획득하여 달성한 반면 후자는 44%에 불과하여 2개 성과목표 중 1개는 달성하지 못하였음.
- 동 사업은 성인지결산서에 로컬브랜드 상권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창업가)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 소상공인 비율이 2023회계연도에는 50%, 2024회계연도에는 58%, 2025회계연도에는 44%로 측정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2025회계연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⁹⁰⁾
- ‘지속가능 시민농업’ 은 사업을 통해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여성 중 실제 강사로서 활동한 인원 비율 44%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으나 41%에 그친 것임.
- 민생노동국은 향후 성인지예산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내용,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인지결산서 작성 시에는 미달성된 성과목표에 대해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이후의 개선방안에 반영함으로써 성인지예산과 성인지결산이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90) 민생노동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p.212

사. 기후결산서

- 기후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결산 시에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평가·환류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⁹¹⁾
- 민생노동국은 2025회계연도 기후결산 결과 4개 세부사업에 대해 248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여 187억 8천 5백만원(75.7%⁹²⁾)을 집행한바, 이는 기후결산서를 처음 작성한 2024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사업 수는 2개, 예산현액은 245억 2천 7백만원, 지출액은 264억 1천 3백만원 감소한 것임.

< 최근 2년간 기후예산 집행실적 추이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연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집행잔액 (불용률)
2024	6	49,351	45,198 (91.6)	3,348 (6.8)	805 (1.6)
2025	4	24,824	18,785 (75.7)	- (0.0)	6,039 (24.3)

91) 서울시의 기후예산제 추진경위

-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정부 차원에서는 관계 법률인 「국가재정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 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률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라고는 볼 수 없음.
- 그러나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 운영계획」(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9956, 2021. 7. 16.)에 따라 3개 실·본부·국(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의 2022년도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범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모두의 예산과 기금 전반에 걸쳐 기후예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단 기후예산서는 2022회계연도부터 작성한 것이나, 기후결산서는 2024회계연도부터 작성하였음.

92) 이는 서울시 전체 기후예산의 집행률(84.0%)와 비교하면 8.3% 낮은 수준임.

- 서울시의 「2025 회계연도 기후결산서 작성지침」⁹³⁾에서는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기재함에 있어 달성률에 따라 ▶1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달성’, ▶100% 이상 130% 미만인 경우는 ‘달성’, ▶100% 미만은 ‘미달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성과보고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달성여부를 구분하는 것임.
- 그러나 2026년 5월 시의회에 제출된 「2025회계연도 기후결산서」는 ▶달성률이 100% 이상인 단년도 사업과 달성률을 불문하고 현재 정상추진 중인 다년도 사업은 ‘달성’, ▶달성률이 100% 미만인 단년도 사업과 달성률을 불문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다년도 사업은 ‘미달성’, ▶기후예산서에 성과지표 및 목표가 없어 달성률 판단이 어려운 사업은 ‘비대상’으로 구분함으로써, 2026년 3월 기후예산제도 총괄부서(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가 수립한 작성 지침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달성 여부를 기재하고 있음.

< ‘성과목표’ 관련 기후결산서의 용어 정의 >

○ 성과목표

- 달 성 : 성과목표 대비 실적이 100% 이상*인 단년도 사업 및 정상추진 중인 다년도 사업
* 130% 이상인 경우 초과달성으로 표기(세부자료만)
- 미 달 성 : 성과목표 대비 실적이 100% 미만인 단년도 사업 및 사업지연 중인 다년도 사업
- 비 대 상 : 기후예산서에 성과지표 및 목표가 없어 달성률 판단이 어려운 사업

※ 출처 : 서울특별시, 「2025 회계연도 기후결산서」 (2026. 5), p.3

- 기후결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실·본부·국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민생노동국은 4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비대상’이며 ▶1개 사업은 ‘달성’ ▶2개 사업은 ‘미달성’으로, 2025회계연도 기후결산서를 작성한 전체 실·본부·국(24개) 중 달성률(33.3%)⁹⁴⁾이 최하위로 나타남.

93)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2025 회계연도 기후결산서 작성지침」 (2026. 3.), p.12, p.14, p.16

94) 서울시 전체의 성과목표 평균 달성률(74.2%)과 비교하면 40.9% 낮은 수준임.

< 2025회계연도 실·본부·국별 기후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개수	집행액				성과목표				온실가스 감축효과	
		당초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달성 (정상추진 포함) (A)	미달성 (사업지연 등) (B)	비대상	달성률 A/(A+B)	감축 목표 (tCO ₂)	감축량 (tCO ₂)
계	258	3,096,185	3,511,433	2,948,416	84.0%	184	64	10	74.2%	721,894.7	621,365.0
소방재난본부	4	10,370	9,102	4,088	44.9%	4	-	-	100.0%	23.6	23.6
경제실	6	37,511	50,722	46,591	91.9%	6	-	-	100.0%	193.5	170.7
관광체육국	4	30,900	38,777	21,541	55.6%	4	-	-	100.0%	435.5	-
평생교육국	2	1,791	1,791	1,791	100.0%	2	-	-	100.0%	18.1	18.1
시민건강국	1	9,044	9,044	4,464	49.4%	1	-	-	100.0%	-	-
미래공간기획관	4	42,289	43,093	26,850	62.3%	3	-	1	100.0%	36.0	-
디자인정책관	3	6,100	6,300	5,791	91.9%	3	-	-	100.0%	-	-
도시공간본부	1	202	3,611	591	16.4%	1	-	-	100.0%	-	-
물순환안전국	6	26,115	48,886	35,954	73.5%	6	-	-	100.0%	341.5	-
지치경찰위원회	1	438	438	312	71.2%	1	-	-	100.0%	-	-
시립미술관	1	6,820	10,721	10,072	93.9%	1	-	-	100.0%	91.5	108.5
재난안전실	26	275,877	314,488	263,187	83.7%	22	4	-	84.6%	1,410.8	1,449.5
여성가족실	7	57,444	55,359	47,914	86.6%	5	1	1	83.3%	1,131.8	208.1
복지실	8	69,824	75,109	63,402	84.4%	5	1	2	83.3%	56.3	55.2
균형발전본부	6	68,706	58,760	42,346	72.1%	5	1	-	83.3%	-	84.0
미래한강본부	9	18,101	25,122	20,654	82.2%	7	2	-	77.8%	12,302.3	3,809.2
정원도시국	49	227,615	280,224	218,369	77.9%	36	13	-	73.5%	2,382.6	3,577.5
주택실	16	92,026	92,669	65,288	70.5%	11	4	1	73.3%	2,452.9	2,465.2
서울이리수본부	11	109,503	117,647	73,706	62.7%	8	3	-	72.7%	201.0	144.1
도시개발사업본부	7	483,220	578,933	482,526	83.3%	5	2	-	71.4%	4,999.3	-
기후환경본부	39	477,797	531,510	424,307	79.8%	25	11	3	69.4%	631,955.7	554,062.4
교통실	34	969,666	1,060,679	1,008,097	95.0%	18	15	1	54.5%	63,139.1	54,735.9
문화본부	9	53,349	73,624	61,790	83.9%	4	5	-	44.4%	723.3	453.1
민생노동국	4	21,476	24,824	18,785	75.7%	1	2	1	33.3%	-	-

※ 출처 : 서울특별시, 「2025 회계연도 기후결산서」 (2026. 5.), p.8의 내용을 재구성
 - 달성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실·본부·국을 정렬한 것임

- 민생노동국의 기후예산 사업별로 성과목표 달성현황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의 경우 ▶ 성과목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 유형이 다양하여 목표 수립 및 실적 평가가 어렵다는 사유로 ‘비대상’ 사업으로 구분되고, ▶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성과

목표와 동일한 사유(사업 유형이 다양함)로 감축량 산정이 어려워 결국 가시적인 감축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성적인 목표⁹⁵⁾만 제시하고 있음.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은 ▶성과목표인 주차장조명 234개에 대한 저전력화(형광등→LED조명등)로서 ‘미달성’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경우 정량적 목표는 2027년 사업 준공 시 이산화탄소 7톤을 감축하는 것이고, 정성적인 목표는 친환경차량 전용구역을 설치하여 친환경차량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이나 이 역시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의 경우 ▶성과목표는 3단계(도매권 2공구) 실시설계 완료로서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협의·조정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미달성’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경우 정량적 목표는 3단계 사업을 제로에너지건물 4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2031년 사업 준공 시 이산화탄소 2,856.2톤을 감축하려는 것이나, 2025회계연도 결산시점에서는 감축효과가 없음.
- ‘양곡도매시장 이전’은 ▶성과목표는 제로에너지건물 1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2027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나 현재 정상 추진 중이라는 점을 사유로 ‘달성’으로 구분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경우 정량적 목표로 2026년도에는 이산화탄소 546.2톤을, 2027년도 공사 준공 시에는 571.3톤을 감축하려는 것이나, 2025회계연도 결산시점에서는 감축효과가 없음.

95) 친환경 자재 사용 등을 권고하여 에너지사용 절감에 기여.

< 2025년도 기후예산 사업별 집행실적 및 성과목표 달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tCO₂)

부서명 (회계명) ^{주1)}	기후결산서상 세부사업명 ^{주2)}	기후결산서상 사업유형 ^{주3)}	집행실적				성과목표 달성 현황					온실가스 감축효과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성과지표 (단위)	목표	실적	달성률	달성 여부	정량효과		정성효과	
												감축 목표	감축량	감축 목표	감축량
민생노동국 총계 (총 4개 세부사업)			24,824	18,785 (75.7)	- (0.0)	6,039 (24.3)									
상권 활성화과 (일반회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배출사업	12,122	12,096 (99.8)	- (0.0)	26 (0.2)	해당 없음 (비대상)					-		친환경 자재 사용 등을 권고하여 에너지사용 절감에 기여	
상권 활성화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주차장 건립)	배출사업	2,800	2,800 (100.0)	- (0.0)	- (0.0)	주차장조명 자연화 (LED 조명등)	234개	-	-	미달성	7	- (‘27년 준공시 반영)	친환경 차량 전용구역 설치로 친환경 차량 전환 유도	
농수산 유통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혼합사업 ^{주4)}	6,000	- (0.0)	- (0.00)	6,000 (100.0)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진척율	3단계 (도매관2공구) 실시설계 완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 (결과적정)	-	미달성 (사업 지연)	2,866.2	-	-	
농수산 유통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양곡도매시장 이전	혼합사업 ^{주4)}	3,902	3,889 (99.7)	- (0.0)	13 (0.3)	주요인중 (비주요용 1등급)	9,521㎡	토목공사 완료	-	달성 (정상 추진)	‘26년 546.2 ‘27년 571.3	- (향후 반영) - (향후 반영)	-	

※ 주1) 기후결산서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특별회계의 구체적인 명칭은 미포함), 개별 사업이 속한 특별회계의 명칭까지 정확히 표시한 것임.

주2) 기후결산서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상의 정확한 사업명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전환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주차장 건립)”,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임.

주3) 기후예산서와 기후결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유형은 감축사업, 배출사업, 혼합사업으로 구분되나, 민생노동국이 2025회계 연도에 추진한 사업 중 감축사업은 없음.

주4)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양곡도매시장 이전’은 2025년도 기후예산서에서는 배출사업으로 구분되었던 것이나, 2025회계연도 기후결산서에서는 배출사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혼합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즉 예산서와 결산서 간 사업유형 구분이 불일치하는 사업임).

- 이와 관련하여 예산은 단년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는 재정계획으로, 예산을 성과 및 특정 목적(온실가스 감축, 성평등 등)과 연계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결과 도출된 성과나 목적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목표치도 예산과 동일하게 단년도를 기준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민생노동국의 기후예산사업은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

완료 시 기대되는 성과목표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각 회계연도의 결산시점에서는 해당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달성’으로 구분하는 모순적인 제도 운영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기후예산제도가 그 명칭과는 달리 기후와 예산을 전혀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음.

- 따라서 민생노동국은 기후예산제도의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목표치를 단년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개선하되, 단년도를 기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없거나 세부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내용이 매우 다양하여 목표치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과 온실가스 감축을 연계하는 제도인 기후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 기후예산서와 기후결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명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사업명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후결산서에는 일반회계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회계명조차 적시하지 않고 있는바, 예산 및 기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명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회계명 또한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서울시(기후환경본부)는 2024회계연도와 2025회계연도에 기후결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⁹⁶⁾에서 기후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결산을 소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후환경본부를 소관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만 기후결산서를 제출하고 있음.

96)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후예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기후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조례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제출하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⁹⁷⁾에서 예산안과 결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안전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상임위원회에 모두 제출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위원회에만 기후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의 예비심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어 즉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아. 주요 사업별 검토

1)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의 안정적인 보증 지원과 기관 운영을 위해 출연금 426억 2천만원(보증료 재원 140억 2천 5백만원, 신용보증 재원 285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지출됨.
- 당초 본예산은 14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안심통장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내 수출기업경영안정자금 신설에 따른 보증재원을 확대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85억원이 증액됨.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출연금	42,620	42,620	42,620	-	-	-

97)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생략)

- 먼저 보증료 지원은 동 재단이 보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소상공인 등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보증료)를 서울시가 출연금으로 대납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140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함.
-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년부터 일부 정책자금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희망동행자금과 신속드림자금의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였음.

< 보증료 지원 세부내역 >

구분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1	희망동행자금	경영애로 소상공인	• 최대 1억원 • 2.0% 이차보전 • 보증료 전액지원
2	신속드림자금 ⁹⁸⁾	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저소득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최대 3천만원 • 1.8% 이차보전 • 보증료 50% 지원

- 보증료 지원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보증료 지원이 장기화될 경우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효과와 지원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다음으로 신용보증 재원은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고유사업인 보증공급이 적정 운용배수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에는 285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됨.
- 운용배수란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⁹⁹⁾에서는 운용배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98)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전용 취급

9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재단의 내부 관리기준¹⁰⁰⁾에서는 잠재부실 위험 및 경기변동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적 한도와 별도로 운용배수 8배 이 내를 적정 운용배수로 설정하고 있음.
- 2025년도에는 3조 5,918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코로나19 시기 대규모로 공급된 보증의 회수에 따른 보증잔액¹⁰¹⁾ 감소와 출연금 증액에 따른 기본재산의 확충으로 운용배수는 7.9배수를 유지하여 동 재산이 설정한 적정 운용배수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여짐.

< 최근 3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 운용배수 규모 >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보증공급액	31,349	31,366	35,918
보증잔액 [㉠]	97,313	80,859	70,047
연간 출연금 조성액	1,191	1,120	1,576
당기순손실	1,512	2,052	1,22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	-2	-7
기본재산 [㉡]	9,477	8,547	8,905
운용배수 ^{㉡/㉠}	10.3	9.5	7.9

- 또한 동 재단의 주요 위험지표인 대위변제 규모는 2025년도 3,075억원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발생액은 2,200억원으로 계획 대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100) '25~'27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운용배수 및 순자산 관리방안(2025.2.)

101) 보증의 누적규모

< 2025년도 구상권 관리 실적 >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2024년 실적	2023년 실적
	목표	실적		
순보증사고액	4,051	3,060	4,270	4,638
순보증사고율	5.2	4.4	5.3	4.8
순대위변제액	3,075	2,200	3,107	3,470
순대위변제율	4.0	3.1	3.8	3.6

- 이와 같이 대위변제 규모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보증 또한 적정 운용배수 내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필요 이상의 재원이 누적되지 않도록 신용보증재원 목적의 출연금 규모를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동 재단의 수입 결산액은 4,871억 7천 5백만원으로 예산 대비 100.9%가 수납됨.

< 2025년도 신용보증재단 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2025년				2024년 결산액	2023년 결산액
	예산액 ㉠	결산액 ㉡	증감 ㉢=㉠-㉡	증감률 ㉢/㉠		
합 계	482,630	487,175	△4,545	△0.9	567,936	594,077
사업예산 계	135,635	134,638	997	0.7	122,235	111,059
고유사업	95,670	94,735	935	1.0	93,281	88,382
보증료	51,047	46,277	4,770	9.3	42,599	45,661
예치금이자	23,545	27,165	△3,620	△15.4	29,435	30,271
대여금이자	118	75	43	36.4	88	96
수입수수료	1,818	2,087	△269	△14.8	1,567	1,598
임대료 등	5,017	4,635	382	7.6	4,208	3,883
기부금	100	100	-	-	100	-
출연금수익	14,025	14,396	△371	△2.6	15,284	6,873
수탁사업 ¹⁰²⁾	39,965	39,903	62	0.2	28,954	22,677

(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2025년				2024년 결산액	2023년 결산액
	예산액 ㉠	결산액 ㉡	증감 ㉢=㉠-㉡	증감률 ㉢/㉠		
자본예산 계	339,436	344,978	△5,542	△1.6	379,359	303,203
재보증보전금	149,407	157,063	△7,656	△5.1	221,710	155,536
출연금	156,470	158,009	△1,539	△1.0	112,001	119,053
서울시	28,600	28,595	5	0.0	18,900	10,000
자치구	9,370	9,320	50	0.5	4,400	11,300
정부	3,000	5,725	△2,725	△90.8	267	12,901
금융회사 등	115,500	114,369	1,131	1.0	88,434	84,852
임차보증금	1,342	868	474	35.3	600	935
채권매각수입	32,217	29,038	3,179	9.9	45,048	27,679
기타예산 계	5,449	5,449	-	-	58,192	174,574
예치금사용	-	-	-	-	53,495	121,727
순세계잉여금	3,162	3,162	-	-	4,697	52,847
대행사업비 사용잔액	2,287	2,287	-	-	-	-
이월재원 수입 계	2,110	2,110	-	-	8,150	5,241
이월재원충당액	2,110	2,110	-	-	8,150	5,241

- 동 재단의 전체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연금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등 모든 출연기관의 출연 규모가 전년 대비 확대되어 1,580억 9백만원이 조성됨.
- 또한 재보증보전금은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신용보증증양회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으로, 2025년도 대위변제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재보증보전금 또한 감소하였음.
- 다음으로 2025년도 동 재단의 지출 결산액은 4,590억 7천 1백만원으로 예산대비 95.1%의 집행률을 보임.

< 2025년도 재단 지출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2024년 결산액	2023년 결산액
	예산액 ㉠	결산액 ㉡	증감 ㉢=㉠-㉡	증감률 ㉣/㉠		
합 계	482,630	459,071	23,559	4.9	560,377	581,230
사업예산 계	159,482	145,557	13,925	8.7	129,376	134,491
고유사업	119,517	109,099	10,418	8.7	103,150	113,609
관리업무비	81,035	77,770	3,265	4.0	66,794	68,175
인건비	50,686	49,151	1,535	3.0	41,666	43,741
경비	30,349	28,619	1,730	5.7	25,128	24,434
성과급	7,109	7,095	14	0.2	6,352	8,104
재보충료	27,807	24,234	3,573	12.8	30,004	37,330
예비비	3,566	-	3,566	100.0	-	-
수탁사업	39,965	36,458	3,507	8.8	26,226	20,882
자본예산 계	306,913	297,469	9,444	3.1	418,410	389,871
대위변제금	298,395	289,217	9,178	3.1	415,530	387,729
투자자산	1,458	1,257	201	13.8	1,393	657
유형자산	803	779	24	3.0	1,161	1,293
무형자산	492	451	41	8.3	326	192
반환금	5,765	5,765	-	-	-	-
기타예산 계	14,125	14,125	-	-	4,697	52,847
예치금 전입	8,676	8,676	-	-	-	-
기본재산 적립	3,162	3,162	-	-	4,697	52,847
대행사업비 반환금	2,287	2,287	-	-	-	-
이월예산 지출계	2,110	1,920	190	9.0	7,894	4,021
수익적지출	2,090	1,900	190	9.1	3,392	3,652
자본적지출	20	20	-	-	4,502	369

- 동 재단의 2025년도 지출결산에서 불용률 15% 이상 과목이 예비비 이외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재단은 회계연도 말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 조정함에 따라 결산상 불용 규모와 불용률이 축소된 측면이 있어, 결산 수치만으로는 실제 집행 부진 여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출예산 변동내역 >

(단위: 백만원, %)

항목		본예산	제1차추경	제2차추경	제3차추경	증감	
						증감액 ㉔=㉓-㉒	증감율 ㉔/㉒
이사회 승인일		2024.12.27	2025.6.3.	2025.10.15.	2025.12.24.		
사업 예산	인건비	46,543	46,733	46,733	50,686	3,953	8.5
	경비	31,569	33,094	33,094	30,349	△2,745	△8.3
	성과급	6,551	6,551	6,551	7,109	558	8.5
	재보증료	36,976	36,976	37,807	27,807	△10,000	△26.5
	예비비	3,123	3,566	3,566	3,566	-	-
자본 예산	대위변제금	364,700	364,700	364,700	298,395	△66,305	△18.2
	투자자산	2,241	2,241	2,241	1,458	△783	△35.0
	유형자산	1,429	1,497	1,497	803	△694	△46.3
	무형자산	591	591	591	492	△99	△16.8
	반환금	5,765	5,765	5,765	5,765	-	-
기타 예산	기본재산적립	-	3,162	3,162	3,162	-	-
	예치금 전입	-	-	-	8,676	8,676	100.0

-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률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말 일괄 감액보다는 회계연도 중 사업 구조조정, 집행계획 재검토 등 사전적 예산 관리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총 281억 4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과 수탁사업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37억 1천 4백만원은 기본재산에 반영되어 재단의 보증공급 기반 확충에 활용될 예정임.

< 2025년도 재단 결산결과 잉여금 발생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결산 잉여금			
		계	명시이월	수탁사업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487,175	459,071	28,104	945	3,445	23,714

2)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환급 지원 사업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은 실업·노령·질병·상해 등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바,¹⁰³⁾ 민생노동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과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료 환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중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¹⁰⁴⁾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¹⁰⁵⁾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도에는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였으나, 2020년도부터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행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9.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의 지원

※ 이 내용은 2019년도부터 시행하여 온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도 되는 것으로서, 2025년 5월 일부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9612호^{주1)})을 통해 신설된 것임.

103)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104)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고용보험’에 비해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임(2025년도 2분기 기준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 0.7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이 지급됨.

105) 이전에는 서울시 소재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30%’를 5년간 지원하였으나, 2024년도부터 ▶정부의 고용보험 지원율이 최대 50%에서 최대 80%로 상향됨에 따라 서울시는 ‘납부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지원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음. 참고로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모두 받는 가입자는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 이는 당초 2018년 10월 일부개정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이후 2025년 5월 일부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9612호^{주1)})을 통해 산재보험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개정된 것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10조(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이는 2021년 3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정 당시 규정된 것임.

※ 주1)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3월 31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35)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2025. 4. 25.)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 제9612호로 개정된 것임.

- 이에 반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은 2025년 5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지원근거(제8조제9호 및 제10조의3)가 마련되어 같은 해 6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¹⁰⁶⁾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5년간 매월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30%~50%)¹⁰⁷⁾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바, 사업시행 첫해(2025년)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행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과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이 해당 보험에 가입한 후 환급 지원을 신청하면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현황을 확인한 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환급은 당월 이전의 납부분에 대해 이루어지는바, 매년 예산편성 시에도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 지원 경비가 편성되고 있음.

106)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소상공인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는 산재보험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 여부가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임(2024년 11월 기준 0.36%).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사업주 자신 또는 유족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가입하는 것임.

107) 보험 가입자가 선택하는 기준보수액(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에 따라 ▶1등급(월 보수액 251만 1,200원)부터 4등급(월 보수액 405만 1,990원)까지는 50%, ▶5등급(월 보수액 456만 5,590원)부터 8등급(월 보수액 610만 6,380원)까지는 40%, ▶9등급(월 보수액 661만 9,970원)부터 12등급(월 보수액 816만 761원)까지는 30%를 지원하는 것임.

- 2개 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은 예산현액 7억 2천 2백만원 전액(100.0%)이 지출되었으며, ▶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은 예산현액 2억 3천 7백만원 중 1억 9천만원(79.9%)이 지출되고, 4천 8백만원(20.1%)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이나, 다음의 5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첫째, 2개 사업 간 발생한 예산의 변경사용이 불가피한 조치였는지와 변경사용 규모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은 당초 2025년도 본예산에 ▶ 고용보험 환급 지원 경비 5억 9천 7백만원, ▶ 고용보험 지원 시스템 구축비¹⁰⁸⁾ 5천 5백만원, ▶ 운영비 4백만원과 이에 대한 ▶ 대행수수료 1천 2백만원(사업비 등의 2%)를 포함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소관부서는 12월 중 11월 납부분을 환급하기 위한 경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의 같은 통계목으로부터 5천 4백만원을 변경사용(2025. 12. 2.)하였음.

<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환급 지원 사업 간 변경사용 내역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부서명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목그룹	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 금액		변경사용 승인일자
								감액	증액	
일반회계	소상공인 정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경상이전 (300)	공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3)	292	△54		2025. 12. 2.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경상이전 (300)	공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3)	668		54	

- 참고로 동 변경사용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고용보험 납부분에 대한 지원금액(5억 6천 4백만원)이 전년 동기 지원금액(5억 7백만원)

108) 고용보험 환급 신청현황, 지원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대비 11.2% 증가함에 따라, 2025년 11월 납부분에 대한 12월 중 환급액도 최대 8천 4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여, 최대 예상 소요액 대비 부족 사업비(5천 3백만원)와 그에 대한 대행수수료(1백만원)를 추가 확보한 것임.

< 2024·2025회계연도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내역 비교 >

(단위 : 건, 백만원)

지원대상 (보험료 납부시기)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증감	
	실제 지원시기	지원 건수	지원 금액	실제 지원시기	지원 건수	지원 금액	지원건수 (건수 증감률)	지원금액 (금액 증감률)
전년도 12월 납부분 ~10월 납부분	'24. 4. ~ 12.	34,366	507	'25. 3. ~ 11.	52,330	564	17,964 (52.3)	57 ^{주1)} (11.2)
11월 납부분	'24. 12.	4,348	75	'25. 12.	4,902	53 ^{주1)}	554 (12.7)	△22 (△29.5)
합계		38,714	582		57,232	617	18,518 (47.8)	35 (6.0)

※ 주1) 소관부서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납부분에 대한 지원금액(5억 6천 4백만원)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납부분에 대한 지원금액(5억 7백만원)보다 11.2% 증가함에 따라, 2025년 11월 납부분에 대한 지원금액도 2024년 11월 납부분에 대한 지원금액(7천 5백만원)보다 11.2% 증가한 8천 4백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계하여 12월 2일 변경사용을 통해 추가 자원(5천 4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2025년 11월 납부분에 대한 지원금액은 변경사용 시의 추계(최대 8천 4백만원)보다 적은 5천 3백만원에 그친 것임.

- 그리고 본예산 편성과 변경사용을 통해 확보된 예산현액(7억 2천 2백만원) 전액이 회계연도 중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전액 교부되는 방식으로 지출됨에 따라, 민생노동국의 세출결산상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은 것임.¹⁰⁹⁾
- 다만 민생노동국으로부터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험료 환급 지원은 보험료 미납, 중도해지 인원 발생 등으로 인해 민생노동국의 추계(최대 6억 4천 9백만원)보다 지출액(6억 1천 7백만원)이 감소하여 3천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시스템 구축비·운영비·대행 수수료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교

109)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할 소지는 없음.

※ 결산서상 보조금반납금은 국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한 후 국가에 반환할 예정인 '미집행된 국비'를 의미함.

부액보다 실수요가 감소하여 3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행사업비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부항목			서울시 교부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집행률 ㉡/㉠
사업비 등			708	643	65	90.9
사업비	보험료 환급 지원		649 ^{주1)}	617	31 ^{주1)}	95.2
	전산시스템 구축		55	22	33 ^{주2)}	40.0
	운영비		4	4	- ^{주3)}	98.1
대행수수료(사업비 등의 2%)			14	13	1	90.9
합 계			722 ^{주4)}	656	66	90.9

※ 주1) 12월 환급(11원 납부분에 대한 환급) 지원을 위해 변경사용을 통해 민생노동국이 추가 예산을 교부하였으나(2025. 12.), 실제 지원 결과 보험료 미납, 중도 해지 인원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주2)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부된 사업비(5천 5백만원) 중 2천 2백만원만을 활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주3) 운영비 집행잔액 7만 8,482원이 포함된 것임.

주4) 민생노동국이 전액 교부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의 예산현액(7억 2천 2백만원)과 일치함.

출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운영팀-55 (2026. 1. 22.) "2025년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서 수정 제출" 재구성

- 즉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업 추진결과 보험료 환급 지원을 위한 예산에 한정하더라도 3천 1백만원, 서울시가 교부한 전체 대행사업비(총 7억 2천 2백만원)¹¹⁰⁾ 중에서는 총 6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2026년 1월 서울시로 반환되었음.
- 이를 감안하면 소관부서(소상공인정책과)는 회계연도말 대행사업비 집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급 지원 경비의 집행잔액(3천 1백만원)을 고려하여 변경사용 규모를 실제 변경사용액(5천 4백만원)보다 축소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의 집행잔액을 보험료 환급 지원 경비로 조정하여 활용하도록 함으로써¹¹¹⁾ 변경사용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110) 서울시가 예산현액(7억 2천 2백만원) 전액을 지출한 것임.

111) 2023년도의 경우 홍보비 확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민생노동국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사업비 중 일부를 운영비로 '항목 간 조정'한 사례가 있음.

- 소관부서는 회계연도 중 예산소진으로 인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최대 예상 소요액 대비 부족 사업비를 변경사용을 통해 확보한 사안으로 이해되나, 예산의 변경사용은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변경사용의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해 보다 신중히 판단이 요구됨.
- 둘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의 대행사업비 미집행 규모가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행사업으로서 소관부서의 입장에서는 대행사업비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교부하는 행위 자체가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행사업비가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되더라도 민생노동국의 세출결산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음.

< 최근 3년간 세출결산 결과 및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환내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민생노동국 세출결산 결과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예산현액 대비 비율)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행사업비 반환금을 서울시가 수납한 시기
	예산액 ^{※1)}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집행잔액 (불용률)		
합 계	2,289	54	2,343	2,212 (94.4)	- (0.0)	131 (5.6)	230 (9.8)	
2023	841	-	841	841 (100.0)	- (0.0)	- (0.0)	112 (13.4)	2024. 2. 5.
2024	781	-	781	650 (83.3)	- (0.0)	131 (16.7)	52 (6.7)	2025. 2. 7.
2025	668	54	722	722 (100.0)	- (0.0)	- (0.0)	66 (9.1)	2026. 1. 29

※ 주1) 결산서상 예산액은 최종예산을 의미하는 것이나,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추가경정예산과 간주처리를 통해 소요예산이 조정된 내역이 없어 최종예산이 본예산과 동일함.

- 이와 관련하여 민생노동국의 세출결산상 미집행액은 ▶ 2023회계연도에는

0원, ▶2024회계연도에는 1억 3천 1백만원, ▶2025회계연도에는 0원으로서 최근 3년간 총 1억 3천 1백만원(예산현액 대비 5.6%)에 불과하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실제 사업을 수행한 결과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2023회계연도에는 1억 1천 2백만원, ▶2024회계연도에는 5천 2백만원, ▶2025회계연도에는 6천 6백만원으로서 최근 3년간 총 2억 3천만원(예산현액 대비 9.8%)이 발생하여 이듬해에 서울시로 반환되고 있음.

- 소관부서 단계에서 발생한 미집행액뿐만 아니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반환한 집행잔액까지 포함할 경우, 동 사업의 실질적인 미집행액은 ▶2023회계연도에는 1억 2천 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3.4%), ▶2024회계연도에는 1억 8천 3백만원(예산현액 대비 23.4%), ▶2025회계연도에는 6천 6백만원(예산현액 대비 9.1%)으로서 최근 3년간 예산현액의 15.4%에 해당하는 재원(3억 6천 1백만원)이 활용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소관부서는 미집행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경우 환급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일 수도 있으나,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26년도에 8년차를 맞는 만큼, 보다 정밀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필요 시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규모를 증·감 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의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와 설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은 당초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2억 9천 2백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2025년 5월

완료됨에 따라 같은 해 6월부터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민생노동국은 예산현액(2억 3천 8백만원) 대비 20.1%(4천 8백만원)가 불용된 사유로 조례 개정이 지연되어 지원기간이 축소(12개월→6개월)된 점을 들고 있음.

- 다만 민생노동국¹¹²⁾과 서울신용보증재단¹¹³⁾이 각각 2025년도의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한 방침서에는 ▶2025년도에는 목표(신청자 수 1,000명) 대비 192%에 해당하는 1,921명의 신청자를 모집하였으나 이 중 213명은 반려하였으며, 나머지 1,708명을 접수하였지만 보험 미가입, 보험료 미납부 등이 발생되어 295명만 보험료 환급을 지원하였다고 되어 있음.

<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2025년도 추진실적 >

(단위 : 명, %)

신청	비고			
	반려 ^{주1)}	접수		
		지원	미지원 ^{주2)}	
1,921 (100.0)	213 (11.1)	1,708 (88.9)	295 (15.4)	1,413 (73.5)
◦ 접수인원(1,708명)과 비교할 때 - 지원인원(295명)은 17.3%에 해당함. - 미지원인원(1,413명)은 82.7%에 해당함.				

※ 괄호 안의 수치는 신청인원 중 구성비(%)임.

주1) 필수서류가 보완되지 않거나 고객의 요청 등으로 반려한 것임

주2) 접수인원 중 미지원인원이 발생한 것은 보험 미가입, 보험료 미납 등으로 보험료 환급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되었기 때문임(미지원인원 중 1,204명은 보험 미가입자임).

출처 : ①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1198 (2026. 1. 26.) “‘25년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

②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부, “2025년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수행 결과보고 (2026. 1), p.2~6

- 그리고 같은 방침서에는 낮은 사업 인지도로 인해 사업내용을 착오하고 지원을 신청했다가 보험에 미가입하는 사례, 보험료를 미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였다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 시행 첫해에 잠재적 수혜

112)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1198 (2026. 1. 26.) “‘25년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

113)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부, “2025년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수행 결과보고 (2026. 1), p.2~6

자에게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와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도 집행잔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소관부서와 대행기관은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원신청 단계에서도 지원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
- 넷째,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의 사업목표를 신청규모를 중심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지원규모를 기반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2025년 5월 수립한 지원계획¹¹⁴⁾에서 ▶ 동 사업의 최초 목표를 신청자 수 1,000명으로 설정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2029년까지 신청자 수 2,500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아울러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시의회에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에서도 동 사업의 추진실적을 지원자가 아닌 신청자를 중심으로 기재하면서, 동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달성목표)¹¹⁵⁾도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자 수 증대”라고 제시하였음.

< 2026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상 추진설적 및 달성목표 >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자 수 증대

2025년도	○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사업 누적 신청자 1,407명 (*25.9.30. 기준)
--------	---

※ 출처 : 민생노동국, 「2026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58

114)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6393 (2025. 5. 2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25년도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계획”

115) 서울시의 「예산편성 잠정기준」에서는 ‘달성목표’란에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2025. 7), p.105

- 그러나 사업 시행 첫해에 동 사업의 지원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일시적으로 신청자 수, 신청 건수 등 신청규모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후에도 신청규모를 기준으로 사업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방식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로 행정안전부¹¹⁶⁾와 서울시¹¹⁷⁾의 기준에서는 성과계획서 수립 시 목표치를 가급적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되, 결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산출지표와 과정지표를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¹¹⁸⁾
- 이를 감안하여 동 사업의 목표도 단순히 신청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실제 보험료 환급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수 등 사업의 1차적인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원규모를 중심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섯째, 사업내용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과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의 세부사업명을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사업명칭 부여 시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음.¹¹⁹⁾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과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은 가입대상

11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2017. 9), p.9

117)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2025. 7), p.82

118) ‘과정지표’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진도율 등), ‘산출지표’는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수료자 수, 지원자 수 등), ‘결과지표’는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수료자의 취업률·소득증가율 등)를 의미함.

119)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4. 7), p.85

보험과 환급비율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해당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자에게 기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음.

- 그러나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은 보험가입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가입자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 또는 서울시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금전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 아울러 2개 사업의 내용이 상당 부분 공통됨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명에 ‘보험 가입지원’과 ‘보험료 지원’이라는 상이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사업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도 있음.
- 따라서 2개 사업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및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환급 지원’ 등과 같이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3)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 동 사업은 에스크로시스템과 연계한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프리랜서의 미수금 발생 방지 및 프리랜서의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7천 7백만원 중 13억 3천 3백만원(90.3%)이 집행됨.

< 프리랜서경력관리시스템 예산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477	1,333	1,333	-	144	9.7
사 무 관 리 비	629	499	499	-	130	20.6
전 산 개 발 비	754	740	740	-	14	1.8
자산및물품취득비	94	94	94	-	-	-

- 동 사업은 노동법 적용이 제한되는 프리랜서의 거래 안전성 확보와 경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서 프리랜서 경력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함.
- 그 결과 2025년 4월부터 서울노동포털 내에서 에스프로 기반의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우선 개시하였으며, 이후 경력관리 기능 등을 포함한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을 구축하여 2026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도 본예산에는 사무관리비 7억 2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홍보 및 자문위원회 운영비(5천만원)과 소프트웨어 구입비(6억 7천 9백만원)가 반영되었음.
- 이후 서울시는 당초 자체 구매 예정이던 일부 상용소프트웨어를 데이터 센터 및 정부에 의해 무상 제공받게 됨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음.
- 그러나 결산 결과 실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은 3억 1천 3백만원으로, 본예산 편성액 대비 3억 6천 6백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확인됨.
- 미집행 예산 중 추경예산에 반영된 1억을 제외한 잔여분은 프리랜서 교육 콘텐츠 영상 제작, 신규 프리랜서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품 제작 등에 활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억 3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예산 집행 전망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예산 등에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동 사업은 예산 소요 감소분을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추가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은 당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사업들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의회가 심의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과는 집행 내용에 차이가 있음.
- 향후에는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내용 및 예산 사용 등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추경예산 등을 통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골목형 전통시장 건축혁신

- 동 사업¹²⁰⁾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업¹²¹⁾을 통해 전통시장 공용공간에 혁신적·독창적 디자인을 접목함으로써 공간 개선 및 관광 명소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3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한 이후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임.
- 이와 관련하여 당초 2024년도 본예산에는 ▶2023년 4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된 1기 시장인 신중양시장(중구 소재)과 통인시장(종로구 소재)에 대해 디자인 현상공모를 추진하고, ▶같은 해 9월 선정된 2기 시장인 청량리종합시장(동대문구 소재)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6억 2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러나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중 8천 3백만원(13.2%)만 지출되었고, 5억 3천 4백만원(85.1%)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 1천 1백만원(1.7%)이 발생하였는바,¹²²⁾ 명시이월이 발생한 사유는 다음과 같음.

120)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세부사업명은 ‘골목형 전통시장 디자인 등 건축혁신 추진’이었음(2025년도부터 현재와 같이 세부사업명을 변경함).

121) ‘골목형 전통시장 건축혁신’ 추진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협업사업으로 추진

○ (서울시)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설계용역 실시 등

○ (자치구) 협의체 구성·운영, 공사 추진, 현장민원 대응, 시설 유지관리 등

- 소관부서(상권활성화과)는 1기 시장에 대한 디자인 현상공모의 추진일정을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제출한 사업별설명서¹²³⁾에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2024년 12월에서야 공모 추진계획¹²⁴⁾을 수립하고 2025년 6월까지 추진함에 따라 공모관리용역비·설계용역비¹²⁵⁾·설계보상금¹²⁶⁾ 지급을 위한 시설비 4억 7천 9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아울러 2기 시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경우에도 사업별설명서에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추진함에 따라 용역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시설비 5천 5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골목형 전통시장 건축혁신’ 2024·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

(단위 : 백만원, %)

통계목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명시이월 (명시 이월률)	사고이월 (사고 이월률)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명시이월 (명시 이월률)	사고이월 (사고 이월률)	재이월 (전년도 이월액 중 재이월액 비율)	집행잔액 (불용률)
합 계	628	83 (13.2)	534 (85.1)	- (0.0)	11 (1.7)	1,317 ^{주1)}	311 (23.6)	- (0.0)	1,005 (76.3)	322 ^{주1)} (60.3)	1 (0.1)
사무관리비	22	14 (62.9)	- (0.0)	- (0.0)	8 (37.1)	8	7.9 (98.6)	- (0.0)	- (0.0)	- (0.0)	0.1 (1.4)
시설비	606	69 (11.4)	534 (88.2)	- (0.0)	3 (0.4)	1,309 ^{주1)}	303 (23.1)	- (0.0)	1,005 (76.8)	322 ^{주1)} (60.3)	1 (0.1)

※ 주1) 전년도(2024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된 5억 3천 4백만원이 포함된 것임.

주2) 전년도(2024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시설비(5억 3천 4백만원) 중 2025회계연도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다시 사고이월(재이월)된 예산으로, 당초 2024회계연도에 집행할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나, 2024회계연도부터 2026회계연도까지 총 3개 회계연도에 걸쳐 집행되고 있는 예산임.

122)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반납금 발생내역은 없음.

※ 결산서상 보조금반납금은 국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한 후 국가에 반환할 예정인 ‘미집행된 국비’를 의미함.

12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225

124)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6798 (2024. 12. 4.) “-1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디자인 및 설계 공모 추진 계획”

125) 설계공모 결과 당선작(1등)으로 선정될 경우 지급하는 설계용역비임.

126) 설계공모 결과 입상작(2등~5등)으로 선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임.

- 그리고 2025회계연도에는 전년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사업비(5억 3천 4백만원)와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비(7억 8천 3백만원)를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합산한 예산현액(13억 1천 7백만원) 중 3억 1천 1백만원(23.6%)만 지출되었고 10억 5백만원(76.3%)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 1백만원(0.1%)이 발생하였는바,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신중양시장에 대한 설계용역’의 경우 2025년 6월까지 추진된 디자인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같은 해 7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현황조사(2025. 7.~9.)·상인설명회(2025. 9.)·인허가사항에 대한 자치구(중구) 협의(2025. 10.)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어 준공기한을 당초 2025년 11월에서 2026년 3월로 연장함(2025. 11.)에 따라¹²⁷⁾ 시설비 5억 8천 9백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신중양시장에 대한 설계품질관리용역’의 경우 2025년 12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기한을 설계용역과 연계하여 2026년 3월로 설정함에 따라 시설비 1천 7백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통인시장에 대한 설계용역’의 경우 당초에는 2025년 6월까지 추진된 디자인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작품심사 결과 당선작이 없어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재공모를 추진하게 되어 2025년 12월에서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용역준공기한(2026. 6)이 도래하지 않아 시설비 3억 7천 8백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통인시장에 대한 설계품질관리용역’의 경우 2025년 12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기한을 설계용역과 연계하여 2026년 6월로 설정함

127)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14314 (2025. 11. 20.) “-신중양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설계용역 준공기한 변경(연장)추진”

에 따라 시설비 2천 1백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은 2024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24·2025회계연도 모두 집행률은 10%대에서 20%대에 그친 반면, 이월률은 70%대에서 80%대에 이르고 있음.
- 아울러 ‘신중양시장에 대한 설계용역’의 경우 전년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소요예산(5억 3천 4백만원) 중 3억 2천 2백만원이 용역 준공기한 연장(2025. 11.→2026. 3.)으로 인해 2025회계연도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다시 사고이월(재이월) 되었음에도, 동절기 중 구조안전진단 일정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사유로 2026년 7월로 준공기한을 재연장하였고,¹²⁸⁾ 이에 수반하여 설계품질관리용역도 동일한 시기(2026. 7.)로 준공기한이 연장되는 등¹²⁹⁾ 사업 추진일정이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음.

< 1기 시장 설계 관련 용역 준공기한 설정·연장 내역(2026. 6. 기준) >

구분		당초 계약		1차 변경계약		2차 변경계약	
		체결시기	준공기한	체결시기	준공기한	체결시기	준공기한
신중양 시장	설계용역	2025. 7.	<u>2025. 11.</u>	2025. 11.	<u>2026. 3.</u>	2026. 3.	<u>2026. 7.</u>
	설계품질 관리용역	2025. 12.	<u>2026. 3.</u>	2026. 3.	<u>2026. 7.</u>		
통인 시장	설계용역	2025. 12.	2026. 6.				
	설계품질 관리용역	2025. 12.	2026. 6.				

- 이는 동 사업이 자치구와 협업하여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의욕만을 앞세워 신속히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방증일 수 있어, 향후 소

128)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3985 (2026. 3. 25.) “-신중양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설계용역 준공기한 변경(연장)추진”

129)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4090 (2026. 3. 26.) “-신중양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설계품질관리용역 준공기한 변경(연장) 추진”

관부서는 회계연도 중 추진이 확실시되는 사업내용에 한정하여 사업비를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을 통해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함.

5)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 동 사업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및 홍보,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대시민 사회적경제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천 6백만원 중 7천 4백만원(97.5%)이 집행됨.

<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76	74	74	-	2	2.5
사 무 관 리 비	62	60	60	-	2	2.7
국 제 분 담 금	14	14	14	-	-	-

- 동 사업 중 국제분담금 1천 4백만 원은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lobal Social Economy Forum)의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10,000달러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비임.
-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014년 설립된 국제협의체로 88개 회원(28개 지방정부, 60개 시민사회 및 네트워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 및 포럼 행사 등을 통해 회원 간 정책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운영개요 >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1조(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등)
- ☐ 국제사회적 경제협의체 개요(Global Social Economy Forum)
 - 설립목적 : 민간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방 정부간 국제적 연대를 통해 사회적 경제 체계적 발전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설립연도 : '14. 11. 19.
 - 의장도시 : 프랑스 보르도市('21.11월 ~)
 - 회 원 : 총 88개 (28개 지방정부, 60개 시민사회 및 네트워크)
 - 사업예산 : 14백만원 (\$10,000/연회비 납부)
- ☐ 운영내용
 - 포럼 : 격년 개최(개최지 선정하여 온·오프라인 진행, 워크숍, 네트워킹 등)
 - 총회 : 매년 개최(온라인, 회원 참석, 회원승인, 사업추진 내용 공유 등)
 - 분기별 운영위원회, 대륙별 정책대화 개최(비정기) 등

- 서울시는 협의체 창립 이후 2021년까지 의장도시로서 의제 설정 및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이후에는 정회원으로 협의체에 소속되어 있음.
- 최근 서울시는 주로 정관 개정, 재무보고서 승인 등 협의체 운영 현황을 논의하는 정기총회 및 대륙별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참여현황 >

연도	회 의 명	기간 및 장소	참여방식	내 용
2023	협의체 정기총회	2023.5.28.	온라인	- 정관 개정(안) 발표 등
2024	협의체 아시아회의	2024.5.21.		- 협의체 2024년~2025년 글로벌 로드맵 및 액션플랜 공유 - 협의체 아시아 SSE 청년 허브소개 등
	협의체 정기총회	2024.6.11.		- 2023년 활동 보고서 및 재무보고서 승인 - 대륙별 로드맵 발표 등
2025	협의체 정기총회	2025.5.28		- 정관 개정(안) 발표 등
	협의체 아시아회의	2025.10.29 ~ 10.31.		- 사회적 경제 분야 국제협력, 상호학습, 정책의제 확산을 위해 격년으로 대륙별 순회 방식의 포럼

- 이러한 참여는 협의체 내의 주요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정책 기획이나 공동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동 협의체 참여가 단순한 회원 자격 유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교류와 국제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6)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 서울시는 1985년 개장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¹³⁰⁾의 시설 노후화·물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서울시농수산물공사를 통해 2009년부터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추진해 오고 있음.
- 동 사업은 ▶정부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국비(국고 부담분) 30%와 ▶같은 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최종적으로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상환하는 지방채(서울시농수산물공사 부담분)¹³¹⁾ 40%, ▶시비(서울시 부담분) 30%를 매칭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시설현대화 추진 중에도 유통인들의 영업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순환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1단계와 2단계 사업은 각각 2015년 2월과 2024년 11월에 건축공사

130)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5년 6월 서울시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 따라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음.

131) 정부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부터 서울시가 차입하여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로 이관하는 정부자금채(지방채)로,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는 서울시로부터 이관받은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차입조건(7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고정금리 3%)에 따라 상환을 부담함.

※ 당초에는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에서 직접 차입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기금의 용자 지원근거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에서 “개설자”(서울시장)에 대해 용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용자가 불가능함에 따라,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한 후 이관하여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에서 집행·상환하고 있는 것임.

가 완료되어 상인 입주 후 영업이 재개되었음.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09년~2031년
- 총사업비 : 1조 2,769억원 (2026년 4월 제51차 조정결과 기준)
 - (소매권역) 2,795억원, (도매권역) 9,974억원
 - (기 집행액) 4,286억원, (향후 집행) 8,483억원
- 재원조달 : 국비 30%(정부 부담 3,831억원), 시비 30%(서울시 부담 3,831억원), 지방채 40%(공사 자부담 5,107억원)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51만 3,159㎡(소매권역 21만 958㎡, 도매권역 30만 2,201㎡)
- 사업방식 : 순환재건축에 따른 단계별 개발
 - 상인 이전→ 시설 철거·건축 → 타 상인 이전·입주 → 이전으로 빈 곳 철거·건축 (반복)

구 분	1단계 (소매권·가락물)	2단계 (도매권역 1공구)	3단계 (도매권역 2공구)	4단계 (도매권역 3공구)	5단계 (도매권역 4공구)
사업내용	판매동, 업무동	채소2동	채소1동, 수산동	과일동, 환경동	공동배송장
연 면 적	21만 958㎡	5만 7,067㎡	15만 326㎡	9만 4,118㎡	690㎡
층 수	판매동 지하 3층 지상3층 업무동 지상 18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3층
사업기간	2009년~2016년	2017년~2024년	2022년~2027년	2028년~2030년	2031년
사 업 비	2,795억원	1,348억원	4,826억원	3,253억원	547억원

- 그간의 추진경위 및 경과
 - 1999. ~ 2001. 가락시장 이전 검토(정책 미반영, 부지확보 불가로 중단)
 - 2004. 12. 시설현대화사업계획 서울시장 방침 수립
 - 2005. 3.~8. 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 타당성 검증
 - 2006. 9.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2007년도 정부예산안 확정
 - 2006. 10. 시설현대화사업 서울시장 방침 재수립
 - 2006. 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락시장현대화사업 예산 삭감(사유: 이전 검토 필요)
 - 2008. 2.~6. 서울시 시민위원회 구성·운영(시설현대화 이전·재건축 검토)
 - 2008. 6. 농림수산식품부 2009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확정
 - 2008. 9.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재건축) 서울시장 방침 수립
 - 2008. 12. 시설현대화사업 국비·지방비 예산 반영 확정
 - 2009. 8.~12.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본계획 보완 및 총사업비 협의·조정
 - 2010. 3.~12.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 2011. 6.~2015. 2. 1단계 건축공사
 - 2014. 6.~2016. 4. 1단계 연결통로 및 환기구 이설공사
 - 2016. 5.~12. 도매권역 건설기본계획 보완 조정안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조정
 - 2017. 3.~2018. 4. 2단계(채소2동) 기본설계
 - 2018. 8. 기획재정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2~5단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정
 - 2018. 9.~2019. 6.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2019. 8.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원안인결
 - 2019. 9.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조정 완료
 - 2019. 7.~2020. 10. 2단계(채소2동) 실시설계

- 2021. 2.~2024. 11. 2단계(채소2동) 건축공사
- 2021. 12. 3단계(채소1동, 수산동) 설계공모 공고
- 2022. 3.~2023. 4. 3단계(채소1동, 수산동) 기본설계
- 2023. 5.~2024. 8. 3단계(채소1동, 수산동) 기본설계 결과 정부협의(조달청·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 2023. 2023. 10
- 2024. 9. 기획재정부 사업계획(3~5단계) 적정성 재검토 결정
- 2025. 1.~2025. 9.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2025. 10.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원안의결
- 2025. 11.~2026. 4.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협의·조정

◦ 향후 계획

- 3단계(채소1동, 수산동) 실시설계, 정부협의 및 공사발주(~2026. 12.)
- 4단계(과일동) 유통인 의견수렴 및 최종 배치방안 마련(~2026. 12.)

-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3단계 사업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기본설계를 추진한 후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기본설계 결과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였으나, ▶2024년 9월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2¹³²⁾에 따라 적정 사업규모·총사업비·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절차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 2025회계연도의 경우 동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국비(18억원)·지방채(24억원)·시비(18억원)를 포함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재정사업 심의,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한 협의·조정이 진행됨에 따라¹³³⁾ 사업 추진이

132) 구(舊)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668호, 2023. 9. 20. 일부개정·시행)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은 제49조제2항 각 호 및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 단서에 해당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현행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예산처 훈령 제59호, 2026. 5. 11. 일부개정·시행)은 부처명 변경(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 등을 반영하여 내용 일부가 수정되었으나, 주요 내용은 동일함.

133)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3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총사업비의 조정을 다시 요구하여야 함.

지연되었으며, 그 결과 세출결산상 예산현액(60억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¹³⁴⁾

-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농수산물통과)는 회계연도 중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국비는 미교부, 지방채는 미발행되는 상황에서도 2025년 5월과 8월에 제출된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을 요청하지 않았음.
- 이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조정이 완료되어 국비와 지방채가 회계연도 종료시점(2025. 12. 31.)까지 수납되기만 하면 ▶소관부서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사업비(60억원)를 전액 교부함으로써 지출을 완료할 수 있고,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해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더라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¹³⁵⁾에 따라 건설개량이월함으로써 집행기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사안으로 이해됨.
- 그러나 결국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협의·조정이 완료되지 않아 예산현액(60억원) 전액이 불용된바, 2018년 8월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여 같은 해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재검토를 실시한 종전 사례에서는 2018년 8월 시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수납되지 않을 국비 및 지방채와 집행이 어려운 세출재원을 감액조정한 바 있는 만큼, 2025회계연도에도 실제 수납될 세입규모와 집행가능한 세출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감추경을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임.

134) 세입결산상으로는 기 편성된 국비(18억원)는 미교부, 지방채(24억원)는 미발행되어 모두 수납되지 않았음.

135)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2024), p.106~108

※ 지방공기업의 부서장은 사장 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자본예산을 다음 연도로 건설개량이월할 수 있음.

< 최근 10년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세출결산 결과(2016~2025)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조직명) ^{주1)}	본예산	추경예산을 통한 증감조정액	최종예산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보조금 반납금 (반납금 비율)	집행잔액 (불용률)
2016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2,181	-	2,181	2,181	2,181 (100.0)	- (0.0)	- (0.0)	- (0.0)
2017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5,613	-	5,613.1 ^{주2)}	5,613.1	5,613 (100.0)	- (0.0)	- (0.0)	0.1 (0.0)
2018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8,692	△3,477 ^{주3)}	5,215	5,215	5,215 (100.0)	- (0.0)	- (0.0)	- (0.0)
2019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예산 미편성							
2020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5,766	-	5,766	5,766	5,764 (100.0)	- (0.0)	- (0.0)	2 (0.0)
2021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457	-	20,457	20,457	17,844 (87.2)	- (0.0)	- (0.0)	2,613 (12.8)
2022 (노동공정성장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50,684	-	50,684	50,684	50,684 (100.0)	- (0.0)	- (0.0)	- (0.0)
2023 (노동공정성장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64,490	-	64,490	64,490	64,324 (99.7)	- (0.0)	- (0.0)	166 (0.3)
2024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	17,000	-	17,000	17,000	17,000 (100.0)	- (0.0)	- (0.0)	- (0.0)
2025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	6,000	-	6,000	6,000	- (0.0)	- (0.0)	- (0.0)	6,000 (100.0)

※ 주1) ‘조직명’은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임.

주2) 2017년도 본예산에는 56억 1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최종예산에는 2017년 11월 간주처리한 국비 1십만원이 추가된 것임.

주3) 2018년 8월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비가 미교부되고 공사일정도 변경되어 감추경을 추진한 것으로, 감추경된 예산(34억 7천 7백만원) 중에는 국비 10억 4천 3백만원과 지방채 13억 9천 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아울러 동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에도 국비(47억 1천만원) · 지방채(62억 8천만원) · 시비(47억 1천만원)를 포함한 157억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 · 조정이 완료(2026. 4.)되기 전에 반영된 것으로,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는 해당 재원을 활용하여 3단계 사업의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나,¹³⁶⁾ 2026년 6월 현재까지 국비와 지방채가 수납되지 않고 있다는

136)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 설계관리팀-114 (2026. 1. 27.)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26년 사업시행계획서 제출

점을 고려하면 관련 세입의 수납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그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조정 등으로 지연되어 온 시설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관부서는 기 편성된 국비가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회계연도 중 관련 세입의 수납규모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을 증·감 조정함으로써 실제 추진내용과 예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동 사업은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등에 대한 협의·조정 결과 ▶사업기간은 변동이 없으며 ▶총사업비는 9,939억 8천 7백만원에서 1조 2,768억 8천만원(2,828억 9천 3백만원 증액)으로 변경되었음.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등 협의·조정에 따른 변경 내역 >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사업기간	2009년~2031년	(조정 전과 같음)
총사업비	9,939억 8천 7백만원	1조 2,768억 8천만원 ※ 조정 전 대비 28.5%(2,828억 9천 3백만원) 증액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1850 (2026. 4. 23.)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총사업비 협의조정 결과 통보” 재구성

- 이에 따라 서울시(총사업비의 30% 부담)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총사업비의 40%)의 부담액도 증가되었으며, 특히 차입의 형태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재정구조를 경직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자금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및 채무관리 방안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Ⅳ.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총괄

-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으로, 1개 기금 내 2개의 계정을 운용하고 있음.
-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의 최종 운용규모¹³⁷⁾는 4,710억 5천 4백만원으로, 계획현액 4,207억 2천 3백만원 대비 503억 3천 1백만원(12.0%) 증가함.

<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입·지출 계획		수입·지출 계획현액 ¹³⁸⁾ ㉞	결산 ㉟	결산율 (㉟/㉞)
	당초	수정			
합 계	335,031	420,723	420,723	471,054	112.0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융 자 계 정	294,420	377,487	377,487	427,093	113.1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사 회 적 경 제 계 정	40,611	43,236	43,236	43,961	101.7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가. 기금의 개요 및 조성·운용 현황

1) 기금 개요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¹³⁹⁾,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137) 당해연도에 실질적으로 운용(수입·지출)되는 규모(유량)

138) 수입·지출계획현액은 당해연도 수입·지출계획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산한 규모로,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없어 당해연도 수입·지출계획과 수입·지출계획현액이 동일함.

139)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65년에 설치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분리하고, 2023년에는 사회투자기금을 승계한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하면서 총 3개의 계정이 운용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정 분류 >

계 정	용 도 ¹⁴⁰⁾	소 관 부 서
융 자 계 정	·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융자 ·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 기금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	민 생 노 동 국 소 상 공 인 정 책 과
투 자 계 정	·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경 제 실 창 업 정 책 과
사회적경제계 정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민 생 노 동 국 공 정 경 제 과

- 이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이하 “융자계정”)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직접융자와 시중은행 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수행하고 있음.

2) 조성 현황

- 융자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융자금 회수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2025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5억 7천 7백만원(△1.6%)이 감소한 1,556억 7천 1백만원임.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40)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2025년도 융자계정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2025년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158,248	△2,577	268,845	271,422	155,671

3) 운용 현황

- 2025년도 융자계정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4,270억 9천 3백만원으로, 수입·지출계획 3,774억 8천 7백만원 대비 496억 6백만원(13.1%)이 증가함.

< 2025년도 융자계정 수입·지출 결산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계획㉠	결산㉡	증감㉢=㉠-㉡	구 분	계획㉠	결산㉡	증감㉢=㉠-㉡
계	377,487	427,093	49,606	계	377,487	427,093	49,606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167,750	215,137	50,387	융 자 성 사 업 비	200,000	187,926	△12,074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3,789	3,008	△781	비 용 자 성 사 업 비	88,804	71,081	△17,723
기타회계전입금	50,700	50,700	-	기 본 경 비	5	2	△3
예 치 금 회 수	158,248	158,248	-	예 치 금	76,258	155,671	79,413
				예 수 금 원리금상환	12,420	12,413	△7

- 수입은 ▶ 융자금 회수수입(이자 포함) 2,151억 3천 7백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억 8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07억원, ▶예치금 회수 1,582억 4천 8백만원이 수납됨.

- 지출은 ▶용자성 사업비 1,879억 2천 6백만원, ▶비용자성 사업비 710억 8천 1백만원, ▶기본경비 2백만원, ▶예치금 1,556억 7천 1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4억 1천 3백만원이 집행됨.
- 한편 용자계정은 2025년도 수입·지출 계획을 당초 2,942억 2천만원으로 수립하였으나, 2회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3,774억 8천 7백만원 (28.2%)으로 수입·지출 계획을 변경함.

< 용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

변경일	변경내역	변경사유
2025.6.27.	○수입계획 : (당초)294,420백만원 → (변경) 377,487백만원 - 예치금회수 : 85,881백만원 → 158,248백만원(증72,367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 40,000백만원 → 50,700백만원(증10,700백만원) ○지출계획 : (당초)294,420백만원 → (변경) 377,487백만원 - 예치금 : 4,294백만원 → 76,662백만원(증72,368백만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 86,200백만원 → 86,900백만원 (증700백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 10,000백만원 신설	2024년 결산결과 및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2025.10.14.	○수입계획 : 377,487백만원(변동없음) ¹⁴¹⁾ ○지출계획 : 377,487백만원(변동없음) - 기금업무대행수수료 : 1,200백만원 → 1,603백만원(증403백만원) - 자금시스템유지보수 : 301.3백만원 → 301.6백만원(증330천원) - 예치금 : 76,661백만원 → 76,258백만원(감403백만원)	기금업무대행 수수료 부족분 및 자금통합관리 시스템 서버 구매 비용 증액

나. 검토의견

1) 기금 총괄 검토

-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용자금 미회수채권을 제외한 회계연도말 기준의 실질적 기금 규모로서,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 수준과 향후 기금 운용 여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음.

141) 지출계획 내 변동으로 수입·지출계획 총액 변동 없음

- 최근 5년간 융자계정의 연도말 조성액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책자금 공급 확대에 따라 202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융자금 회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는바,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과 정책자금 수요를 고려한 적정 조성규모 관리가 필요함.

< 최근 5년간 융자계정 연도말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연도말 조성액	144,235	125,107	126,709	158,248	155,671

- 그리고 융자계정은 3,774억 8천 7백만원을 수입계획하였으나 결산 결과 실제수납액은 4,270억 9천 3백만원으로, 수입계획현액 대비 496억 6백만원 (13.1%)이 증가함.

< 2025년도 융자계정 수입결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수입과목(목)	수입계획액		수입계획현액 ㉠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	증감	
	당초	수정				증감액 ㉡-㉠-㉠	증감률 ㉡/㉠
계	294,420	377,487	377,487	427,093	427,093	49,606	13.1
공공예금 이자수입	3,789	3,789	3,789	3,008	3,008	△781	△20.6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9,366	9,336	9,336	11,507	11,507	2,141	22.9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55,384	155,384	155,384	203,630	203,630	48,246	31.0
예치금회수	85,881	158,248	158,248	158,248	158,248	-	-
기타회계 전입금	40,000	50,700	50,700	50,700	50,700	-	-

-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직접융자금의 조기상환 증가에 따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수입계획현액 대비 482억 4천 6백만원 초과 수납됨.

-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¹⁴²⁾에서는 융자금 회수 추계 시 2024년도 말 추정 융자잔액을 기준으로 정기상환 금액 뿐 아니라 만기 도래 전 조기상환 금액까지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2025년에는 회수수입 추계에는 조기상환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31.0% 초과 수납됨.
- 이와 관련하여 민생노동국은 2026년도 수입계획 수립 시 최근 5년간의 조기상환 실적을 반영하였으나, 2025년도 결산에서 회수수입이 계획액을 크게 상회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상환행태를 반영한 추계방식의 적용이 보다 조기 반영될 필요가 있었음.
- 따라서 향후에는 중도상환 실적 및 추세 등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93억 3천 6백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115억 7백만원이 수납되어 수입계획현액 대비 21억 4천 1백만원이 초과 수납됨.
- 이에 대해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자료¹⁴³⁾에서는 융자금 조기상환 증가의 영향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고정금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직접융자는 일반적으로 조기상환이 증가할 경우 융자 실행기간이 단축되어 이자수입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2025년도 결산과 같이 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이 모두 계획액을

142) 행정안전부 예규 제294호(2024. 7. 30. 시행)

143) '26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자료(2026.2.24.)

초과하여 증가한 현상은 조기상환의 증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자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가분석이 필요함.

- 한편 용자계정은 3,774억 8천 7백만원을 지출계획하였으나 결산 결과 지출액은 4,270억 9천 3백만원으로, 지출계획현액 대비 496억 6백만원 (13.1%)이 증가됨.

< 2025년도 용자계정 지출결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명	세부사업명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증감	
		당초	수정	㉠	㉡	증감액 ㉡-㉠-㉢	증감율 ㉡/㉠
	계	294,420	377,487	377,487	427,093	49,606	13.1
중소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 직접융자	200,000	200,000	200,000	187,926	△12,074	△6.0
	시중은행협력 자금 지원	86,200	86,900	86,900	69,214	△17,686	△20.4
	자금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301	302	302	299	△3	△1.0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1,200	1,602	1,602	1,568	△34	△2.1
	통화보장인정자금 (통합계정)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420	12,420	12,420	12,413	△7	△0.3
재무활동	예치금	4,294	76,258	76,258	155,671	79,413	104.1
행정운영 경비	기금관리비	5	5	5	2	△3	△60

- 2025년에는 직접융자를 위해 2천억원을 편성하여 1,879억 2천 6백만원 지출되었으며,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은 869억원을 편성하여 692억 1천 4백만원이 지출됨.
- 특히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당해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용자잔액 등을 포함하여 추계·편성되는 구조로, 실제 집행액은 과거 용자의 상환 진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그 결과 지난 연도 실행분에 대한 이차보전금 집행이 추계 대비 감소하면서 당초 지출계획 대비 약 20.4% 수준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융자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으로부터 총 2,400억원을 융자받아 2023년부터는 원금 100억원을 매년 상환함으로써 기금의 채무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상환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연도별 상환액	원금 상환	-	-	10,000	10,000	10,000
	이자 상환	2,628	2,640	2,640	2,537	2,413
↓						
상환잔액		240,000	240,000	230,000	220,000	210,000

- 융자계정은 통합계정과의 상호약정에 따라 2033년 말까지 융자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연도별 상환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등 상환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융자계정 운용의 지속성·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2) 중소기업육성자금 검토

- 융자계정은 서울시의 직접융자와 시중은행이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차차액을 지원하는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2조 4,200억원을 계획하였으며, 실제 융자 추천은 2조 4,653억원으로 계획 대비 101.9%가 이루어짐

〈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

(단위: 건, 억원)

구 분	계 획 (A)	융자추천			융자(대출)실행		
		건수	추천금액 (B)	추천율 (B/A)	건수	실행금액 (C)	실행률 (C/A)
합 계	24,200	91,586	24,653	101.9%	90,455	24,229	100.1%
직접융자금	2,000	5,012	1,925	96.2%	4,889	1,859	92.9%
시설자금	120	16	104	86.9%	13	77	64.3%
성장기반자금	880	1,783	871	99.0%	1,752	855	97.1%
긴급자영업자금	850	3,089	850	100.0%	3,000	827	97.3%
혁신형기업도약자금	50	78	50	100.0%	78	50	100.0%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46	50	49.5%	46	50	49.5%
시중은행협력자금	18,200	46,001	18,671	102.6%	44,993	18,313	100.6%
경제활성화자금	10,200	23,930	10,717	105.1%	23,437	10,518	103.1%
포용금융자금	200	960	200	99.9%	922	194	96.8%
창업기업자금	1,000	4,283	1,016	101.6%	4,160	994	99.4%
신속드림자금	700	2,836	654	93.4%	2,794	643	91.9%
비상경제회복자금	1,000	2,741	999	99.9%	2,658	970	97.0%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100	50	46	45.8%	49	45	45.3%
서울배달상생자금	200	359	206	102.8%	355	204	102.0%
희망동행자금	2,300	7,080	2,317	100.8%	6,915	2,264	98.4%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2,250	2,909	2,250	100.0%	2,862	2,218	98.6%
ESG자금	100	260	100	100.0%	257	99	99.1%
재기지원자금	150	593	166	110.8%	584	164	109.3%
안심통장	4,000	40,573	4,057	101.4%	40,573	4,057	101.4%

-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융자 추천율이 90% 이하인 자금은 ‘시설자금’ (86.9%), ‘재해중소기업자금’ (49.5%),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45.8%)임.
- 먼저 ‘시설자금’ 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 생산설비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경기 둔화에 따른 제조업 및 스타트업 투자 위축, 지식산업센터 입주수요 감소 등으로 자금 수요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자금 수요 부진에 대응하여 금리를 3.3%에서 2.8%로 인하하였으나, 금리 인하 조치가 10월에 이루어지면서 융자확대 효과가 제한적이었음.

- 특히 추천률(86.9%) 대비 실제 실행률(64.3%)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추천 이후 용자 실행 단계에서 차주의 이탈이 상당 부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에는 용자 실행 저해 요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변화된 투자 수요를 반영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해중소기업자금’은 재난·재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수요가 결정되는 구조적 특성상 연도별 추천 실적이 낮거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자금임.
- 다음으로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회계연도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0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이후 실적 부진으로 지원 규모를 100억원으로 감조정하였음에도 실제 실행액은 45억 3천만원으로 계획 대비 45.3%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동 자금은 자금 신설 당시¹⁴⁴⁾ 정부의 유사 정책자금 운영, 2024년 이커머스 입점피해회복자금¹⁴⁵⁾과 같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여 회계연도 중 신설된 자금의 집행 부진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실적 저조 가능성이 우려되었으며, 실제로 낮은 추천률 및 실행률로 이어지면서 우려가 현실화된 사례라 할 수 있음.
- 한편, 2025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실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¹⁴⁶⁾ 전체금액의 92.0%가 소상공인에게 공급되어, 동 자금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설계·운용되고 있음이 확인됨.

144) 2025년도 제1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2025.6.)

145)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은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2024년에 조성된 자금으로 350억원을 지원계획하였으나, 실제 추천 실적은 18억원(5.3%)에 그침.

146) 안심통장은 사업 구조와 지원 방식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직접용자와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분석으로 한정함.

〈 기업규모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 〉

(단위 : 건, 억원)

기업규모	건수	비중	금액	비중
소상공인	49,239	96.5%	18,947	92.0%
소기업	1,279	2.5%	1,056	5.1%
중기업	495	1.0%	593	2.9%
합 계	51,013	100.0%	20,596	100.0%

- 다만 신용평점 구간별 지원 현황을 보면, NICE 신용평점 1~4구간이 전체 금액의 82.1%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량 차주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있음.

〈 신용등급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

NICE 신용평점	건수(건)	금액(억원)	NICE 신용평점	건수(건)	금액(억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구간 (965~1,000)	10,093 19.8%	4,789 23.2%	7구간 (710~754)	2,418 4.7%	623 3.0%
2구간 (925~964)	11,771 23.1%	5,386 26.1%	8구간 (625~709)	870 1.7%	189 0.9%
3구간 (880~924)	9,228 18.1%	4,002 19.4%	9구간 (345~624)	54 0.1%	13 0.1%
4구간 (830~879)	7,341 14.4%	2,753 13.4%	10구간 (344 이하)	8 0.0%	2 0.0%
5구간 (790~829)	5,709 11.2%	1,787 8.7%	기타 ¹⁴⁷⁾	8 0.0%	52 0.3%
6구간 (755~789)	3,513 6.9%	1,000 4.9%	합 계	51,053 100.0%	20,596 100.0%

- 이는 정책자금의 안정적 회수 및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민간 금융시장 보완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접근성 제고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147) 법인기업에 대한 자금 단독 지원건으로, 대표이사 개인신용평점 확인 불가

있다고 사료됨.

- 마지막으로 안심통장은 개인별 1천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중은행의 자금으로 용자를 실행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임.
- 동 사업은 용자계정의 재원이 직접 투입되지는 않으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체계 내에서 특별보증 형태로 관리되고 있음.
- 2025년에 개설된 안심통장은 4,057억원의 마이너스 한도가 부여되었고, 실제 용자사용금액은 3,839억 2천 2백만원으로 나타나 한도 부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단기 자금수요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심통장 실제 용자사용 관련 내역 >

(2026.4.30. 기준, 단위 : 백만원, 건)

한도액	용자사용금액(A)	유효계좌 건수(B)	평균 용자사용금액(B/A)
405,700	383,922	38,934	7.8

3.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가. 기금의 개요 및 조성·운용 현황

1) 기금 개요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이하 “사회적경제계정”)은 사회투자기금

(이하 “사투기금”)을 승계하여 2023년에 신설된 것으로,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됨.

- 2012년부터 조성된 사투기금은 당초 민간위탁을 통해 운용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2015.7.24.)으로 기금의 위탁운용이 금지¹⁴⁸⁾되면서 2017년부터는 수행기관을 통한 운영으로 그 방식을 변경함.
- 이에 따라 서울시가 사회적금융기관인 수행기관에 무이자로 융자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 3% 이내의 금리로 재융자하는 구조로 운영됨.
- 그러나 수행기관을 통한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 업체 및 회원사 대상 재융자,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제척·회피 의무 소홀, ▶중복 융자 및 기업당 연간 융자한도 초과, ▶융자 수행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2022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감사¹⁴⁹⁾에서 지적됨.
- 이에 기금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나, 보증료 부담을 이유¹⁵⁰⁾로 응모기관이 부재하여 융자사업이 추진되지 못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사투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으로 통·폐합하고, 2023년부터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행하여 융자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체계를 변경됨.

14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재개정(2021.1.5.)에 따라 현재에는 다시 민간위탁이 가능함.

149)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실태(2022)

150) 10억원을 5년간 융자시 수행기관이 지급해야 하는 보증료는 약 6천만원으로, 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융자하여 얻는 이자수입(연간 약 2%)에 비해 보증료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기금 운용 방식 개선내역 >

① 민간위탁 운영 ((재)한국사회투자, '13.~'16년)	▶ 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
↓	
② 市 직영 (수행기관 공모, '17.~'22년)	▶ 수행기관(사회적금융기관) 공개모집을 통하여 市는 수행기관에 용자(0%)하고 수행기관은 사회적기업에 재용자(3% 이내)
↓	
③ 대행 운영 (서울신용보증재단, '23년~)	▶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용자 실행

2) 조성 현황

- 사회적경제계정은 민간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9억 9천 2백만
원이 증가한 618억 6천 9백만원임.

< 2025년도 사회적경제계정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2025년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59,877	1,992	14,084	12,092	61,869

3) 운용 현황

- 2025년도 수입·지출규모는 439억 6천 1백만원으로, 당초 계획 432억 3
천 6백만원 대비 7억 2천 5백만원(1.7%)이 증가함.

< 2025년도 사회적경제계정 수입·지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계획 ㉠	결산㉡	증감 ㉢-㉠	구 분	계획 ㉠	결산㉡	증감 ㉢-㉠
계	43,236	43,961	725	계	43,236	43,961	725
융 자 금 수 (이자포함)	10,996	11,288	292	융 자 성 사 업	6,000	6,000	-
기 타 이 자 수 입	-	267	267	비 용 자 성 사 업	6,152	6,085	-67
기 타 수 입 (투자사업)	-	326	326	기 본 경 비	10	7	-3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1,112	1,191	79	예 치 금	21,074	21,869	795
예 탁 금 이 자 수 입	1,251	1,012	-239	예 탁 금	10,000	10,000	-
예 치 금 회 수	29,877	29,877	-				

- 수입은 ▶융자금 회수(이자 포함) 112억 8천 8백만원, ▶기타이자수입 2억 6천 7백만원, ▶기타사업수입 3억 2천 6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9천 1백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0억 1천 2백만원, ▶예치금 회수 298억 7천 7백만원이 수납됨.
- 지출은 ▶융자성 사업 60억원, ▶비용자성사업 60억 8천 5백만원, ▶기본경비 7백만원, ▶예치금 218억 6천 9백만원, ▶예탁금 1백억원임.
- 한편 사회적경제계정은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1차례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 범위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보임.

< 사회적경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

변경일자	변경내역	변경사유
2025. 6. 27.	○ 수입계획 : (당초)40,611백만원 → (변경)43,236백만원 - 예치금회수수입 변경: 27,252백만원 → 29,877백만원(증2,625백만원) ○ 지출계획 : (당초)40,611백만원 → (변경)43,236백만원 - 예치금 : 18,449백만원 → 21,074백만원(증2,625백만원)	2024년 결산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 반영

나. 검토의견

1) 기금 총괄 검토

- 2025년도말 사회적경제계정 조성액은 618억 6천 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9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투기금이 사회적경제계정으로 개편된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사회적경제계정 연도말 조성액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舊) 사회투자기금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	37,975	32,757	22,857	9,926	12,520	8,881	13,217	15,742	27,206	39,275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50,693	59,877	61,869

- 이는 신규 용자 지원 규모보다 기존 용자금 회수 규모가 보다 큰 것에서 기인하며 2025년도말 기준 618억 6천 9백만원이 예치금(218억 6천 9백만원) 및 예탁금(400억원)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
- 향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 신규 금융사업 도입 또는 정책환경 변화 등에 대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당 규모의 재원이 장기간 여유자금으로 적립될 경우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사회적경제계정의 재원 규모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활용계획 및 정책목표를 구체화하여 재원이 단순 적립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정책목적 달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적경제계정은 2025년도에 432억 3천 6백만원을 수입계획하였으나 439억 6천 1백만원을 실제수납하여 수입계획현액 대비 7억 2천 5백만원 (1.7%)이 초과수납됨.

< 사회적경제계정 수입결산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수입과목(목)	수입계획액		수입계획 현액 ㉠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	증감	
	당초	수정				증감액 ㉡=㉡-㉠	증감률 ㉡/㉠
계	40,611	43,236	43,236	49,250	43,961	725	1.7
기타사업수입	-	-	-	326	326	326	-
공공예금이자수입	1,112	1,112	1,112	1,191	1,191	79	7.1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23	123	123	134	134	11	9.2
기타이자수입	-	-	-	1,271	267	267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0,873	10,873	10,873	15,439	11,154	281	2.6
예치금회수	27,252	29,877	29,877	29,877	29,877	-	0.0
예탁금이자수입	1,251	1,251	1,251	1,012	1,012	△239	△19.1

- 먼저 기타사업수입은 임팩트펀드 제1호의 출자금 배분에 따른 수입으로, 당초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3억 2천 6백만원의 수납됨.
- 임팩트펀드 제1호의 운용기간이 2026년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투자금 회수에 따른 출자금 배분 규모가 기금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산의 회수 실적 및 잔여 투자자산의 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타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각각 10억 4백만원, 42억 8천 5백만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과거 사투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채권(40억 4천만원)의 원금 및 연체이자 미수납된 것으로 채권별 회수 가능성 및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적경제계정은 432억 3천 6백만원을 지출계획하였으나 439억 6천 1백만원을 집행하여 지출계획현액 대비 7억 2천 5백만원(1.7%) 초과 집행됨.

< 사회적경제계정 지출결산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출계획액		지출계획 현액 (라)	결산액 (지출액) (마)	증감	
			당초	수정			증감액 (바)=(마)-(라)	증감률 (바)/(라)
계			40,611	43,236	43,236	43,961	725	1.7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코로나19 피해 기업 이차보전	이차보전금	130	130	130	67	△63	△48.5
	사회적경제 기업 투융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	7	7	5	△2	△14.4
		민간융자금	6,000	6,000	6,000	6,000	-	-
		출자금	6,000	6,000	6,000	6,000	-	-
	채권 및 기타 관리비	사무관리비	15	15	15	13	△2	△13.7
재무활동	여유자금 예치	일반예치금	18,449	21,074	21,074	21,869	795	3.8
	통합재정안정화기 금 예치	예탁금	10,000	10,000	10,000	10,000	-	-
행정운영 경비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	10	10	10	7	△3	△30.0

- 지출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 등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수입에서 실제 수납이 계획을 초과함에 따라 여유자금 예치는 계획현액 210억 7천 4백만원 대비 218억 6천 9백만원이 예치되어 7억 9천 5백만원(3.8%) 증가하였음.

2) 사업별 검토

- 사회적경제계정에서 재무활동과 행정경비를 제외한 세부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 ‘채권 및 기타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음,
- 다만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사업 내 융자와 투자사업,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이 포함되는 바, 이하에서는 사업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융자성 사업과 비용자성 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사업 성격에 따른 사회적경제계정 사업 분류 및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업 구분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지출계획 현액 ㉠	지출액 ㉡	집행률 ㉡/㉠
합계				12,152	12,085	99.5
융자성 사업				6,000	6,000	100
	사회적경제 기업 투융자	민간융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6,000	6,000	100
비용 자성 사업				6,152	6,085	98.9
	사회적경제 기업 투융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규 융자지원 평가 수수료	7	5	85.6
		출자금	사회적경제기업 투자를 위한 임팩트 펀드 조성	6,000	6,000	100
	코로나19 피해 기업 이차보전	이차보전금	수행기관(사회적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 후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액보전	130	67	51.5
	채권 및 기타 관리비	사무관리비	법률업무 대행수수료, 법률자문수당 등	15	13	86.3

㉠ 융자성 사업

- 먼저 사회적경제계정 융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에는 편성된 6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총 68개 기업에 융자를 실행함.

<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계정 융자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

연도	계획 ㉠	융자(대출)추천			융자(대출)실행		
		추천건수	추천금액 ㉡	추천율 ㉡/㉠	실행건수	실행금액 ㉢	실행률 ㉢/㉡
2023년도	5,000	29	1,790	35.80	29	1,790	35.80
2024년도	5,000	42	3,524	70.48	40	3,454	69.08
2025년도	6,000	70	6,150	102.50	68	6,000	100.00

- 동 사업은 사회적경제계정 개편 이후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됨에 따라 초기에는 실적이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2024년부터 융자금리를 연 2.0%에서 1.75%로 인하하고 업체별 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융자 실행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리고 현재까지 보증사고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는 1억 4천 1백만원(4건)으로 나타나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서 부실이 관리되고 있음.
- 다만 실행된 융자금의 대부분이 아직 상환 중에 있고 융자사업의 특성상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에도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비융자성 사업

- 투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4호 및 제5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출자금 60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됨.

< 서울시 출자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개요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조성연도)	조성총액 (출자잔액)		투자평가액		수익률	서울 소재 기업 투자 내역		운용기간
		서울시 출자액 (출자잔액)		서울시 투자평가액		투자 기업 수	투자액	
임팩트 1호 (2018년)	14,500 (9,769)	1,000 (674)	23,136	1,596	159.56	6	5,399	'18년~'26년
임팩트 2호 (2019년)	15,000 (15,000)	1,000 (1,000)	15,294	1,020	101.96	6	6,190	'19년~'27년
임팩트 3호 (2020년)	30,000 (29,310)	1,000 (977)	34,194	1,140	113.98	10	11,842	'20년~'28년
임팩트 4호 (2025년)	6,000 (6,000)	4,000 (4,000)	2,487	1,658	104.00	3	1,200	'25년~'33년
임팩트 5호 (2025년)	30,000 (30,000)	2,000 (2,000)	-	-	-	-	-	'25년~'33년

- 제4호 및 제5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은 창업 7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¹⁵¹⁾를 투자대상으로 하여 각각 2025년 7월과 10월에 결성됨.
- 제4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은 총 6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이 중 서울시가 40억원을 출자하여 주요 출자자로 참여함에 따라 펀드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제5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은 당초 3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나 2026년 1월에 신규 조합원의 추가 참여를 통해 500억원 규모로 확대됨.
- 특히 제5호의 경우 정책금융기관 및 유관기관의 참여 비중이 확대되어 서울시의 의사결정 권한은 제한적이나 민간·정책금융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투자재원 조성 및 운용 기반이 다양화됨.

¹⁵¹⁾ 제4호 투자조합은 연매출 20억 이하 기업으로 한정하고 지원 조건을 추가함.

- 한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1~3호는 순차적으로 출자금의 회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바, 투자금 회수 현황 및 투자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수익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투자수익률 외에도 고용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은 2020년~2021년 추진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에 대한 금리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여 6천 7백만원(51.5%)이 지출됨.
- 동 사업은 수행기관이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융자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이차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2025년에는 133개 기업을 지원함.

<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실적 >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차보전금 (지원기업수)	331 (293)	326 (283)	222 (227)	135 (180)	67 (133)

- 동 사업은 2022년부터 신규 융자를 취급하지 않고 약정 상환기간인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지원액이 감소하는 구조이므로 향후 사업 규모는 융자잔액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입법조사관	연락처
강 민 수	02-2180-8062
김 혜 진	02-2180-8057